

I. 연령 호칭에 따른 청소년관계 주요규정

(1990. 9. 10 현재)

법 령	구 분	연령·호칭	규 정 내 용	비 고
○헌법				법령집참고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연소자 청소년	연소자근로의 특별보호	
제34조	사회보장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가석방심사등에 관한규칙				
제13조	소년법의 심사	소년법	가석방심사시 개전의 정도 및 보호관계의 양부에 대한 심사에 주의요	법령집참고
○각종기념일등에 관한규정				
제 2 조	기념일	어린이 학생	어린이날 학생의날	
○강생보호법시행령	관찰보호의 등	미성년자	피보호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관찰보호의 개시와 해제를 친권자에게도 통지	
제 2 조	지			
○건축법시행령				
제 66 조	청소년호텔	청소년	생산복지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	
○건축사법				
제9조	건축사 면허	미성년자	결격사유 저촉	
○결핵예방법				법령집참고
제12조	출생아에 대한 결핵예방접종	출생아	출생후 1년이내에 결핵예방접종 의무	
○경범죄처벌법				법령집참고
제5조	경범죄처벌자 범 위	18세미만자	경범죄 처벌대상에서 제외	
○경찰관직무집행법				법령집참고
제4조	미아의 보호조치	미아	적당한 보호자가 없고 응급의 구조를 요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조치 가능	
○경찰대학외조직과 학사운영에 관한규정				
제1조	입학자격	17세이상 21세미만자	경찰대학 입학자격	
○고물영업법				
제4조	고물영업 허가	미성년자	결격사유저촉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	제3조	입학자격	15세이상 17세미만(남자)	공군기술고등학교 입학자격
○공동주택관리령	제26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시험의 응 시자격	미성년자	자격시험응시 결격사유 저축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가족수당지급범 위	18세미만자 (직제비속)	공무원가족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연금법	제3조	공무원의 유족	18세미만자	공무원의 유족중 자녀, 손자녀의 정의
○공무원임용및시험 시행규칙	제3조	응시연령	20세이상자 18세이상자 20세이상자	5급·연구관 및 지도관 6급·7급·연구 사 및 지도사 채용시험 응시가능 8급 및 9급·기능직 7·8등급채용 시험 응시가능 교정·보도·보호직렬의 8급 및 9 급 채용시험 응시가능
○공무원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4조	장학생의 지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연서필요
○공연법	제22조	공연자 및 공연 장경영자의 준 수사항	18세미만자	유해공연물의 관람금지
제25조의3	공연윤리위원회 의 심의기준	아동, 청소년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저해 금지	
○공연법시행령	제15조	공연신고	18세미만자 (연소자)	관람가부를 기재한 공연신고서 제출
제16조	각본심사	연소자	각본심사합격증에 관람가부표시	
제18조의2	각본심사의 예 외	연소자	예외 공연에 대하여 관람을 허용하 고자 할 때 공연윤리위원회나 공연 지를 관할하는 직할시장 또는 도지 사의 의견에 따라 관람허용결정 (예외 : 연극, 음악, 무용공연, 마술, 차력등)	

법령집참고

법령집참고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익법인의 임원취임	미성년자	임원취임 금지	법령집참고
○공인노무사법	제4조 공인노무사 자격	미성년자	결격사유저촉	
○공중위생법	제4조 영업의 허가	18세미만자	유기장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18세미만자의 이용제한 영업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구분허가 가능	법령집참고
	제12조 숙박업영업자준수사항	미성년자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는 미성년남녀(일부가 성인자인 경우 포함)의 혼숙금지	
	유기장영업자준수사항	18세미만자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 유기금지	
	제39조 장난감의 제조	어린이	어린이가 접촉해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난감의 제조업자의 신고의무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위생접객업의 구분(유기장업)	청소년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업과 성인용 전자유기장업으로 세분	법령집참고
	제5조 성인전용유기장업	18세미만자	이용제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청소년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업의 기준규정	법령집참고
	제15조 위생접객업자의 준수사항	7세 이상자 18세미만자	남녀혼욕금지 터키탕 입욕금지	
○관광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	제7호 어린이날	어린이	5월 5일	
○판세법	제79조 특허보세구역설영요건	미성년자	설영인의 결격요건 저촉	
	제160조 판세사의 자격	미성년자	결격사유 저촉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 광고심의규정	제2조	전전성과 공공성에 관한 기준	어린이의 품성을 그릇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신중을 기함	법령집참고
○ 교육법	제96조	국민학교 취학 의무	만6세 - 만12세	국민학교 취학연령
	제97조	국민학교 취학 의무	아동	학령아동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교육 방해금지
	제98조	국민학교 취학 의무	아동	불구·폐질·병약·발육불완전·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부면제
	제99조	국민학교 취학 의무	아동	경제적이유로 학령아동을 취학시키기에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 보조
	제102조의2	중학교취학의무	만15세	중학교 취학연령
	제103조의4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학교	청소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체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설치·운영가능
	제103조의6	취학의무 및 수업등 방해행위의 금지	청소년	산업체경영자의 근로청소년 취학 방해 금지
	제103조의7	국민학교에관한 규정의 준용	아동	제97조 내지 제99조 준용
	제107조의4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청소년	산업체에 인접한 고등학교에 야간제 특별학급 설치 또는 고등학교 설치 경영
	제148조	유치원 입원대상	4세자부터	국민학교 취학전 유아가 입원
○ 교통안전법	제7조의2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	미성년자	결격사유 저축
○ 국가유공자에우동에 관한 법률	제64조	양육보호	미성년자(자녀·제매) 20세도달자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보호 학생일경우 대학졸업때까지 계속보호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3조	입학자격	17세이상 22	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국내여비규정 제21조	가족이전비	세미만(미혼 여자)		
		12세이상자	이전할 때의 공무원 본인에 해당하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금액과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의 3분의 2에 상당한 액	
○국립국악원대관규칙 제3조	대관	12세미만 6세 이상자	위의 액의 2분의 1에 상당한 액	
		6세미만자	이전할 때의 공무원 본인에 해당하는 현지교통비·숙박료·식비 및 식탁료의 3분의 1에 상당한 액	법령집참고
○국립박물관진열품관람규칙 제5조	무료관람	청소년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법령집참고
		6세이하(어린이)	보호자 동반한 경우 무료	
제6조	관람권	어린이, 24세 이하자(청소년)	무료	
		19세이상 24세 이하자	중·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경우는 매월 첫째일요일, 국경일, 근로자의 날에 한해 무료	
제8조	관람금지	19세이상 청소년	할인권 판매	
		6세이하 어린이	보호자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관람 금지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 제5조	무료관람	6세이하(어린이)	보호자동반시 무료	법령집참고
		어린이, 24세 이하자(청소년)	무료	
		19세이상 24세 이하자	중·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경우는 매월 첫째 일요일, 국경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한해 무료	

법	령	구	분	연령·호칭	규	정	내	용	비	고																							
○국민연금법	제6조	관	람	권	19세이상 청 소년	할	인	권	판	매																							
	제8조	관	람	금	지	6세이하 어 린 이	보	호	자	동	반	하	지	아	니	한	경	우	관	람	금	지											
	제6조	가	입	대	상	18세이상자	국	민	연	금	가	입	대	상																			
	제8조	사	업	장	가	입	자	18세이상자	사	업	장	가	입	가	능																		
	제10조	지	역	가	입	자	18세이상자	지	역	가	입	가	능																				
	제48조	가	급	연	금	액	18세미만자 (자녀)	가	급	연	금	대	상	(수	급	권	자	가	그	권	리												
○국민연금법시행령	제63조	유	족	의	범	위	등	18세미만자 (자녀, 손 자 녀)	연	금	가	입	자	의	유	족	연	금	수	급	대	상											
	제65조	유	족	연	금	수	급	권	18세도달자	자	녀	또	는	손	자	녀	인	수	급	권	자	의	유	족	연	금	수	급	권	소	멸		
	제36조	가	급	연	금	액	18세미만자 (자녀)	1인당 연 3만6천원																									
○국민투표법	제7조	투	표	권	20세이상자	투	표	권	부	여																							
○국외여비규정	제21조	가	족	여	비	26세이상자 (자녀)	가	족	여	비	지	급	대	상	에	서	제	외															
						18세미만자 (자녀)	본	국	에	서	의	재	교	육	을	위	해	동	반	하													
						12세이상자 (자녀)	본	인	이	여	행	할	때	의	철	도	임	, 선	임	, 항	공	임	및	자	동	차	임	의	전	액	과	일	
						12세미만자 (자녀)	본	인	과	같	은	등	급	의	철	도	임	, 선	임	, 항	공	임	및	자	동	차	임	의	실	비	전	액	과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본	인	이	여	행	한	때	의	일	비	, 숙	박	비	, 식	비	의	3분	의	2에	상	당	하	는	액	지	급	
							본	인	과	같	은	등	급	의	철	도	임	, 선	임	, 항	공	임	및	자	동	차	임	의	실	비	전	액	과
○국적법	제21조	응	시	자	격	30세미만자	국	비	유	학	시	험	응	시	가	능																	
	제5조	외	국	인	의	귀	화	요	건	20세이상자	그	의	본	국	법	에	의	하	여	능	력	이	있	어	야	귀	화	가	능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국제기술협력규정 제39조	과전전문가의 가족동반	18세미만자 (직계가족)	2인이내 동반가능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2	토지평가사의 면허	미성년자	결격사유 저축	
○국회공무원임용시 험규정 제10조	공채시험응시연 령	20세이상자 (상한연령까 지) 18세이상자 (상한연령까 지)	5, 6, 7급공무원 응시가 가능 8, 9급 및 기능직 7, 8급공무원 응 시가 가능	
○국회방청규칙 제12조	방청할 수 없는 자	12세미만자	의장이 허가한 때에 한하여 방청가 능	
○국회사무처사무분 장규정 제13조	입법조사국 사 무분장(입법조 사4과)	아동	보건사회자료담당(부녀·아동·인 구에 관한 입법자료 조사)	
○국회의원선거법 제8조	선거권 피선거권	20세이상자 25세이상자	선거권 부여 피선거권 부여	
○군기술위탁생규정 제5조	지원자연령	만15세이상 만18세미만 (남자)	위탁생지원 자격	
○군인연금법 제3조	유족중 자의 정 의 유족중 손의 정 의	18세미만자 18세이상자 18세미만자 18세이상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자 폐질상태인 경우 부가 없거나 폐질상태인 경우 폐질상태인 경우	
○군인연금법시행령 제9조	동순위자의 경합 대표자선정	미성년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에게 급여지급 법정대리인이 대리	
○군행형법시행령 제22조	신입자의 독거 수용	20세미만자	독거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가능	

법	령	구	분	연령·호칭	규	정	내	용	비	고
○근로기준법	제24조	독거수용등		25세미만자	독거수용	2순위			법령집참고	
	제68조	의류·침구의 색 채		20세미만자	의류를 따로 정할 수 있음					
	제84조	건강진단		20세미만자	3월에 1회이상 건강진단 시행					
	제101조	미성년자에 대한 작업		20세미만자	작업을 과함에 있어 교양에 관한 사항 참작					
	제50조	최저연령		13세미만자	근로자로 사용금지					
	제51조	사용금지		18세미만자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금지					
	제52조	연소자증명서		18세미만자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사업장에 비치 의무					
	제53조	근로계약		미성년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대리금지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후해제 가능					
	제54조	임금청구		미성년자	독자적으로 가능					
	제55조	근로시간		13세이상 18세미만자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 초과 금지					
	제56조	야업금지		18세미만자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금지					
	제57조	시간외근무		18세이상자 (여자)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금지					
	제58조	갱내근로금지		18세미만자	갱내근로금지					
	제61조	육아시간		1년미만자(유아)	1일 2회 각각 30분이상 유급수유시간					
	제62조	귀향여비		18세미만자	해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귀향하는 경우 필요한 귀향여비 지급					
	제63조	교육시설		18세미만자	상시 30인이상의 18세미만자를 사용하는 자는 교육시설을 하거나 장학금지급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사용금지직종		18세미만자	사용금지직종의 범위			법령집참고		
	제45조	취업인허의 금지직종		13세미만자	취업인허직종의 범위					
	제46조	미성년자의 근로계약해제		미성년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해 행함					
	제48조	해고사유 인정 신청		18세미만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의해 행함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기능장령법시행령 제22조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	14세부터 29세미만자	청소년부 참가가능	법령집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육아휴직	1년미만자(영아)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가능	법령집참고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제4조	영·유아의 보호	영아·유아	사업주의 육아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의무	법령집참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농어촌후계자의 육성	청소년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경우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하고 지원	법령집참고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조합임원자격제한	미성년자	임원 결격사유 저촉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3조	입학자격	18세이상 23세미만자(남자)	단기사관학교 사관생도과정 입학자격	
○담배사업법시행령 제14조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	청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에 광고금지	법령집참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제조담배에 관한광고	청소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에 광고금지	법령집참고
○대마관리법 제5조	대마취급자의 허가	미성년자	허가 결격사유 저촉	법령집참고
○대통령선거법 제8조 제9조	선거권 피선거권	20세이상자 40세이상자	선거권 부여 피선거권 부여	
○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의 보호	어린이(13세미만) 유아(6세미만)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노는 것 금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 혼자 의 보행금지	법령집참고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도·소매업진흥법 시행령	제70조	운전면허 원동기장치자전 거운전면허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	어린이, 유아 18세미만자 16세미만자 21세미만자	도로에서 놀고있는 때 경찰공무원 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결격사유저촉 결격사유저촉 결격사유저촉
	제37조	판매사자격	미성년자	판매사 등록 불가
	제4조	독극물관리자격	미성년자	결격사유저촉
	제18조	독극물판매의 제한	14세미만자	독극물 판매금지 대상
○마약법	제46조의 3	한외마약판매동 의 제한	14세미만자	한외마약 판매금지
○모자보건법	제2조	영유아 신생아	6세미만자 28일미만자	영유아의 정의 신생아의 정의
	제7조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영유아	모자보건기구는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등에 관한 사항 관장
○모자보건법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 립	영유아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영유아 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포함
	제11조	모자보건기구의 운영	영유아	모자보건종합센터는 영유아병력카 드의 전산처리 및 관리 업무 수행
	제13조	영유아의 건강 관리	영유아	영유아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실 시
○모자복지법	제4조	아동	18세미만자 20세미만자	아동의 정의 취학시엔 아동으로 봄
	제12조	복지급여내용	아동	아동양육비 지급
○문화재보호법시행 규칙	제29조	관람료	어린이, 청소년	어른관람료의 50%이하
	제30조	관람료징수	6세이하	보호자동반시 무료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미성년자금지사항	미성년자	깍연, 음주, 유흥업소 및 기타 유해업소출입 등 금지	법령집참고
○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민방위대 조직	20세이상자(남자)	민방위대 조직 대상	
○ 민법	제4조 성년기	만20세의 자	성년의 정의	법령집참고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	법률행위 무능력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판식할 지능이 없는 때는 배상책임 없음	
	제801조 약혼연령	만18세(남자) 만16세(여자) 도달자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면 약혼가능	
	제807조 혼인적령	만18세(남자) 만16세(여자) 도달자	부모, 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으면 결혼가능	
	제869조 입양승낙	15세미만자	입양시 부모, 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필요	
	제1061조 유언적령	만17세미달자	유언불가	
○ 민사소송법	제293조 증인선서무능력	16세미만자	증인신문전에 선서불요	
○ 방송법	제20조 방송심의규정	아동, 청소년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관한 사항	법령집참고
○ 방송법시행령	제28조 방송자문위원 위촉	청소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청소년단체에서 추천가능	법령집참고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규칙	제7조 가족수당	18세미만자	직계비속에게 수당지급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형제자매에게 수당지급	
○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	제27조 가족이전비	12세이상자	이전할 때의 공무원 본인에 해당하는 운임의 전액과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 지급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법원공무원국외여비규칙	제13조 가족이전비	6세이상 12세 미만자	위의 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액 지급	
		6세미만자	이전할 때의 공무원 본인에 해당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및 식탁료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지급	
		26세이상자 12세이상자 (자녀)	가족이전비 지급하지 않음 본인이 이전할 때의 운임의 전액과 일비, 숙박비, 식비의 5분의 2에 상당하는 액 지급	
○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 응시자격	12세미만자 (자녀)	본인과 같은 등급의 운임의 실비 전액과 본인이 이전할 때의 일비, 숙박비,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액 지급	
		20세이상자	5급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시험 응시가능	
		18세이상자	6·7·8·9급 공무원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시험 응시가능	
○병역법	제5조 제1국민역	20세이상자	정리채용시험 응시가능	법령집참고
		18세이상자	기능직공무원 공개경쟁 및 특별채용시험 응시가능	
		18세미만자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님	
○병역법시행령	제91조	22세미만자	징병검사 또는 입영연기가가능	법령집참고
		23세미만자	징병검사 또는 입영연기가가능	
		24세미만자	징병검사 또는 입영연기가가능	
		26세미만자	징병검사 또는 입영연기가가능	
		26세미만자	징병검사 또는 입영연기가가능	
		27세 미만자	징병검사 또는 입영연기가가능	
		2년제 전문대학생의 입영연기		
		3년제 전문대학생의 입영연기		
		4년제 대학생의 입영연기		
		6년제 대학생의 입영연기		
		2년제 대학원생의 입영연기		
		5및 6학기제 대학원생의 입영연기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보안관찰법시행령	제95조	연수기관원의 입영연기 선원의 징병검 사연기	26세미만자 23세미만자	징병검사 또는 입영연기가 징병검사연기가
	제6조	보안관찰처분대 상자의 신고	소년	소년교도소에 신고
	제24조	소년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소년 소년	조사시 심리적특성 고려 사안의 신속처리 및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보도금지
	제25조	환경조사서등	소년	환경조사서 작성및 상세기재 심신이상시 신속한 의사진단 및 진 단결과첨부
○보험업법	제12조	보험사업자의 임원자격	미성년자	결격사유저촉
	제174조	한국보험공사 임원자격	미성년자	결격사유저촉
○보호관찰법	제24조	보호관찰대상자	소년	보호관찰명령 가능
	제25조	보호관찰대상자	소년	보호관찰명령 가능
	제29조	보호관찰대상자	소년	보호관찰명령 가능
				법령집참고
○보호시설에있는고 아의후견직무에관 한법률	제1조	목적	미성년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사항 규정
	제2조	후견인	미성년자 (고아) 미성년자 (고아)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 직무를 행 함(공설 보호시설의 경우) 보호시설의 소재지의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후견인의 직무를 행 할 자를 지정(사설 보호시설의 경 우)
				법령집참고
○사격및사격장단속 법	제7조	사격장 설치허 가	미성년자	결격사유저촉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사격및사격장단속 법시행령	제9조 관리자의 자격 기준	25세미만자	사격장 관리자 자격없음	
○사관학교설치법	제3조 입학자격	17세이상 21 세미만(남자)	사관학교 입학 자격	
○사립학교교원연금 법	제2조 유족	18세미만자 (자,부가없는 손)	유족의 정의	
○사립학교교원연금 법시행령	제2조 유족의 입증방 법	태아인 자 및 손	공무원연금법 제37조의 규정에 의 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 함	
	제23조 유족의 대표자 에 대한 급여지 급방법	성년자	대표자선정서에 위임자 본인의 인 감증명서 첨부	
	유족의 대표자 에 대한 급여지 급방법	미성년자	대표자선정서에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제60조 유족연금수급권 의 상실 또는 행방불명사실증 명	18세도달자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또는 손의 경우 : 효적등본 또는 주민등 표등본으로 증명	
	유족연금수급권 의 상실 또는 행방불명사실증 명	18세이상자	폐질상태에 있던 자 또는 손이 그 폐질 상태가 해소된 경우 : 요양기 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로 증명	
○삭도·궤도사업법	제21조 소아의 무임운 송	6세미만자	여객1인에 대해 그가 동반하는 소 아1인을 무임으로 운송	
○삭도·궤도사업법 시행규칙	제78조 차장의 승무	12세미만자	12세미만의 차장의 승차 금지	
	제79조 최대승차인원등	12세미만자	12세미만의 자는 1.5인으로 환산	
○산림조합법	제42조의2 조합임원의 가 격	미성년자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저촉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7조 유족보상연금	18세미만자 (자녀, 손, 형제 자매)	수급자의 범위	법령집참고
	제19조 유족보상연금	18세도달자 (자녀, 손, 형제 자매)	수급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의 실격 의 예외	18세미만자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의 자녀, 손 또는 형제자매의 경 우	
○ 산업체의근로청소 년의교육을위한특 별학급등의설치기 준령	제5조 특별학급의 설 치	근로청소년	산업체 인접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에 특별학급 설치	법령집참고
○ 상공회의소법	제14조 피선거권제한	25세미만자	의원의 피선거권 없음	
○ 상법	제732조 생명보험계약의 금지	18세미만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	법령집참고
○ 생활보호법	제3조 생활보호대상자 의 범위	18세미만자 (아동)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자의 요보호대상	
○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 여객의 정의	1세미만자	선박 탑재인원중의 한사람이라도 여객으로 불간주	
○ 선박직원법	제6조 해기사 자격	18세미만자	결격사유저촉	
○ 선원법	제80조 미성년자의 능 력	미성년자	· 선원이 되고자하는 경우 법정대 리인의 동의필요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부여	
	제81조 선원으로 사용 제한	15세미만자	동일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 이외 는 선원으로 사용금지	
		18세미만자	위험한 선내작업과 위생상 위대한 작업에 종사 금지	
		18세미만자	승인없이 선원으로 사용금지	

법	령	구	분	연령·호칭	규	정	내	용	비	고	
○선원법시행규칙	제82조	야간작업의	금	18세미만자	해운관청의	인가없이	야간	및 휴일	법령집참고		
	제148조	양벌규정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을	선박소유주로	간주				
	제56조	연소선원의	승	18세도달자	선원의	승인증인신청서에	당해	선			
○세무대학의조직과 운영에관한규정		선승인			원이	18세에	달하는	연월일을		빨간	
					색	글씨로	기재				
	제18조	입학자격		17세이상 24세미만자	세무대학	입학자격					
○세무사법	제4조	세무사자격		20세미만자	결격사유	저촉					
○소년법	제2조	소년		20세미만자	소년의	정의				법령집참고	
	제4조	범법소년		14세이상 20세미만자	정의						
		촉법소년		12세이상 14세미만자	정의						
		우범소년		12세이상 20세미만자	정의						
	제7조	송검		20세이상자	사건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			
	제38조	보호처분의	취	12세미만자	처분당시	12세미만인	경우	보호처			
		소			분	취소					
	제59조	사형, 무기형의		16세미만자	사형, 무기형에	처할	죄 → 15년의				
		완화			유기징역						
	제62조	환형처분의	금	18세미만자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			
○소년원법	제56조	소년의	형집행	23세도달자	일반교도소에서	형집행	가능		법령집참고		
		장소 변경									
	제8조	분리수용		16세미만의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에서	분리수			
				자와	이상의	용					
				자							
	제15조	수용중인	소년	16세이상자	단독실내에서	20일이내	근신처분가				
		규율위반자	징		능(소년원, 소년감별소)						
		계									
	제43조	퇴원		23세도달자	소년원	퇴원	조치				
	○소년원법시행령	제18조	처분변경의	신	12세미만자	보호처분변경신청(결정당시 12세미					법령집참고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청	20세이상자	만이거나 20세이상임이 판명된 즉시)	
제4조	장학생의 지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이 연서하여야 함	법령집참고
○소방법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제조업 허가	허가의 결격사유 저촉(상속인 경우는 제외)	
○소방법시행령	제4조	동의대상물의 범위	아동	법령집참고
제44조	청원소방원의 자격	18세미만자	결격사유저촉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 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0조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아동	법령집참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의2	조합임원의 자격	미성년자	결격사유저촉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청소년 및 소년	법령집참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9조	음식점영업자등의 준수사항	미성년자	법령집참고
○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	18세미만자	법령집참고
제13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	18세도달자	아동의 정의 보호중인 시설에서 퇴소조치	
제18조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18세미만자	· 불구기형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 · 음행을 시키거나 매개시키는 행위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8조 아동에대한 금지행위	18세미만자	· 부당하게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유해한 유기를 시키거나 유해유기장에 출입시키는 행위 · 학대행위 ·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의 목적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하게 하는 행위	법령집참고
		14세미만자	· 곡예를 시키는 행위 금지 · 주점 기타 접객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금지	
제2조 아동복지시설		3세미만아동	영아시설	
		3세 - 18세 미만아동	육아시설	
		12세이상아동	아동직업보도시설	
제6조 아동의 편의시설 이용		13세미만아동	·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무료 ·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아동의 입장료의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권장가능	
제9조 시설보호기간의 연장		20세미만자	심신장애자로서 귀가·취업이 곤란한 경우	
○약사법	제4조 약사 면허	미성년자	약사 면허 결격사유저촉	
○여객선운항관리규칙	제4조 운항관리자 자격	27세미만자	운항관리자가 될 수 없음	
○여권법시행령	제22조 동반자녀의 병기	14세미만자녀	자녀의 동반을 여권에 병기할 수 있음	
○여권법시행규칙	제3조 병역관계서류제출	18세이상 30세이하남자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제10조 여권유효기간에 대한 특례		13세이상 17세이하남자	5년 또는 3년복수여권의 규정에 불구하고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열업조합법 제15조	임원자격제한	20세미만자 (미성년자)	일을 초과하여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없음 임원 결격사유저촉	법령집참고
○영사기사면허령 제4조	영사기사면허	미성년자	면허 결격사유저촉	
○영화법시행령 제19조	극영화의 텔레비전방영 심의 기준	연소자	연소자의 관람이 허용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영화	
제20조	심의필증	연소자	연소자의 관람가부 표시	
○영화법시행규칙 제6조	심의기준	연소자 (18세 미만)	연소자들 대상으로한 폭력 또는 성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것	법령집참고
제7조	연소자관람영화의 심의기준	연소자	연소자관람금지영화의 범위	
○용역경비업법 제7조	경비원의 자격	18세미만자	경비원 결격사유저촉	법령집참고
○우량도서선정규정 제5조	우량도서선정	아동	아동문학부문의 우량도서 선정	
○원자력법 제92조	원자로등의 취급	18세미만자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결격사유저촉	법령집참고
○유선및도선업법 제9조	경영자 및 선부의 금지사항	14세미만자	보호자없이 베의 대부나 승선금지	
○유아교육진흥법 제13조	유아원 취원대상	4세자부터 4세미만자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가 취원 영아반이 설치된 새마을유아원에 취원	
○의료법 제19조의2	태아의 성감별 행위등의 금지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 또는 검사금지	법령집참고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 인쇄출판물광고심의기준	제12조 어린이보호	어린이	어린이의 준성과 정서를 해치는 광고 금지	법령집참고
제20조 유흥업소광고	청소년	청소년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 신중 기함		
○ 입업시험장수목원관람규칙	제5조 할인권	어린이·청소년	할인권 판매	법령집참고
제7조 무료관람	6세이하어린이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 어린이의 경우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음.		
제8조 관람금지	6세이하어린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관람 금지		
○ 입양특례법	제2조 양자될 자격(보호시설 수용자 입양)	18세미만자	양자가 될 자격범위	법령집참고
제4조 입양의 동의	15세이상 18세미만자	부모, 직계존속, 후견인등 입양동의 외에 양자르 될 자의 동의필요		
○ 자동차운수규칙	제30조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	21세이상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의 자격요건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자동차운송사업면허	20세미만자(미성년자)	면허 결격사유저속	
제20조 소아무임운송	6세미만자	동반소아중 좌석배정을 원하지 않은 소아1인은 무임		
○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1조 국립공원입장료의 효율조정에 관한 특례	학생 어린이 6세이하자	300원, 단체 200원 140원, 단체 100원 입장료 무료	법령집참고
○ 재소자의류및친구재식등규칙	제2조 의류의 종류	소년단원	겨울옷 및 여름옷의 2종으로 구분	
○ 재외공관공증법	제19조 참여인의 자격	미성년자	결격사유저속	
○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	제3조 등록증의 교부	15세미만자	등록증교부의 예외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재해구호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제 7 조	교육보호	미성년자	의사상자 자녀의 교육보호 대상	
○재해구제로인한의사 상자구호법시행령 제 7 조	교육보호	미성년자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학비 보조	
○전당포영업법 제 3 조	전당포허가	미성년자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 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의 허가 불 지	
○전시근로동원법 제 4 조	전시동원	만25세미만자	단순노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문적기술경험을 요하는 업무에 종 사하는 동원을 하지 않음.	
○전염병예방법 제10조	예방접종	14세이하자	예방접종을 받도록 조치	법령집참고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 6 조	미감염아동을 위한 양육시설	미감염아동	나병환자의 미감염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시설 설치가능	법령집참고
○전통건조물보존법 시행규칙 제 7 조	관람료금액기준	청소년(7세이 상 24세이하)	개인 70원, 단체 50원	법령집참고
제 8 조	관람료징수	6세이하자 (어린이)	무료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 제 9 조	수렵면허제한	미성년자	수렵면허 결격사유거족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소지의무	17세이상자	• 주민등록증발급대상 • 주민등록증소지의무	
제17조의9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	17세이상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일반기업체등에서 그 업 무수행상 확인이 필요한 때 신분확인	
제17조의10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17세이상자	사법경찰관리가 간첩의 색출, 범인 의 체포등 그 직무수행상 확인이 필요한 때 신분확인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주민등록증발급 기간	17세의 학생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 경우에는 17세가 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기휴가 또는 동기휴가의 종료일까지 발급	법령집참고
제37조	주민등록증에 의하지 않은 신분확인	17세이상자	기관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신분에 관한 확인을 주민등록증에 의하지 않고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할 범위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유치원 또는 새 마을유아원	유아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설대지 안에 유치원이나 새마을유아원 건축의무	법령집참고
제24조	어린이놀이터시설	어린이	어린이놀이터의 시설기준 규정	
○주택건설촉진법시 행령 제4조	복리시설의종류	유아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유아교육시설	법령집참고
○주택건설촉진법시 행규칙 제3조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유아교 육시설	유아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중기관리법 제20조	중기조종사면허	18세미만자	결격사유저촉	
제25조	중기정비사면허	18세미만자	결격사유저촉	
○중소기업진흥법시 행령 제30조	지도사등록자격	미성년자	결격사유저촉	
○증권거래법 제33조	증권회사의 임 원자격	미성년자	결격사유저촉	
제80조	한국증권거래소 임원자격	미성년자	결격사유저촉	
○지가공시및토지동 의평가에관한법률 제15조	감정평가사자격	미성년자	결격사유저촉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가족수당지급대상	18세미만자 (직계비속)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	
○지방공무원특수지 근무수당지급대상 지역및기관과그등 급별구분에관한규칙 제2조	지방공무원특수 지근무수당지급 대상기관	아동·영아	아동상당소, 영아의 진료를 담당하 는 기관의 공무원에게 수당지급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9조	선거권	20세이상자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 부여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아동·청소년	주민(아동·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증진 사무 관장	
제52조	선거권	20세이상자	지방자치 피선거권자의 선거권 부 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 진을 위한 사업 의 범위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내용 규 정	
○철도법 제16조	부가운임의 정 수	어른	어린이용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때 부가운임 정수	
○철도운송규정 제5조	어린이승차운임	6세미만자	여객1인에 대하여 적어도 1인은 무 임운송	
○철도전기관진열편 관람규칙 제5조	무료관람	13세미만자 6세이하자 (어린이) 7세이상 17세 이하자 (어린이·청소년)	어른 승차운임의 반액 보호자동반한 경우 무료 무료	법령집참고
제6조	관람권	어린이·청소년	할인권 판매	
제8조	관람금지	6세이하어린이	보호자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관람 금지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청소년육성법				법령집참고
제1조 목적	목적	청소년	청소년의 인격형성도모, 보호·육성·선도·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청소년이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하고 유능한 국민으로 성장하도록 함.	
제2조 청소년	청소년	9세이상 24세 이하자	청소년의 정의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령집참고
제5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	체신예금에 관해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간주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수탁자의 자격	수탁자의 자격	25세미만자	결격사유 저촉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법령집참고
제9조 미성년자의 보호	미성년자의 보호	미성년자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은 미성년자의 정서를 심히 해할 열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금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미성년자의 보호	미성년자의 보호	미성년자	-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체육도장:태권도, 권투, 유도, 검도, 펜싱, 합기도동 - 정서를 해할 영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接客업중 숙박업,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에 의한 사행행위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법령집참고
제5조 어린이수영장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어린이수영장 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어린이 청소년	수영장 시설기준의 예외 청소년의 탈선조장·목인 금지	

법령	구분	연령·호칭	규정내용	비고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제5조	제조업자의 자격	미성년자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총 격기제조업 허가 결격사유 저촉	
제13조	소지자의 자격	미성년자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총 격기의 소지허가 결격사유저촉	
제19조	취급의 금지	18세미만자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총 격기 취급금지	
제29조	화약류제조보안 책임자 및 화약 류관리보안책임 자 자격	미성년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 리보안책임자 결격사유 저촉	
○최저임금법				법령집참고
제5조	최저임금액	18세미만자	최저임금액을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음.	
○최저임금법시행령				법령집참고
제3조	연소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18세미만자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 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정 함	
○축산업협동조합법				
제45조	임원의 자격제 한	미성년자	결격사유저촉	
○북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법령집참고
제5조의2	미성년자의 약 취 유인죄	미성년자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한 자는 가 중처벌	
○한국직업훈련관리 공단법				
제8조	임원자격	미성년자	결격사유저촉	
○한국청소년연맹육 성에관한법률				법령집참고
제1조	목적	청소년및소년	한국청소년연맹의 지원·육성	
○해외이주법시행규 칙				
제3조	해외이주적격심 사 신청서의 첨부 서류	미성년자 18세미만자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 우에는 부모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해외이주동의서 첨부 해외이주신청자와 호적을 같이하는 직계비속이 국내에 남겨되는 경우 에는 자녀를 부양할 친족의 인감증 명을 첨부하는 부양각서 첨부	

법	명	구	분	연령·호칭	규	정	내	용	비	고
○ 해운업법	제 6 조	해상여객운송사	미성년자	미성년자	결격사유저촉					
	제41조	해무사자격	미성년자	미성년자	결격사유저촉					
	제44조	노동부소관사항의 위임	미성년자	미성년자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제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노동부소관사항의 위임	미성년자	미성년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야간 또는 휴일 근로의 인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				법령집참고	
	제 2 조	교도소 설치	만20세이상자	만20세이상자	수용					
	제 3 조	구분수용의 예	소년	소년	성인과의 분리수용(교도소와 소년교도소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					
○ 형법	제 8 조	유아대동	유아(생후 18개월이하자)	유아(생후 18개월이하자)	• 교도소동에 신입의 수용여자가 소생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가 가능 • 수형중 출생한 유아도 상동				법령집참고	
	제32조	교육	소년수형자	소년수형자	교육실시					
	제12조	유아보호조치	유아(생후 18개월초과자)	유아(생후 18개월초과자)	• 교도소동에 신입수용여자의 자녀 보호조치 • 수용중 출생한 자녀 보호조치					
○ 행정법시행령	제21조	독거수용일한계	20세미만자	20세미만자	교도소등 신입자 독거수용은 3일→30일까지 연장가능				법령집참고	
	제24조	독거수용순위	23세미만자	23세미만자	수형자 독거수용 순위는 순위 2위					
	제26조	독거수용의 제한	20세미만자	20세미만자	수형자 독거수용은 6월이상 독거수용 불가(특히 필요한 경우는 예외)					
	제51조	재소자이송	20세미만자	20세미만자	재소자 이송시는 다른 재소자와 구분이송					
	제56조	접견도수완화	20세미만자	20세미만자	교도소 수용자 접견도수를 제한기준보다 증가 허용가능					
	제61조	서신발송회수완화	20세미만자	20세미만자	재소자 서신발송 회수는 제한기준보다 증가 허용가능					

법	령	구	분	연령·호칭	규	정	내	용	비	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76조	제소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침구의 색채변경	20세미만자	청감색(기준색채)이외 색채의 것으로 변경가능	법령집참고					
	제97조	수형자의 건강진단 기간단축	20세미만자	3개월에 1회이상 시행(기타수형자는 6개월에 1회이상 시행)						
	제114조	소년수형자 작업부과의 배려	20세미만자	작업을 과함에 있어서는 특히 교양에 관한 사항을 참작요						
	제118조	소년수형자작업과정의 결정	20세미만자	작업과정을 별도결정 가능						
○헌법재판소공무원수당규칙	제20조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제한	14세미만자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금지 대상	법령집참고					
	제 9 조	가족수당지급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18세미만자	- 직계비속에게 가족수당지급 -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 18세미만인 형제자매에게 가족수당지급						
○형법	제 9 조	채혈금지범위	16세미만자	채혈금지		법령집참고				
	제 9 조	형사미성년자	14세미만자	형사미성년자의 행위의 불처분						
○형사소송법	제251조	영아살해	영아	영아살해자 처벌	법령집참고					
	제272조	영아유기	영아	영아유기자 처벌						
	제274조	아동혹사	아동	아동혹사자 처벌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	미성년자 약취, 유인자 처벌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미성년자 간음·추행자 처벌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미만자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의 예를 준용						
	제33조	국선변호인선정	미성년자	법물이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						
	제159조	증인선서무능력	16세미만자	증인신문전에 선서불요						

Ⅱ. 직제규정상 청소년 관계기관 업무일람

〈중앙기관〉

1990. 9. 10 현재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 청소년기획관 청소년협력관 청소년기획과 청소년육성과 청소년지도과 청소년교류과 시설기금과	• 청소년 관련정책의 수립, 청소년의 국제교류 청소년 육성기금의 조성·운용 및 청소년 시 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 • 청소년의 육성·지도 및 청소년 관련사항의 홍보와 협력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 1. 청소년정책에 관한 장·단기계획 수립 2. 청소년 관련 업무의 부처간 협의 조정 3. 청소년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의 분 석·평가와 그 시행결과와 국회에 대한 보고 4.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운영 5.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지도·감독 6. 청소년실태의 조사·연구 7. 기타 실내 다른과의 주판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육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의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 지도 4. 청소년 및 청소년 관련 유공자의 발굴 및 포상 5. 청소년 종합상담에 관한 사항 1. 청소년 단체의 인가 및 지도·감독 2.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연수 및 지원 3. 청소년지도위원의 관리 4.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양성 및 지원 5. 청소년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1. 국제청소년기구와의 협력 2.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에의 파견 4. 청소년관계 국제행사 개최 5. 교포청소년의 육성 및 지원 1.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2. 청소년시설의 운영지원·수도 및 활용도 제고 3. 청소년시설의 모형 개발 및 보급 4.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용	● 체육부직제 (1982.3.20 대통령령제10767호 개정 1990.9.10 대통령령제13099호) ○ 청소년육성 종 합계획 수립 ○ 각 부처별 업 무·종괄 조정 ○ 청소년육성 관 련위원회운영 ○ 각종 청소년시 설 확충 ○ 청소년 국제교 류 ○ 청소년 단체를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홍 보 협 력 과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홍보 2. 청소년 시청각 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청소년백서등의 발간 4.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운동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본조 신설 '88.6.18, 전문개정 '90.9.1]	
【경제기획원】		
예 산 실		● 경제기획원 직제 1981.11.2
예 산 총 팔 과	1.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2.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심의 관련자료의 작성 및 협의 3. 차관수입 및 세외수입 4. 경제기획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과 그 집행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금관리특별회계의 예산편성과 그 집행 6. 예비비의 관리 7. 예산편성과 그 집행에 관한 자료처리의 전산화 8. 예산과목의 조정 9. 기타 실내 다른과 및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대통령령제10497호 전문개정 ○ 청소년 관계 예산의 총괄 조정 및 책정
예 산 정 책 과	1. 예산과 관련되는 재정정책의 기획 및 조정 2. 중장기 재정계획의 종합조정 3. 예산편성과 관련된 세입 4. 예산운용의 경기조절대책 수립 5. 예산편성에 따른 통합재정수지의 분석 6. 재무부·국세청·관세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편성과 그 집행 7. 각종 정부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총괄 8. 재정사업의 심사분석 결과에 따른 예산편성 정책조정	
예 산 관 리 과	1. 예산제도와 법규에 관한 연구 및 개선 2. 예산과 관련된 법령의 협의 3. 보조금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리지침의 작성 4. 행정기관의 설치·폐지 및 공무원정원 총감에 따른 예산협의 5. 예산과 관련되는 보수의 심사	
경제기획국		
총 합 기 획 과	1. 경제사회발전계획의 수립 및 관련경제정책의 종합조정	○ 인구통계등 주 요경제 사회통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2. 연차별 경제운용계획의 수립				제외	처리
		3. 추가용제원의 조달과 배분계획의 종합조정					
		4. 산업연관분석 및 산업부문별 투자계획의 종합분석					
		5. 경제계획심의회의 및 경제과학심의회의 운영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자 금 제 획 과	1. 자금순환의 분석과 종합자금 운용계획의 종합조정					
		2. 재정금융정책과 경제운용계획과의 연관분석					
		3. 무역 및 국제수지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지역투자계획과	1. 국토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계획 및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2.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투자계획 및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3.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계획의 종합조정					
		4. 투기방지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인력개발계획과	1. 인구에 관한 예측과 정책의 종합조정					
		2. 인력수급 및 인력개발정책의 종합조정					
		3. 고용안정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종합조정					
	사회개발계획과	1. 사회개발정책 및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2. 소비생활의 합리화 및 소득정책의 발전					
		3. 사회보장등 국민복지 증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관련정책의 종합조정					
	동 향 분 석 과	1. 월례경제동향의 조사와 보고					
		2. 국내경기·고용·무역·재정금융에 관한 동향분석과 대책					
		3. 해외경기·금융·교역등에 관한 동향분석과 대책					
		4. 경제계획을 위한 기초통계 및 분석자료의 종합관리					
		5. 국내외 경제조사기관과의 협조					
	조사통계국	인구통계등 주요 경제 사회통계의 처리					
	【외 무 부】						
	국제경제국						
	경 제 협 력 1 과	1.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외무부 직제	
		2. 경제협력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의 체결교섭				1981.11.2	
						대통령령제10502호	
						전문개정	
						○ 경제협력 및 기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과	동	조약 및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협력업 무에 관한 사항		술	협력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 의 체결교섭과 동 조약 및 협 정에 의한 국 가간의 협력 업 무에 관한 사항
	경 제 협 력 2 과	3.	선진국 지역경제협력체와의 협조				
		4.	선진국과의 민간경제협력활동의 지원				
		5.	선진국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연구				
		6.	선진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7.	선진국에 대한 투자에 관련된 이익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 는 사항				
		1.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개발도상국 지역경제협력체와의 협조				
		3.	개발도상국과의 민간경제협력활동의 지원				
		4.	개발도상국 경제사정에 관한 조사·연구				
		5.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관계기관과 의 협조				
		6.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에 관련된 이익의 보 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기 술 협 력 과	1.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의 체결 교섭과 동 조약 및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협 력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4.	자원확보 및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시행 및 총괄·조정				
		5.	자원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정 보 문 화 국	1.	대외정보의 종합적 수집·분석·평가 및 총괄· 조정			○ 문	화 외 교 정 책 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정 보 1 과	2.	대외정보업무의 연구 및 개발			○	홍 보 문 화 관 계 국내 및 국제기 구와의 협정
		3.	국제정세에 관한 분석·평가 및 종합				
		4.	재외공관에 대한 종합적 정보의 제공				
		5.	정보상황실 및 정보자료식의 운영·관리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 는 사항				
	정 보 2 과	1.	북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2.	북한의 대외동향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평가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홍	보	과	【내 무 부】 지방행정국 행	정	과	● 내무부직제 1981.11.2 - 대통령령제10504호 - 전문개정 ○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비행 청소년 선도·보호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 청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범죄의 단속·처리 ○ 자연보호운동과 청소년시설(자연학습원 등) 확충	
지	방	기	획	과	과		
지	도	과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전 산 지 도 과	4. 선거 및 국민투표 5. 부동산중개업법의 운용지도 1. 내무부(치안분야는 제외한다)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화 계획 수립에 관한 지도 3. 행정전산망 사업추진 및 행정전산화 업무개발·운영 4. 부내 및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의 기도 5. 지방행정 전산화를 위한 전산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	
국민운동지원과	1. 국민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지원총괄 2. 새마을운동지원 3. 자연보호운동지원 4. 사회정화운동지원	
【법 무 부】 검 찰 국		● 법무부 직제 1973·3·14 대통령령제6570호 전문개정 ○ 비행청소년 교 정·교화 ○ 범죄통계의 수 집 및 종합분석
검 찰 제 1 과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검찰공무원의 배치·복무 및 감독 3.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4.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5.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6. 검찰행정(인사·조직 등)관계법령의 입안 7. 검찰운영의 개선 8. 기타 국내 다른 과외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검 찰 제 2 과	1. 형사사건(공안사건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형사관계법령의 입안 3.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4. 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5. 형사사건의 수사지위 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함중국 군대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7. 형사사건의 형집행 지휘·감독 8. 형사사건의 압수물처리의 지휘·감독 9.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기	관	업	부	내	용	비	고
검	찰	제	3	과	10.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11.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처리 12. 형사보상금 지급 사무의 지휘·감독 13. 형사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1. 공안사건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4. 검찰정보에 관한 사항 5. 공안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안사건의 수사지휘 7. 공안사건의 형집행, 압수물 처리의 지휘·감독 8. 공안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9. 국가보안사범위 보도에 대한 지휘·감독 10.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급·보로급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원호		
검	찰	제	4	과	1. 사회안전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3. 보안처분에 관한 결정 및 그 집행 4. 보안처분에 관련된 소송수행 5. 보안처분대상자의 과약 6. 보안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심사 7. 보안처분대상자의 소명자료 접수 및 심사 8.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작성 [전문개정 75·7·16]		
					1. 보호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2. 보호행정관계법령의 입안·연구 및 발전 3. 보호행정에 관련된 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4. 소년비행의 원인분석·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 5. 소년법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6. 감호청구사건에 있어서의 검찰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	호	국					
보	호	과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조 사 과	1. 사회보호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행장·동태·치료정도 기타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3. 사회보호위원회의 심사자료 접수 4. 사회보호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 5. 사회보호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6. 치료감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관 찰 과	1. 보호관찰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피보호관찰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담당자에 대한 교육·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갹생보호에 관한 사항	
소 년 과	1. 소년원·소년감별소소속 공무원의 배치·교육 훈련 및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 2. 소년원·소년감별소에 대한 지도·감독 3. 소년원생의 수용·이송 및 퇴원과 소년감별소에 위탁된 소년의 입소 및 출소에 관한 사항 4. 소년원·소년감별소의 물품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년원·소년감별소소속 공무원 및 소년원생의 피복·급양에 관한 사항 6. 소년원·소년감별소 수용소년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7. 소년원생의 교정교육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8. 소년원·소년감별소의 예산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84.12.31]	
(갱생보호회) 교 정 국 교 정 과	1. 교정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사·연구 2. 교정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에 관한 사항 3.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및 보안감호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4. 교도소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의 작성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보	안	제	1	과	5. 교도소등의 순열에 관한 사항		
					6. 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재소자(피보호감호자 및 피보안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구금·처우·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2. 재소자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교도소등에 대한 시찰·참관에 관한 사항		
					4. 재소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1. 공안사범의 수용·구금·처우·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2. 공안사범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공안사범의 청원에 관한 사항		
4.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보	안	제	2	과	1. 공안사범의 수용·구금·처우·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2. 공안사범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공안사범의 청원에 관한 사항		
					4.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소년사건의 검찰처리		
					청소년범죄의 예방 및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대	검	찰	청	청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973·1·25		
					대통령령제6472호		
					전문개정		
					● 검찰청법		
					1986·12·31		
					법률제3882호		
					○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		
					● 문교부 직제		
					1986·8·25		
대통령령제11959							
전문개정							
○ 학생 생활지도 및 학생수련							
○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민정신 교육 및 안보교육							
○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기관 지도·감독							
【교	육	부	장	학	1.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2. 교과용도서의 편찬 및 검인정		
					3. 교과용도서의 가격사정		
					4. 교과용도서의 발행·공급 및 활용관리		
					5. 국사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주식회사, 교과용도서 및 학습참고도서에 관련된 단체의 지도·감독		
					6. 기타 편수업무에 관한 사항중 교육과정담당관 및 각 편수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교육과정의 개선		
교육과정담당관							

● 검찰청 사무기
구에 관한 규정

1973·1·25

대통령령제6472호

전문개정

● 검찰청법

1986·12·31

법률제3882호

○ 범죄통제의 수
집 및 종합분석

● 문교부 직제

1986·8·25

대통령령제11959

전문개정

○ 학생 생활지도
및 학생수련

○ 학생을 대상으
로 한 국민정신
교육 및 안보교
육

○ 청소년을 위한
사회 교육 기 관
지도·감독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인문과학편수관		2. 교과서개발기본계획의 수립					
		1. 국어 및 한문교과					
		2. 외국어교과					
		3. 예능 및 체육교과					
사회과학편수관		1. 사회·역사 및 지리교과					
		2. 반공·도덕 및 국민윤리교과					
자연과학편수관		1. 수학·물리·화학 및 생물교과					
		2. 지구과학교과					
		3. 농업·공업·상업·수산·해양 및 가정교과					
교육연구장학관		1. 장학방침의 수립					
		2. 교육제도 및 장학정책과정의 연구					
		3. 유아교육·특수교육 및 방송통신교육의 운영 지도					
		4. 교육연구기관의 지도·감독					
		5. 기타 장학업무에 관한 사항중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정신교육장학관		1. 국민정신교육 및 반공·안보교육					
		2. 새마을교육 및 지역개발교육					
교과지도장학관		1. 각급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지도					
		2. 학습지도방법 및 교육평가의 연구·개선					
		3.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의 운영지도					
		4. 교육연구원의 운영지도					
		5. 중앙교육평가원의 지도·감독					
생활지도장학관		1. 학생생활지도					
		2. 교육행사의 후원 및 지도					
		3. 학생진로지도					
		4. 학생수련기관의 운영지도					
		5. 학생관련문제의 종합대책수립					
대학정책실							
대 학 행 정 과		1.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2. 대학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3.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4.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의 관리					
		5. 국·공립의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					
		6. 사립의 대학의 교원임용에 관한 사항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대 학 재 정 과	7. 교수자격인정의 심사 8.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 및 학생부담금의 조정 2. 사립의 대학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예산·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4. 대학기성회의 운영지도 5. 대학에 부속된 병원의 지도·감독 6. 대학교육협의회회의의 지도·감독	
대 학 학 무 과	1. 대학 및 대학원 학생의 학적관리·학위등록 및 학위수여 2. 대학입학학력고사의 관리 3. 대학편입학자격검정고시의 관리 4. 대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5. 대학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대학의 특성화 6. 대학 및 대학원교육제도의 개선	
학 사 관 리 과	1. 대학의 학사행정의 관리 2. 대학의 학생자치기구에 관한 사항 3. 대학생의 연수 및 국제교류 4. 대학생의 학·예술행사의 지원 5. 대학생의 연합봉사활동 지원 6. 기타 대학의 학사업무에 관하여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학 술 진 흥 과	1. 학술진흥계획의 수립·시행 2. 학술단체의 지도·감독 3. 학술원 및 예술원의 지원 4. 학술연구의 조성 및 교수의 국외연수 5. 연구보조비의 관리 6. 장학금확충계획의 수립·시행 및 장학금운영의 지도·감독 7.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도·감독 8. 각종 학술진흥 및 학예생사의 지원	
대학행정심의관	대학의 육성·발전에 관한 연구와 장기계획 수립	
대학학사심의관	학사정책과제의 연구·개발 및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장기대책의 수립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국민정신교육관	1. 국민정신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국민정신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삭제 (89·2·27)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및 국민정신교육에 관한 연구기관의 지도·감독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편찬서업추진위원회 운영지도	
학사지도담당관	1. 학원문제의 분석 및 대책수립 2. 대학생의 건전생활지도 3. 면학기풍의 조성	
보통교육국 교 육 행 정 과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지도·감독 2.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정원의 관리 5. 교육기관소속 5급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계획수립 및 그 실시와 교육기관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6. 교육위원회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인사관리 7. 공립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지조성업무의 지도·감독 8. 고등학교 평준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교 육 재 정 과	1. 지방교육재정운영의 지도·감독 2. 교육비 특별회계의 기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교 직 국 교 직 과	1. 교육공무원의 인사제도 및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 2.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의 인사관리 3.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제도의 운영 4. 교직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양 성 과 과학 교육 국 실 업 교 육 과	교원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1. 실업교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기초과학교육의 육성·지원 4. 과학실험학교의 지원 5. 실업계고등학교의 실험실습·산학협동 및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 6. 학생과학관 및 실업교육단체의 지도·육성 7. 과학교육심의회 및 산업교육심의회 운영 8. 시청각교육 및 전자계산교육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과 학 교 육 과	1. 과학기술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양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실험실습 및 산학협동의 지원 4. 기초 및 첨단과학기술연구의 지원 5. 과학기술교육관계 학술·연구단체의 지원 6. 교육관계전산화개발에 관한 연구	
전문대학행정과	1. 전문대학(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2. 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과 기타 법인의 설립·해산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3. 전문대학의 교육제도 개선 및 학생정원의 관리 4. 전문대학의 수업료 및 학생부담금의 조정과 기성회의 운영지도	
전문대학학무과	1. 전문대학 학생의 학적관리 2. 국·공립의 전문대학 교원의 인사관리 3. 사립의 전문대학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4.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사회국제교육국 사회교육진흥과	1. 사회교육진흥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사회교육시설의 지도·감독 3. 시설강습소의 지도·감독 4. 문교부소관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5. 문교부소관 사회단체의 설립·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사회교육제도과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교육협력과	1.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2. 개방대학의 설치·폐지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3.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의 지도·감독 4. 도서관의 지원·육성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제외국민교육과	1. 교육문화의 국제교류 2. 문교부 및 그 산하기관 직원의 국외여행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지도·감독 4. 국외한국연구의 진흥 및 한국학과 국외보급 5.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 6. 외국기관 초청 장학생의 선발·파견	
교육시설국 기획과	1. 재외국민의 교육계획 2. 재외국민교육기관 및 교육관련기관의 설치 및 그 운영의 지도·감독 3. 재외국민교육기관의 교원선발 및 국외파견 4. 국비국외유학생 선발 및 관리 5. 외국인 국내유학생의 선발 및 관리 6. 재외교포학생의 단기교육 7. 자비 국외유학에 관한 사항	
외자산업과	1. 각급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기본계획 및 투자계획의 수립 2. 각급학교의 시설기준의 작성 및 시설·설비대장의 관리 3. 교육용품에 관한 용도 확인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설비관리과	1. 교육용 외자도입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외자로 추진하는 사업의 지도·감독 3. 차관자금 및 인출대장의 관리 4. 차관원리금의 상환관리 5. 교육시설중 내부설비를 위한 기계·기구의 품목선정·규격서 작성 및 구매에 관한 지도·감독 6. 기타 차관사업에 관한 사항	
	1. 교육시설중 내부설비를 위한 기계·기구의 인수·운송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시 설 과 [국립중앙도서관] 【문 화 부】 생활문화국 지 역 문 화 과 박 물 관 과 문 화 시 설 과 종 무 실 종 무 1 과 종 무 2 과	2. 외자로 도입한 기계·기구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3. 교육용 실험실습 기계·기구의 활용을 위한 교육 1. 국립의 각급학교시설의 기본설계도 검토 2. 국립의 각급학교시설사업에 관한 설계도 검토 3. 학교시설의 표준설계도 작성 4. 국립의 각급학교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의 시설공사지도 5. 소속기관 시설사업에 관한 기술검토 및 지도 1. 지역문화발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지방문화시설의 조성·확충에 관한 사항 3. 지역간 문화교류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4. 지방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 1. 박물관 진흥종합계획 수립 2. 공·사립 박물관의 육성·지원 3. 민속박물관등 특수박물관의 지도·육성 4. 국립중앙박물관의 지도·육성 1. 문화시설의 설치기준 및 기능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건립공사의 지도·지원 3. 문화시설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1. 종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불교단체의 관련업무처리·지원 및 그 재산의 보호 3. 향교재산의 관리 및 유림단체의 관련업무의 처리·지원 4.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기독교단체의 관련업무 처리 및 지원 2. 천주교단체의 관련업무 처리 및 지원	* 국립중앙도서관직제 1969·12·4 대통령령제4384호 한글화 ● 문화부 직제 1990·1·3 대통령령제12895호 ○ 청소년 문화의 육성·지원 ○ 민족문화의 전승개발 및 보급 ○ 종교생활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문화정책국 총괄과	1. 문화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남북한 문화예술교류의 기획 및 조정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공익자금에 의한 문화예술투자에 관한 사항 5.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도·감독 6.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조사과	1.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조사의 설계 및 추진 2. 북한 및 공산권 문화예술에 관한 조사·연구 3. 문화의식 및 문화지표에 관한 조사·연구 4. 문화정책 관련자료의 수립·정리 및 정책자료실의 운영 5. 문화정책에 관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조	
국제교류과	1. 국제문화예술교류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제협력 및 문화협정에 관한 사항 3. 국제문화기구 및 외국정부기관과의 협력 4. 국제문화정보의 수집 및 관리 5. 국내외 문화예술교류의 지원 6. 해외교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7. 한국문화 소개자료의 지원 8. 한국국제문화협회의 육성에 관한 사항	
문화정책기획관	• 문화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예술진흥국 예술1과	1. 문학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회화·조각·공예·건축·사진·디자인·환경미술 등 조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4. 대한민국예술원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도·감독 5.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예술2과	1. 음악·연극·무용·연예 및 공연장등 공연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창작활동 및 관련단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영 화 진 흥 과	제의 지원 3. 공연자 등록 및 공연에 관한 사항 4. 중앙국립극장·국립국악원 및 예술의 전당의 지도·감독 1. 영화진흥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3. 영화 수출입업무에 관한 사항 4. 영화진흥공사의 지도·감독	
영 상 음 반 과	1. 음반·비디오등의 진흥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단체의 지원 3. 영상 뉴미디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어문출판국 어 문 과	1. 국어 및 국자에 관한 사항 2. 국어 및 국자의 체계적 정리 및 보급 3. 생활언어·문화매체용어의 순화에 관한 사항 4. 남북언어생활의 비교 연구 5. 외래어에 관한 심의·순화 6. 국어 및 국자의 해외보급에 관한 사항 7. 어문연구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8. 국어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지도·감독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도 서 출 판 과	1. 출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4. 도서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건전도서의 출판지원 6. 외국도서 수입업의 등록 및 이와 관련되는 사항 7. 공·사립도서관에 대한 도서·자료 및 문화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민독서운동의 추진	
출 판 자 료 과	1. 국내외 간행물 내용의 조사·분석 2. 국내외 간행물의 납본 관리 3. 국내외 출판현황의 연구·조사	
저 작 권 과	1. 저작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문화재 관리국] 서 무 과	2. 저작권에 관한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업무 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저작권에 관한 국제교류	* 문화재 관리국 직제 1969.11.5 대통령령제4203호 한글화
문 화 재 1 과	1. 보 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훈련·연급 및 인사 4.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5. 삭제 (81.11.2) 6. 자금계획·용도·회계 및 결산 7.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73.3.9]	
문 화 재 2 과	1. 건조물·사적·명승·기념물 및 천연기념물에 속하는 문화재의 지정·해제·보호·관리 및 활용 2. 문화재위원회의 운영 3. 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지도·감독 [전문개정 81.11.2]	
재 산 관 리 과	1. 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의 지정·해제·보호·관리 및 활용 2. 무형문화재보유자의 인정 및 보호 3. 미술·공예 기타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지정·해제·보호·관리 및 활용 4. 문화재 매매업자의 지도·감독 5. 문화재의 해외유출방지 및 문화재사범단속 6. 문화재 애호운동의 지원 및 선양 7. 국립국악고등학교의 지원·육성 [전문개정 81.11.2]	
궁 원 관 리 과	1. 문화재인 국유재산의 관리 및 총괄 2. 문화재관리특별회계소관 재산의 관리 및 운영 3. 문화재관리특별회계세입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81.11.2]	
문 화 재 보 수 과	1. 궁·능·원 및 그 경내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보수 2. 삭제 (83.12.30) 3. 각궁·종묘 및 지구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 [전문개정 81.11.2]	
	1. 국가 지정문화재의 보수(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국립중앙박물관] 서	무	과	2. 시·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수공사에 관한 설계지침작성	3. 문화재보수보고서 발간 [전문개정 83·12·30]		* 국립중앙박물관 직제 (1986·8·18 대통령령제11956호) 전문개정	
관	리	과	1. 보	안			
설	외	교	류	과			
문	화	교	육	과			
[중앙국립극장]						* 중앙국립극장 직제 (1973·7·14 대통령령제6770호)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국립현대미술관〕 관 리 과	1. 보 안 2. 관인관수 3.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및 관리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 사사무 5. 예산·회계 및 세입에 관한 사항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종합 및 심사분석 8. 청사의 방호 및 시설의 관리 9. 기타 다른 과·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국립현대미술 관 직제 1986·8·18 대통령령제11957호 전문개정
전 시 과	1. 전시사업에 관한 계획 2. 상설전시·기획전시·대관전시 및 국제전시에 관한 사항 3. 전시실의 운영 4. 소장미술작품의 관리 5. 국내외작가 창작활동의 지원 6. 미술관 분관의 전시에 관한 사항	
섭 외 교 육 과	1. 미술에 관한 교양교육의 계획 및 실시 2. 미술활동의 보급 및 홍보 3. 학술도서 및 자료의 수집·출판·관리 4. 미술도서 및 자료의 국제교류 5. 미술전문인력의 양성	
학 예 연 구 실	1. 미술의 분야별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2. 미술작품 및 자료의 발굴·조사 3. 미술작품의 보존과 수리·복원에 관한 사항 4. 미술작품의 감정에 관한 사항	
〔국립국악원〕 관 리 과	1. 보 안 2. 관인관수 3. 문서의 수발·보존 및 관리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 사사무 5. 예산·회계 및 세입에 관한 사항 6.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8. 청사의 방호 및 시설의 관리 9. 기타 다른 과·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국립국악원 직 제 1987·11·9 대통령령제12274호 전문개정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장 악 과	1. 공연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연물의 제작 및 공연관리 3. 전속단체의 관리 4. 악기·의상 및 소품의 관리 5. 조명 및 음향관리 6. 대·소도구 및 무대장치의 관리 7. 무대기기의 조작 및 관리	
국 악 진 흥 과	1. 음악분야 무형문화재 종목의 기능전수에 관한 사항 2. 국악의 강습 및 국악경연대회에 관한 사항 3. 국악의 국·내외 교류 4. 국악의 홍보 5. 국악자료의 제작 및 보급 6. 국악자료실의 운영	
국 악 연 구 실	1. 국악의 조사·발굴 2. 국악의 작곡 및 일반화를 위한 연구 3. 국악기의 연구·개발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5. 기타 국악의 보존·전승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영화진흥공사]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법 (1986.5.9 법률제3820호)
[예술의 전당]		
[체육청소년부]		
체육진흥국		● 체육부직제 (1982.3.20 대통령령제10767호)
생활체육과	1.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장·단기계획의 수립 2. 국민체력증진시책의 수립·시행 3. 학교·직장 및 지역체육의 진흥·지도 4. 건전여가활동의 육성·지도 5. 생활체육단체의 설립 및 운영의 지도·감독 6. 프로경기의 진흥 및 프로경기단체의 지도·감독 7.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운영의 지도·감독 8. 생활체육 및 건전여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9. 학교간 경기대회의 개최 지원	(개정 1990.9.10 대통령령제13099호)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 농 정 과	10. 학생체력검사 기준설정 및 집행에 관한 지도 11. 사회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격검정 12.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농업정책국의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2. 농어촌후계자 육성대책 3. 농어촌 노동력대책 4. 농업에 관한 내국세제의 조사·연구 및 조정 5. 농작물 재해보험 6. 농수산물분야 공해대책 7. 농업정책개발에 관한 기본방향의 수립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농림수산부직제 1990.3.20 대통령령제12952호 전문개정 ○ 농·어촌 후계자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농 촌 소 득 과	1. 새마을소득사업 2. 복합영농사업 3. 농어촌 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농가부업장려 및 농외소득개발 5. 농민교육에 관한 사항	
농 업 기 계 과	1. 농업기계화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2. 농업기계의 수급조절 및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화자금 지원업체의 관리 4. 농업기계화자금 운영계획의 수립 5. 농업기계관리에 관한 지도·교육 및 농업기계 판매점 설치등에 관한 사항	
국 제 협 력 과	1. 농수산물관계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업무의 종합조정 2. 외국차관·기술도입 및 합작투자의 유치와 기술용역단 및 조사단의 파견 3. 농수산물관계 외국시찰단 초청·안내 및 훈련 4. 농수산물 수출입계획의 조정 및 수출지원 계획수립	
【농촌진흥청】 지 도 국 청 소 년 과	1. 농촌청소년사업계획의 수립	● 농촌진흥청 직제 1978.4.24 대통령령제8964호 전문개정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수 산 청】 어 정 국 협 동 조 합 과 【건 설 부】 국 토 계획국 국 토 계 획 과 수 도 권 정 비 과	2. 농촌청소년의 영농 및 생활과제지도 3. 농촌청소년의 도의 및 협동생활지도 4. 농촌청소년의 체위향상 및 정서생활지도 5. 농촌새마을청소년회의 육성 및 지도 6. 농촌새마을청소년회의 시범신용사업지도 7. 농촌새마을청소년회의 경진 및 야영지도 8. 농촌새마을청소년회 연합회의 운영지도 및 대학 농촌새마을청소년회 지도 9. 청소년연구지도기관 및 지원단체와의 협조 10. 농과계학교 졸업생 연농정착지도 11. 농촌 부업의 개발과 그 기술의 지도	○ 4-H회조직 육성·지도 ○ 농촌후계자 육성·지원 ○ 농촌청소년의 해외연수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도·감독 2. 수산금융과 신용사업의 지도·감독 3. 수산 새마을사업의 종합 조정 4. 어촌 지역사회 개발 5. 어가 부업장려 계획	● 수산청 직제 1970·3·13 대통령령제2727호 ○ 어민후계자 정착지도
	1. 관계법령의 입안·연구 및 발전 2.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입안·조정 및 발전 3. 국토계획의 연차별 실시계획의 조정 4. 국토조사의 조정·성과 인증 및 권고 5.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운영 6.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건설부문계획의 수립 7. 건설사업의 장기수요측정 및 건설통계 8. 국내 일반서무 및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건설부 직제 1990·3·26 대통령령제12959호 전문개정 ○ 국민휴양시설의 조성 및 정비·확충 ○ 자연공원의 지정 및 유지·관리
	1. 수도권 및 대도시권정비에 관한 정책의 연구 및 발전 2. 수도권 및 대도시권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수도권 및 대도시권개발에 관한 지표의 설정 및 부여 4. 수도권 및 대도시권정비관계법령의 입안·연구 및 발전 5. 수도권 및 대도시권정비관계자료의 조사 및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지 역 계 획 과	수집 1.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및 시·군 계획의 조정 2. 권역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지역계획사업의 수립 및 조정	
토지이용계획과	1. 토지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정 2.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의 권고 및 규제 3. 토지 이용 현황 및 토지 분류 조사 4. 삭제 (84·12·27) 5.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운영	
자 연 공 원 과	1. 국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 2. 국립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도립공원의 지정 및 감독 4. 조경계획의 수립 및 지도·감독과 연구·발전 5. 기타 자연공원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79·6·15, 83·9·7, 84·12·27)	
도 시 국 도 시 계 획 과	1. 도시정책의 수립 2. 도시계획의 총괄·조정 3. 도시계획법상의 지역·지구 및 구역에 관한 사항 4. 도시조사 및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5. 도시제도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령의 입안·연구 및 발전 6.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7. 국의 일반사무 및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도시시설계획과	1.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의 인가 3. 도시계획시설기준의 연구 및 발전 4. 주차장관계법령에 관한 입안·연구 및 발전	
도 시 개 발 과	1.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및 지도·감독 3. 신도시 및 거점도시의 개발 및 건설 4.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문화관광도시의 개발사업에 관한 지도·감독 6. 도시개발관계법령의 입안·연구 및 발전	
녹 지 공 원 과	1.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3.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승인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 가 정 복 지 과 아 동 복 지 과 부 녀 복 지 과 사 회 국 사 회 과	4. 개발제한구역 단속현황의 종합·분석 5.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의 관리 6.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관계법령의 입안·연구 및 발전 [전문개정 84·12·27] 1. 가정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노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노인적성직종의 개발·보급 및 고용촉진 4. 건전한 가족제도 및 경로효친사상의 유지발전과 이에 관련된 조사·연구·보급 및 홍보 5. 노인복지시설과 단체의 지도·육성 및 감독 6. 가정의례의 보급 및 실천 7. 가정과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8. 묘지·화장장·납골당의 설치 및 관리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아동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3. 아동복지시설(장애아동 및 부랑아동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도·감독 4.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5. 연장아의 직업보도 6. 아동복지사업단체의 지도·감독 7. 아동의 국제입양에 관한 사항 <개정 83·12·31> 1. 부녀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부녀의 지도·계몽 3. 부녀복지시설의 지도·감독 4. 요보호여성의 선도 5. 부녀의 직업보도 6. 생활개선 및 소비자보호 7. 부녀단체의 지도·육성 8. 부녀관계 위원회의 운영 9. 한국여성개발원의 지도·감독 10. 부녀관계 국제협력업무 <개정 83·9·7> 1.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보건사회부 직제 1981·11·2 대통령령제10565호 전문개정 ○ 가정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아동·부녀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 사회복지법인과 단체의 육성·지도 ○ 환경위생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생 활 보 호 과	2. 사회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사회사업종사자의 양성 및 훈련	
	4. 사회복지사무소 및 사회복지관의 지도·감독	
	5. 사회복지사업기금의 관리·운영	
	6. 인보복지사업의 지도·감독	
	7. 부랑인의 보호사업에 관한 사항	
	8.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도입물자 및 현금의 관리	
	9. 국립사회복지연수원 및 대한적십자사의 지도·감독	
	10. 사회복지중앙위원회·중앙구호협의회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운영	
	11. 사회복지관계법인(사회복지시설의 설립·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단체의 육성 및 지도·감독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재 활 과	1. 생활보호대상자의 조사 및 보호대책	
	2. 최저생계비계측 및 보호수준결정	
	3.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능훈련 및 생업자금지원	
	4. 자활지도사업	
	5. 재해이제민의 구호 및 복구지원	
	6. 구호양곡 및 물자의 비축관리	
	7. 재해의 연금·생활보호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관리·운영	
	8. 생활보호위원회 및 재해대책위원회 운영	
위 생 국	1. 심신장애자복지행정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심신장애자에 관한 조사·연구	
	3. 심신장애자의 발생예방 및 재활치료	
	4. 심신장애자의 직업보도	
	5. 장애인보장구와 개발·보급	
	6.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육성 및 지도·감독	
위 생 제 도 과	1. 식품 및 공중위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총괄·조정	
	2. 식품위생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식품등의 원재료 수급동향분석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수출입식품의 영양·경제성·안정성등에 관한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식 품 과	조사·연구 5. 조리사 및 영양사의 지도·관리 6. 식품관계단체의 관리 7. 표시기준 및 과대광고의 지도·단속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식품제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식품, 식품첨가물 및 그 기구·용기·포장등의 규격기준 제정 3. 식품의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4. 중금속등 유해물질에 의한 식품의 오염방지에 관한 대책 수립 5. 식품제조업 및 제조품목의 허가·관리 6.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운영	
공 중 위 생 과	1. 공중위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공중위생접객업소의 관리 3. 이용사·미용사·위생사 및 위생시험사의 관리 4. 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수처리제 및 세척제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개정 87·4·29, 89·12·30>	
위 생 관 리 과	1. 식품유통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부정·불량식품의 지도·단속 3. 식품제조업소·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접객업소의 위생 및 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4. 식품의 유통질서에 관한 사항 5. 식중독에 관한 사항 6. 식품에 관한 국제협력업무 <개정 87·4·29, 89·12·30>	
음 용 수 관 리 과	1. 음용수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위생용품중 수처리제 및 세척제에 관한 사항 3. 간이급수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보존음료수에 관한 사항 5. 음용수관리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6. 기타 음용수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89·12·30>	
보 건 국		
보 건 교 육 과	1. 보건행정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에 관한 교육계획의 종합 및 조정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방 역 과	3. 공중보건에 관한 자료개발·홍보 및 조정 4.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 5. 보건요원의 교육·훈련 6. 국·공립보건관계 시험연구기관의 지도·감독 7. 국민영양조사 및 지도사업 8. 보건에 관한 교육관계 단체의 지도·감독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급성전염병의 예방 및 퇴치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방역대책의 수립 및 실시	
	3. 구충·구서사업	
	4. 방역약품과 기재의 수급계획	
	5. 방역사업의 지원 및 지도·감독	
	6. 검역소의 지도·감독	
	7. 방역관계 단체의 지도·감독	
	8. 삭제 (89.12.30)	
	9.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실험동물의 수급조정	
	11. 실험동물의 사료관리	
	12. 실험동물 관련단체의 지도·감독 (개정 83.9.7, 83.12.31)	
만 성 병 과	13. 기타 실험동물에 관한 사항	
	1. 결핵의 예방 및 퇴치	
	2. 나병의 예방 및 퇴치	
	3. 지방병의 예방 및 퇴치	
	4. 기생충 대책	
	5. 성병의 예방 및 퇴치	
	6.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지도·감독	
	7. 결핵·나병 및 지방병등에 관한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8. 기타 만성병에 관한 조사·연구 (개정 83.9.7)	
가 족 보 건 과	1. 가족계획사업의 종합계획수립 및 실적분석	
	2. 가족계획에 관한 민간학술단체의 지원	
	3. 피임용의약품·기구등의 개발 및 수급	
	4. 가족계획시범사업 및 시범시설의 운영	
	5.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각종 의원사업의 관리 6. 가족계획관련요원의 국내·외훈련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국립사회복지연구원] [국립각심학원] [국립부녀직업보도소] [중앙아동복지위원회] [노동부] 부녀지도소 노동국 노동과 노동조합과 노사협의과	7.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및 가족계획관련단체의 지도·감독 9. 기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에 관련된 사항 부녀·소년근로자의 특별보호, 여성근로자의 교양지도, 근로자 가족계획사업의 지도·계몽 및 근로자의 문화활동진흥에 관한 사항 1. 노동정책의 수립 2.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3.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육성 4. 노동관계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5. 한·미 행정협정에 의한 노무분과위원회의 운영 6. 노동외교 및 노동경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외국인사의 초청 및 의전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노동조합에 관한 정책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2.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3. 노동조합의 운영지도 및 업무검사 4.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동향파악 및 조직분규 예방대책 6.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노동조합 운영지도 7. 노동조합의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 운영 지도 1. 노사협조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지도 3. 중앙노사협의회의 운영 4. 노동쟁의 및 노사분규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5. 노동대책회의에 관한 사항	* 국립사회복지연구원 직제 1969·4·3 대통령령제3858호 한글화 ● 노동부 직제 1981·11·2 대통령령제1570호 전문개정 ○ 근로청소년 보호육성 ○ 근로청소년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도 ○ 무직, 미진학 청소년 직업훈련기관의 운영 ○ 근로청소년의 교양지도 및 노동문제 세미나 개최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근로기준국	6. 근로자와 노무관리자 및 경영관리자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 및 계몽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과	1. 근로기준정책의 수립 2. 근로조건에 관한 제도의 연구 개선 3. 근로감독관의 지도·감독 4. 근로기준법 적용 및 그 실태파악 5.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7.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8.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 수립 9. 근로자 퇴직금제도의 개선대책 수립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임금복지과	1. 임금정책의 수립 2. 임금제도의 개선대책 수립 3. 임금격차 완화대책 수립 및 저임금근로자보호사업 4.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5. 임금구조의 조사·분석 및 근로자 이익배분제도의 개선 6. 근로복지회관 지도·감독 및 근로자 주거환경의 개선 7. 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8.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대책수립 9. 근로청소년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도	
부녀소년과	1.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 2.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보호·지도 3.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취학지도 4. 여자와 소년근로자의 실태조사 5.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직업안정국		
고용대책과	1. 직업안정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노동인력수급계획의 수립·조정 3. 유휴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실업보험제도의 조사·연구 5.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고	용	관	리	과	6. 중앙직업안전위원회 운영		
					7. 해외고용정책의 수립		
					8. 해외고용시장의 개척		
					9. 인력진출대상국과의 노동관계 협력		
					10. 해외주재노동관의 지도·감독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노동시장 관리정책의 수립·조정		
					2. 노동시장정보에 관한 사항		
					3. 고용정보 통신망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기업안전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5. 근로자의 모집·소개와 직업보도사업의 지도·감독		
					6.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 단속		
					7. 직업안전법에 의한 허가 및 승인(국의취업자의 송출허가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1. 해외취업근로자의 모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2. 해외취업알선단체 및 해외진출업체의 지도·감독		
					3. 해외취업인적자원의 조사·관리		
					1. 해외취업근로자의 교육 및 상담		
					2. 해외취업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3. 해외에서의 노사분규의 조정		
					4. 해외취업근로자의 근로기준·안전보건 및 재해보상에 관한 지도·감독		
					5. 해외취업근로자의 적립금에 관한 사항		
					6. 기타 해외취업근로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직업훈련국	훈	련	기	획	과		
					과		
					1. 직업훈련사업의 조정과 총괄		
					2.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직업훈련시설 확충 계획의 수립		
					4. 직업훈련기준에 관한 사항		
					5. 직업훈련 심의위원회의 운영		
					6. 직업훈련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7. 직업훈련에 관한 국제협력단의 관리 및 지원		
					8. 직업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에 의한 기술도입 및 차관협정		
					9. 직업훈련생의 해외파견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공 공 훈 련 과	사 업 내 훈 련 과	10. 직업훈련 교과과정 및 직업훈련용 교재의 저작·개발·검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공공직업훈련법인의 지도·감독	
		2. 공공직업훈련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3. 공공직업훈련법인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부설 직업훈련시설의 지원 및 조정	
		5.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6. 공공직업훈련용 훈련장비, 비품의 목록작성 및 기술검토	
		7. 공공직업훈련용 장비의 구매	
		8. 공공직업훈련의 차관자금에 관한 사항	
		9. 국립중앙직업훈련원의 지도·감독	
10. 직업훈련교사의 면허 및 수급관리			
11. 기타 공공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기 능 검 정 과	〔노동연수원〕	1. 사업내 직업훈련직종의 설정	
		2.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비율 및 분담금 기준액 책정	
		3. 인정 직업훈련에 대한 지도·감독	
		4. 사업내 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도·감독	
		5. 인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관리	
		6. 특수공업고등학교의 지원	
		7.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	
		8. 기타 사업내 직업훈련 및 인정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기 능 검 정 과	〔노동연수원〕	1. 기능검정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능검정제도의 조사·연구	
		3. 기능검정시험의 실시 및 기록의 관리	
		4. 기능검정위원회의 운영	
		5. 기능검정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6. 기능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노동연수원〕	〔노동연수원 직제 1979·6·4 대통령령제9483호〕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교재의 편찬 및 교안작성	
		3. 교육훈련성과의 측정 및 분석	
		4. 피교육자의 학적 및 성적관리	
		5. 피교육자의 보건·후생과 원내 생활지도	

* 노동연수원 직제
1979.6.4
(대통령령제9483호)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국립중앙직업안정소] 고 용 개 발 과 직 업 지 도 과 [중앙노동위원회] [한국직업훈련 관리공단] 【교 통 부】 관 광 국 관 광 기 획 과 국 제 관 광 과	6. 교육기재의 관리와 교육의 준비 및 협의활동 7. 교육도서 및 참고자료의 구입·관리 8.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 전국 취업알선업무의 조정 2. 전국 구인·구직정보의 수집배포 3. 고용 정보통신망의 운영 4. 광역노동력 수급조정 5. 구인·구직개척 및 취업알선 1. 직업적성검사방법의 개발 및 보급 2. 직무분석방법의 개발 및 보급 3. 직업상담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직업능력에 관한 연구 5. 기타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1. 관광법규의 연구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 3. 종합관광시책의 입안 4.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5. 국제관광공사에 관한 사항 6. 관광종사원의 양성 및 훈련 7. 관광연차보고 기타 통계의 종합에 관한 사항 8. 관광학술 및 연구단체의 육성 9. 한국관광협회의 지도·감독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해외관광객유치에 관한 시책의 입안 2. 국제관광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3. 국제관광시장의 조사·분석 4. 여행업에 관한 사항 5. 국제회의의 유치 및 운영 6. 해외관광객유치에 관한 홍보 7. 국제회의용역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8. 해외관광객을 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 국립중앙직업 안정소 직제 (1979·6·4 대통령령제9484호) ● 교통부 직제 (1972·2·9 대통령령제5970호) 전문개정 ○ 전전국민관광 지도 ○ 관광자원의 조 사 및 개발 ○ 전적지·특수단 지의 개발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국 민 관 광 과	9. 건전관광의 지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87·1·25, 89·8·24) 1. 관광개발투자계획의 수립 2. 관광자원의 조사 및 개발 3. 관광지의 지정·개발 4. 관광단지의 개발 5.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에 관한 사항 6.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가족호텔업에 관한 사항 7. 자동차야영장업에 관한 사항 (개정 85·10·28, 87·1·25, 89·8·24)	
관 광 시 설 과	1. 관광숙박업의 시설 및 운영개선을 위한 시책의 입안 2. 관광숙박업의 건설촉진을 위한 시책의 입안 3. 관광숙박업의 지도·감독 4. 관광호텔에 대한 조세감면물품의 관리에 관한 지도 5.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지도·감독. 다만,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및 자동차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6. 특수관광업협회의 지도·감독 7. 관광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처】 기 술 정 책 실 정 책 기 획 관 기 술 정 책 관 인 력 정 책 관 기 술 힘 력 관 기 획총괄담당관	과학기술기본정책의 수립 및 총괄 산업기술의 개발·이용을 위한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과학기술인력의 개발 및 활용 해외기술협력업무에 관하여 각각 실장을 보좌 1. 과학기술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투자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4. 국내외 과학기술에 관한 동향 및 정책의 조사·분석·평가 5. 과학기술관계자료·통계의 수집·분석 및 발간·배포 6. 과학기술관계 각종 지표의 개발 7. 행정자료실의 운영	● 과학 기술처 직제 1985·8·22 대통령령제11747호 전문개정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기술진흥담당관	8.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기술진흥확대회의의 주관 2. 기술진흥심의회회의 주관 3. 기술진흥지역협의회회의 주관 4. 기술진흥확대회의·기술진흥심의회 및 기술진흥지역협의회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기술제도담당관	1. 기술용역육성계획의 수립·조정 2. 기술용역업의 육성·지원 3.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금융·구매등 각종 지원과 그 제도의 연구·발전 4. 민간기업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지원의 총괄	
기술개발담당관	1. 기술집약형 신기업과 유망중소기업등에 대한 기술지원과 그 시책의 수립·조정 2.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의 육성·지원	
정보산업기술담당관	1. 정보산업기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2. 정보산업기술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발전 3. 시스템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의 종합·조정 4. 전자계산조직의 보급확산의 지원 및 표준화사업 5. 전자계산조직기술의 개발 및 보급 6. 전자계산조직위원회회의 운영 7.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및 육성시책의 수립	
기획국		
기획예산담당관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종합·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대덕연구단지건설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조정 5.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87·5·23)	
행정관리담당관	1.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주요사업의 심사분석 3. 행정개선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조정	
법무담당관	1. 법령안의 심사 2. 소송사무와 소원의 심사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의 안전에 관한 사항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국립 과학관] 서 무 과	1. 보 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훈련·연금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5. 회계 및 물품관리 (개정 73·9·22)	* 국립과학관직제 1990·4·17 대통령령제12987호 전문개정
보 급 과	1. 과학기술의 전시·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생활의 과학화 및 과학기술지식의 보급 3. 과학기술에 관한 전시자료의 출판 및 도서관리 4. 과학영화의 상영 및 영사실의 운영 5. 과학전람회에 관한 사항 (개정 78·11·9, 87·5·23) 6. 기타 과학기술의 보급을 위한 특별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73·9·22)	
연구관리부 전 시 과	1. 종합적인 전시계획의 수립 2. 전시물의 설계·제작·진열에 관한 사항 3. 전시물의 수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전시실의 운영 및 전시품의 유지관리 5. 전천주 영상장치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연 구 실	1. 기계·전기 및 전자분야 에 관한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전반에 걸친 자료의 수집·보존 및 연구 2. 물리·화학 및 원자력분야에 관한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전반에 걸친 자료의 수집·보존 및 연구 3. 지질·광업·천문·기상·금속·토목 및 건축분야 에 관한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전반에 걸친 자료의 수집·보존 및 연구 4. 동물·식물·수산·해양 및 보건위생분야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 및 연구 5. 공개과학교실의 운영 (전문개정 87·5·23)	
【국토통일원】 교육홍보실 교 육 담 당 관	1. 통일교육지침 및 자료의 개발·보급 2. 통일교육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 국토통일원 직제 1989·7·24 대통령령제12764호 전문개정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운 영 담 당 과	3. 통일교육활동지원 4. 통일연수원의 연수업무지도 및 감독	○ 국민정신교육에 관한 계획조정 ○ 통일에 관한 국내외기관 및 단체의 지도
홍 보 1 담 당 관	1. 통일교육·홍보정책의 총괄 2. 통일교육·홍보기본계획의 수립 3. 통일교육·홍보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4. 통일교육·홍보결과의 분석평가 5. 통일관련단체의 주요사업조정 및 지도·육성 6. 통일촉진을 위한 각종행사	
홍 보 2 담 당 관	1. 통일에 관한 국내홍보 2. 각종 통일홍보자료의 개발·보급 3. 국내언론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 4. 통일홍보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7.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통일연수소] 서 무 과	1. 통일에 관한 해외홍보 2. 통일에 관한 해외홍보자료의 개발·보급 3. 재외국민에 대한 통일지지기반 확산 4. 북한선전자료의 조사·분석 및 평가	* 통일연수소 직제 1986·12·26 대통령령제12012호 전문개정
교 학 과	1. 보 안 2. 관인과 관인대장의 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 사무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및 기타 문서관리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6. 경리·예산회계·결산·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차량관리 8. 기숙사 및 후생시설의 관리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비상계획 11. 기타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연 수 과	1. 연수기본계획의 수립 2. 교재편찬 및 연수기법개발 3. 교수의 강의 지원 4. 교수회의의 운영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연 수 과	1. 연수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연수주차출 및 등록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평 가 과	3. 연수진행 및 강사의 초빙등 섭외활동 4. 수료증발급 및 연수실적 통계 5. 분임활동 및 합숙생활지도 6. 연수생급식 및 보건관리 7. 연수기자재의 운영 1. 연수효과의 측정 및 평가 2. 심사분석 3. 국내외 순회연수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운 영 과	1. 전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북한자료의 편집·제작 및 교체 3. 통일문제상담 및 관람안내 4. 통일대화의 광장 운영 5. 실적통계 및 효과측정 6. 영상·음향·방송기재의 운영	
관 리 과	1. 이수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이수자 학적관리 및 제증명 발급 3. 이수자 계도활동 및 교육자료 지원 4. 우수계도활동자 포상 5. 이수자의 국민계도실적 통계·분석 6. 자료실의 운영	
【공 보 처】 공보정책실 홍보조사국 기 획 과	1. 대국민 직접홍보의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2. 대국민 당면 주요 홍보기획 3. 각 원·부·처·청 및 시·도 공보관계자의 교육·훈련 4. 해외공보관의 지도·감독 5.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공보처 직제 (1990·1·3 대통령령제12898호) ○ 매스컴을 통한 청소년 교육
홍 보 과	1. 국가이념 및 국민정신계도에 관한 홍보 2. 대국민 홍보기법의 개발 3. 각종 대국민 홍보책자 발간 및 배포 4. 지방홍보업무의 지도·조정 및 감독 5. 민간사회단체의 지도·육성 6. 정보시책광고에 관한 사항 7. 국립영화제작소의 지도·감독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여 론 조 사 과	1. 국민의식 및 국내외 여론조사 2. 국정모니터제도 운영 3. 홍보효과 측정 4. 국정뉴스 발간	
관 리 과	1.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조사·연구 및 홍보논리 개발 2. 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홍보자료의 효율적 배포방법 개발 및 배포체계의 유지관리 4. 국내외 각종홍보자료 수집·분석 및 관리 5. 홍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홍보자료실 운영	
사 진 담 당 과	1. 정부기록사진의 촬영 및 보관 2. 홍보사진의 촬영·제작 및 배포 3. 보도사진의 촬영 지원 4. 영상홍보자료의 제작 및 보급	
매 체 국 신 문 과	1. 언론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2. 일간신문 및 통신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외국정기간행물의 국내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 4. 정보자료업무에 관한 사항 5. 언론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6. 언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일간신문 및 통신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잡 지 과	1. 주간이하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주간이하 정기간행물 및 잡지판권 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3. 주간이하 정기간행물의 납본 및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 송 1 과	1. 방송정책의 수립 2. 방송국 설립허가 추천 3. 방송의 국제교류 활동 지원 4. 외국방송국 국내지사 설치허가 5. 방송관련 단체의 지원 및 협조 6.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방 송 2 과		1. 방송제작활동에 대한 지원 업무 2. 방송문화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3. 국내외 방송자료의 수집 및 연구	
유 선 방 송 과		1. 유선방송 정책수립 2. 유선방송사업의 허가 업무 3. 유선방송 시설의 기술지도 4. 유선방송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광고진흥국			
광 고 정 책 과		1. 광고정책의 수립 2. 광고제도 및 광고문화발전에 관한 사항 3. 광고관련 조성자금의 운용 3. 광고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육성 4. 광고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육성 5.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광 고 진 흥 과		1. 광고산업의 육성·지원 2. 국제광고협력·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3. 광고전문인력 양성 지원 4. 광고제작기술 발전 지원 5. 해외광고시장 개발 지원	
지 도 과		1. 광고윤리에 관한 사항 2. 광고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 3. 광고연구활동의 육성·지원 4. 광고공익사업 지원 5. 건전 광고문화 활동의 지도·육성	
[국립영화제작소]			* 국립 영화제 작 소 직제 (1970·10·13) 대통령령제6903호
기 획 과		1. 보안 및 관인관수 2.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및 편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인사 관리 4. 예산 및 회계 5. 국유재산관리, 물품의 조달 및 관리 6. 영화제작의 기획·조정 7. 영화의 배포 및 영사 8.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78-8-26]	
제 작 1 과		1. 대안뉴스 및 시사특집 영화제작 2. 동화촬영 및 원판관리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제 작 2 과	[전문개정 78·8·26]	1. 국내 홍보용 문화영화의 제작 2. 영화의 편집 및 미술실의 관리	
제 작 3 과	[전문개정 78·8·26]	1. 해외홍보용 문화영화의 제작 2. 녹음 및 녹화실의 관리	
현 상 과	[전문개정 78·8·26]	1. 영화의 현상 및 인화 2. 현상약품의 조제 3. 현상기기의 영선 4. 영화화질의 검사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직제 1984·12·31
기념사업국			(대통령령제11594호)
교 육 과		1.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취학관리업무의 지도·감독 2.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사항의 기록 및 유지에 대한 지도·감독 3. 교육비 지급에 관한 지도·감독 4. 장학업무의 관리 5. 국가유공자 연수교육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6. 국가유공자를 통한 애국정신계도활동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전상 예우에 관한 계획 수립 8. 양육·양로보호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전문개정 ○ 보훈대상자녀 지원 ○ 무의탁보훈대상자녀의 수용 보호
	[본조신설 90·2·6]		
보 훈 국 보 훈 과		1. 국가유공자유가족의 지도·육성 2. 한국보훈복지공단단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3. 국가유공자가 입은 재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취업알선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을 지도·감독 5. 취업자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을 지도·감독 6. 취업보호실행시대사업체 실태파악에 관한 지도·감독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작 업 지 도 과	7.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에 대한 직업훈련계획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용도 및 결산 2.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계획·관리 및 통계 3.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자재의 구매·조달 4.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관리	
교 화 과	1. 재소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2. 재소자의 직업훈련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재소자의 직업훈련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기능공양성 및 검정시험지도에 관한 사항 5. 재소자의 위탁훈련에 관한 사항	
관 리 과	1. 교정행정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및 운영계획 2. 교정행정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3. 교정행정관계물품 및 차량에 관한 사항 4. 재소자의 영치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5. 재소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6. 재소자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7. 재소자 및 위생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경 비 과	1.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조직 및 정원관리 2. 경비교도의 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경비교도의 복무감독 및 징계 4. 경비교도의 후생·원호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교정시설의 경비 및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6. 교도소등의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사항 7. 교도소등의 보안장비에 관한 사항	
【법원행정처】 송 무 국 민 사 과	1. 사건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참여·기록과 문서의 작성처리에 관한 사항 3. 기록과 부책의 정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4. 민사실체 및 절차법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1975. 12. 31) 대법원규칙제594호

기 관	업 무 내 용	비 고
형 사 과 특 별 과	5. 각급법원의 민사사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민사에 관한 법령질의 회답 7.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1. 사건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참여·기록과 문서의 작성처리에 관한 사항 3. 기록과 부책의 정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4. 형사실체 및 절차법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각급법원의 형사사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형사에 관한 법령질의 회답 1. 사건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참여·기록과 문서의 작성처리에 관한 사항 3. 기록과 부책의 정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4. 행정, 선거, 가사, 소년보호등 소송·심판·조정 에 관한 실체 및 절차법에 관한 조사연구 에 관한 사항 5. 각급 법원의 행정, 가사, 소년보호등 소송·심 판·조정사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의 지도감 독에 관한 사항 6. 행정, 선거, 가사, 소년보호등에 관한 법령질 의 회답	

Ⅲ. 各部處別 青少年 關係法令 一覽

외 무 부

- 여권법 (1961. 12. 31 법률제940호)
 - 同法 시행령 (1974. 12. 31 대통령령제7457호)
 - 同法 시행규칙 (1988. 12. 31 외무부령제139호)
- 재외국민등록법 (1949. 11. 24 법률제70호)
- 해외이주법 (1962. 3. 9 법률제1030호)
 - 同法 시행규칙 (1976. 1. 16 보건사회부령제508호)
- 인권에관한세계선언 (1948. 12. 10)
- 외무부직제 (1981. 11. 2 대통령령제10502호)

내 무 부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1980. 12. 31 법단체3269호)
 - 同法시행령 (1981. 3. 2 대통령령제10226호)
- 경찰관직무집행법 (1981. 4. 13 법단체3427호)
 - 同法시행령 (1981. 6. 11 대통령령제10346호)
- 미성년자보호법 (1961. 12. 31 법률제834호)
 - 同法시행령 (1970. 6. 19 대통령령제5098호)
- 도로교통법 (1984. 8. 4 법률제3744호)
 - 同法시행령 (1985. 2. 2 대통령령제11618호)
 - 同法시행규칙 (1985. 2. 6 내무부령제426호)
- 소방법 (1975. 12. 31 법단체2802호)
 - 同法시행령 (1981. 11. 6 대통령령제10619호)
 - 同法시행규칙 (1982. 6. 5 내무부령제314호)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1982. 9. 15 내무부령제380호)
- 방화규정 (1970. 6. 19 대통령령제5091호)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장학규정 (1979. 7. 21 대통령령제9541호)
- 경범죄처벌법 (1983. 12. 30 법단체3680호 전문개정)
 - 同法시행령 (1981. 3. 16 대통령령제10255호)
 - 同法시행규칙 (1981. 4. 13 내무부령제346호)
- 지방자치법 (1988. 4. 6 법단체4004호 전문개정)
 - 同法시행령 (1988. 5. 7 대통령령제12444호 전문개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88. 4. 6 법률제4005호)
- 주민등록법 (1962. 5. 10 법단체1067호)

● 광고물등 관리법	(1962 · 1 · 20 법률제988호)
● 유선 및 도선업법	(1980 · 1 · 4 법률제3225호)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1983 · 2 · 1 대통령령제11034호 전문개정)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1979 · 7 · 21 대통령령제9541호)
● 경찰대학설치법	(1979 · 12 · 28 법률제3172호)
○ 경찰대학의 조직과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1980 · 4 · 10 대통령령제9847호)
● 사격및 사격장 단속법	(1980 · 1 · 4 법률제3226호 전문개정)
· 同法시행령	(1980 · 4 · 26 대통령령제9856호 전문개정)
· 同法시행규칙	(1980 · 6 · 28 내무부부령제323호)
● 총포 · 도검 · 화약류등 단속법	(1984 · 8 · 4 법률제3743호 전문개정)
· 同法시행령	(1985 · 2 · 2 대통령령제11617호 전문개정)
· 同法시행규칙	(1985 · 2 · 6 내무부부령제427호 전문개정)
● 민방위기본법	(1975 · 7 · 25 법률제2776호)
· 同法시행령	(1975 · 8 · 22 대통령령제7753호)
· 同法시행규칙	(1975 · 5 · 17 내무부부령제213호)
○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1980 · 3 · 11 대통령령제9808호)
· 경찰서직제	(1973 · 7 · 14 대통령령제6764호)
· 내부부직제	(1981 · 11 · 2 대통령령제10504호 전문개정)

재 무 부

● 세무대학설치법	(1981 · 4 · 13 법률제34201호)
○ 세무대학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981 · 12 · 31 대통령령제10692호)
● 조세감면규제법	(1981 · 12 · 31 법률제3481호 전문개정)
· 同法시행령	(1981 · 12 · 31 대통령령제10670호 전문개정)
· 同法시행규칙	(1982 · 3 · 25 재무부부령제1519호)
● 세무사법	(1961 · 9 · 9 법률제712호)
● 전화세법	(1973 · 3 · 14 법률제2615호)
· 同法시행령	(1973 · 12 · 31 대통령령제6993호)

법 무 부

○ 소년원분원설치에 관한 건	(1969 · 7 · 24 법무부령제149호)
○ 재소자및 원생급식관리위원회규정	(1983 · 9 · 7 대통령령제11226호)
○ 귀휴심사위원회규칙	(1969 · 7 · 24 법무부령제145호)
○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규칙	(1982 · 2 · 11 법무부령제238호)
○ 위탁소년감별판정위원회규칙	(1982 · 2 · 11 법무부령제239호)
● 사법시설등조성법	(1976 · 12 · 22 법률제2903호)
· 同法시행령	(1977 · 12 · 8 대통령령제8763호)

- 검찰사건사무규칙 (1981. 12. 24 법무부령제230호)
- 국적법 (1948. 12. 30 법률제16호)
- 출입국관리법 (1983. 12. 31 법률제3694호)
 - 同法시행령 (1984. 6. 30 대통령령제11456호)
 - 同法시행규칙 (1984. 7. 24 법무부령제264호)
- 보호관찰법 (1988. 12. 31 법률제4059호)
 - 同法시행령 (1989. 6. 23 대통령령제12736호)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1956. 1. 12 법률제380호)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1975. 10. 28 법무부령제196호)
- 행정법 (1950. 3. 2 법률제105호)
 - 同法시행령 (1969. 10. 14 대통령령제4128호)
- 형 법 (1953. 9. 18 법률제293호)
- 가석방단속규정 (1970. 2. 16 대통령령제4628호)
- 가석방심사등에 관한 규칙 (1978. 7. 4 법무부령제206호)
- 수형자등교육규칙 (1982. 11. 15 법무부령제247호)
- 귀휴시행규칙 (1969. 8. 23 법무부령제161호)
- 교정누진처우규정 (1969. 5. 16 법무부령제111호)
- 재소자의류 및 침구제식등규칙 (1985. 4. 15 법무부령제272호 전문개정)
- 재소자주·부식급여규칙 (1988. 6. 24 법무부령제311호 전문개정)
- 갱생보호법 (1986. 12. 23 법률제3858호 전문개정)
 - 同法시행령 (1987. 2. 13 대통령령제12074호 전문개정)
- 갱생보호사업운영규칙 (1987. 8. 28 법무부령제302호 전문개정)
- 소년원법 (1988. 12. 31 법률제4058호)
 - 同法시행령 (1989. 12. 22 대통령령제12856호)
- 소년원및 소년감별소급여규칙 (1987. 4. 2 법무부령제299호)
- 소년법 (1988. 12. 31 법률제4057호 전문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1983. 6. 16 법률제3693호)
- 화약병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89. 6. 16 법률제4129호)
- 검찰청법 (1986. 12. 31 법률제3882호 전문개정)
-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검찰청의 명칭및 위치에 관한 규정 (1970. 3. 30 대통령령제4816호)
-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1973. 1. 25 대통령령제6472호 전문개정)
 - 법무연수원직제 (1972. 11. 9 대통령령제6376호)
 - 교도소직제 (1973. 7. 14 대통령령제6765호)
 - 소년원직제 (1977. 4. 30 대통령령제8555호 전문개정)
 - 보호관찰소직제 (1989. 5. 26 대통령령제12713호)
 - 법무부직제 (1973. 3. 14 대통령령제6570호 전문개정)

- 군인자녀교육보호법
 - ・ 同法시행령 (1973 · 3 · 10 대통령령제6538호)
- 군형법 (1962 · 1 · 20 법률제1003호)
- 군행형법 (1962 · 1 · 20 법률제1005호)
 - ・ 同法시행령 (1970 · 6 · 16 대통령령제5057호)
- 병역법 (1983 · 12 · 31 법률제3696호)
 - ・ 同法시행령 (1984 · 9 · 22 대통령령제11511호)
 - ・ 同法시행규칙 (1985 · 5 · 7 국방부령제370호)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1971 · 6 · 26 대통령령제5682호)
- ・ 학생군사교육실시령시행규칙 (1971 · 3 · 10 국방부령제223호, 문교부령제291호)
- 사관학교설치법 (1955 · 10 · 1 법률제374호)
- 단기사관학교설치법 (1974 · 12 · 21 법률제2703호)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1975 · 12 · 31 법률제2828호)
-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1970 · 12 · 31 법안제2262호)
- 군인연금법 (1963 · 1 · 28 법안제1260호)
 - ・ 同法시행령 (1970 · 6 · 16 대통령령제5058호)
 - ・ 同法시행규칙 (1969 · 11 · 26 국방부령제199호 한글화)
- 군기술위탁생규정 (1970 · 6 · 16 대통령령제5052호)
- 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규칙 (1981 · 11 · 2 대통령령제10534호 전문개정)
- ・ 병무청직제 (1970 · 3 · 20 대통령령제5281호)
- ・ 지방병무관서직제 (1981 · 11 · 2 대통령령제1053호 전문개정)
- ・ 국방부직제 (1981 · 11 · 2 대통령령제10530호 전문개정)

교 육 부

- 교육법 (1949 · 12 · 31 법률제86호)
 - ・ 同法시행령 (1970 · 2 · 19 대통령령제4589호)
-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 (1985 · 2 · 21 대통령령제11626호)
-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등의 설치기준령 (1977 · 2 · 28 대통령령제8462호)
 - ・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등의 설치기준령시행규칙 (1977 · 3 · 16 문교부령제406호)
-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1977 · 9 · 13 문교부령제413호)
- 교과용도서제에 관한 규칙 (1977 · 8 · 22 대통령령제8660호)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1969 · 7 · 19 문교부령제227호)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1969 · 7 · 16 문교부령제226호)
-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료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평가 시험규칙 (1976 · 9 · 25 문교부령제394호)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1990 · 4 · 7 법률제4227호)

- 국립학교설치령 (1977. 8. 30 대통령령제8672호)
-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1972. 3. 9 대통령령제6106호)
-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시행규칙 (1972. 3. 28 문교부령제293호)
-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1982. 4. 6 대통령령제10786호)
-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1974. 1. 4 대통령령제7008호)
-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 (1974. 2. 25 문교부령제335호)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1982. 12. 31 법률제3634호)
- 학교시설·설비기준령 (1969. 12. 4 대통령령제4398호)
- 각종학교등의 체육장기준에 관한 규칙 (1976. 12. 6 문교부령제399호)
- 대학설치기준령 (1982. 12. 31 대통령령제10983호)
- 전문대학설치기준령 (1978. 7. 4 대통령령제9078호)
- 교육공무원법 (1981. 11. 23 법률제3458호)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1969. 12. 4 대통령령제4393호)
- 교원 연수원령 (1989. 12. 30 대통령령제12891호)
- 교원 연수원령시행규칙 (1972. 12. 29 문교부령제307호)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1973. 12. 20 법률제2650호)
- 同法시행령 (1974. 1. 4 대통령령제7005호)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여 사업위탁관리규칙 (1981. 11. 16 문교부령제493호)
- 장학금규정 (1969. 11. 25 대통령령제4310호)
- 장학금규정 시행규칙 (1973. 8. 20 문교부령제323호)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관한규칙 (1969. 7. 19 문교부령제211호)
- 과학교육진흥법 (1967. 3. 30 법률제1927호)
- 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 (1972. 7. 28 대통령령제6305호)
- 특수교육진흥법 (1977. 12. 31 법률제3053호)
- 同法시행령 (1978. 8. 30 대통령령제9151호)
- 同法시행규칙 (1978. 12. 30 문교부령제435호)
- 유아교육진흥법 (1982. 12. 31 법률제3635호)
- 同法시행령 (1983. 6. 9 대통령령제11141호)
-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1973. 3. 14 법률제2616호)
- 同法시행령 (1973. 10. 11 대통령령제6899호)
- 학교보건법 (1967. 3. 30 법률제1928호)
- 同法시행령 (1969. 12. 25 대통령령제4311호)
- 사회교육법 (1982. 12. 31 법률제3648호)
- 同法시행령 (1983. 9. 10 대통령령제11230호)
- 국립중앙도서관열람규칙 (1975. 2. 27 문교부령제355호)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1984. 4. 10 법률제3728호)
- 시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시행령 (1985. 3. 21 대통령령제11665호)
- 시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985. 5. 8 문교부령제539호)
-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1969. 7. 28 법률제2118호)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1981. 4. 13 법률제3434호)
-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1984. 12. 31 법률제3785호)

-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1963 · 4 · 27 법률제1335호)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1985 · 12 · 31 대통령령제11826호)
-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 (1977 · 3 · 18 대통령령제8511호)
- 사립학교법 (1963 · 6 · 26 법률제1362호)
 - 同法시행령 (1969 · 12 · 4 대통령령제4396호)
- 교육법시행령제7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예능계학과외의 범위지정에 관한 규칙 (1982 · 1 · 7 문교부령제497호)
- 도서 · 벽지교육진흥법 (1967 · 1 · 16 법률제1870호)
- 과학교육진흥법 (1967 · 3 · 30 법률제1927호)
 - 문교부직제 (1986 · 8 · 25 대통령령제11959호 전문개정)
 - 서울특별시 · 직할시 · 도의 교육위원회직제 (1987 · 9 · 3 대통령령제12244호 전문개정)
 - 국립중앙도서관직제 (1969 · 12 · 4 대통령령제4384호 한글화)

문 화 부

- 국립국악원 대관규칙 (1988 · 6 · 8 문화공보부령제97호)
-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 (1975 · 5 · 1 문화공보부령제46호)
- 중앙국립극장대관규칙 (1982 · 9 · 11 문화공보부령제75호)
- 문화예술진흥법 (1972 · 8 · 14 법률제2337호)
 - 同法시행령 (1972 · 9 · 29 대통령령제6357호)
- 공연법 (1961 · 12 · 30 법률제902호)
 - 同法시행령 (1982 · 3 · 11 대통령령제10755호)
 - 同法시행규칙 (1982 · 5 · 22 문화공보부령제74호)
- 영화법 (1973 · 2 · 16 법률제2536호)
 - 同法시행령 (1973 · 2 · 17 대통령령제6507호)
 - 同法시행규칙 (1985 · 7 · 5 문화공보부령제87호)
- 음반에 관한 법률 (1967 · 3 · 30 법률제1944호)
 - 同法시행령 (1971 · 3 · 16 대통령령제5571호)
 - 同法시행규칙 (1978 · 8 · 14 문화공보부령제64호)
- 문화재보호법 (1982 · 12 · 31 법률제3644호)
 - 同法시행령 (1983 · 8 · 3 대통령령제11184호)
 - 同法시행규칙 (1983 · 9 · 19 문화공보부령제77호)
- 박물관법 (1984 · 12 · 31 법률제3775호)
 - 同法시행령 (1985 · 7 · 6 대통령령제11723호)
 - 同法시행규칙 (1985 · 7 · 16 문화공보부령제88호)
- 국립중앙박물관유물복제규칙 (1975 · 1 · 4 문화공보부령제42호)
- 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1970 · 12 · 29 문화공보부령제21호)
- 국립박물관진열품관람규칙 (1974 · 4 · 1 문화공보부령제39호)
- 전통건축물보존법 (1984 · 12 · 31 법률제3777호)
 - 同法시행령 (1985 · 8 · 29 대통령령제11753호)

- 同法시행규칙 (1985. 12. 5 문화공보부령제89호)
- 독립기념관법 (1986. 5. 9 법률제3820호)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1961. 12. 30 법률제904호)
- 도서관법 (1987. 11. 28 법률제3972호)
 - 同法시행령 (1988. 8. 16 대통령령제12506호)
 - 우량도서선정규정 (1969. 9. 5 문화공보부령제14호)
-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1963. 12. 12 법률제1486호)
 - 同法시행령 (1970. 6. 30 대통령령제5141호)
 - 문화부직제 (1990. 1. 3 대통령령제12895호)
 - 국립현대미술관직제 (1986. 8. 18 대통령령제11957호 전문개정)
 - 국립중앙박물관직제 (1986. 8. 18 대통령령제11956호 전문개정)
 - 중앙국립극장직제 (1973. 7. 14 대통령령제6770호)
 - 문화재관리국직제 (1969. 11. 5 대통령령제4203호 한글화)

체육청소년

- 국민체육진흥법 (1982. 12. 31 법률제3612호)
 - 同法시행령 (1983. 8. 25 대통령령제11212호)
 - 同法시행규칙 (1988. 12. 31 체육부령 제12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989. 3. 31 법률제4106호)
 - 同法시행령 (1989. 7. 1 대통령령제12743호)
 - 同法시행규칙 (1989. 7. 12 체육부령제13호)
- 학교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1983. 2. 17 체육부령제1호)
-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1984. 2. 16 체육부령제6호)
- 청소년육성법 (1987. 11. 28 법률제3973호)
 - 同法시행령 (1988. 6. 9 대통령령제12460호)
 - 同法시행규칙 (1988. 12. 31 체육부령제12호)
- 체육·청소년단체에 심의위원회규정 (1989. 5. 30 체육부훈령제38호)
- 체육부소관 비영리법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983. 10. 28 체육부령제3호)
 - 학교급식법 (1981. 1. 29 법률제3356호)
 - 同法시행령 (1981. 9. 8 대통령령제10460호)
 - 同法시행규칙 (1983. 2. 25 체육부령제2호)
 - 체육부직제 (1982. 3. 20 대통령령제10767호)

농림수산부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75. 12. 31 법률제2887호)
 - 同法시행령 (1976. 4. 21 대통령령제8094호)

- 同法시행규칙 (1976 · 9 · 2 농수산부령제636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0 · 4 · 7 법률제4228호)
-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시행령 (1981 · 2 · 28 대통령령제10209호)
- 임업시험장수목원관람규칙 (1987 · 4 · 10 농림수산부령제969호)
- 산림법 (1980 · 1 · 4 법률제3232호)
- 同法시행령 (1980 · 7 · 19 대통령령제9968호)
- 同法시행규칙 (1980 · 8 · 29 내무부령제328호)
- 영농기술훈련규정 (1974 · 9 · 28 대통령령제7266호)
- 영농기술훈련규정 시행규칙 (1974 · 12 · 27 농수산부령제583호)
- 농업협동조합법 (1961 · 7 · 29 법률제670호)
- 축산업협동조합 (1980 · 12 · 15 법률제3276호)
- 산림조합법 (1980 · 1 · 4 법률제3231호)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1983 · 12 · 30 법률제3673호)
- 수산업협동조합 (1962 · 1 · 20 법률제1013호)
- 농림수산부직제 (1990 · 3 · 20 대통령령제12952호)
- 농촌진흥청직제 (1978 · 4 · 24 대통령령제8964호)
- 농촌진흥청소속연구소직제 (1976 · 12 · 31 대통령령제8391호)
- 농촌진흥청소속시험장직제 (1976 · 12 · 31 대통령령제8390호)
- 지방농촌진흥기구설치에 관한 규정 (1973 · 8 · 16 대통령령제6808호)
- 수산청직제 (1970 · 3 · 13 대통령령제4727호)
- 국립수산진흥원직제 (1985 · 4 · 26 대통령령제11691호)
- 국립수산기술훈련소직제 (1970 · 3 · 13 대통령령제4728호)

건 설 부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1963 · 10 · 14 법률제1415호)
- 국토이용관리법 (1972 · 12 · 30 법률제2408호)
- 同法시행령 (1983 · 5 · 30 대통령령제11137호)
- 同法시행규칙 (1983 · 10 · 14 건설부령제364호)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0 · 1 · 4 법률제3258호)
- 同法시행령 (1981 · 2 · 17 대통령령제10201호)
- 同法시행규칙 (1982 · 4 · 3 건설부령제323호)
- 수도권정비계획법 (1982 · 12 · 31 법률제3600호)
- 同法시행령 (1983 · 10 · 20 대통령령제11251호)
- 자연공원법 (1980 · 1 · 4 법률제3243호)
- 同法시행령 (1980 · 8 · 18 대통령령제9993호)
- 同法시행규칙 (1981 · 1 · 6 건설부령제282호)
- 도시계획법 (1971 · 1 · 19 법률제2291호)
- 同法시행령 (1971 · 7 · 22 대통령령제5721호)
- 同法시행규칙 (1976 · 4 · 3 건설부령제169호)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하수도법 (1979. 5. 21 건설부령제225호)
 - 주차장법 (1966. 8. 3 법률제1825호)
 - 도시공원법 (1979. 4. 17 법률제3165호)
 - 도시공원법
 - 同法시행령 (1980. 1. 4 법률제3256호)
 - 同法시행규칙 (1980. 10. 6 대통령령제10038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0. 10. 15 건설부령제275호)
 - 同法시행령 (1966. 8. 3 법률제1822호)
 - 同法시행령 (1969. 10. 20 대통령령제4153호)
 - 주택건설촉진법 (1986. 8. 30 건설부령제406호)
 - 同法시행령 (1977. 12. 31 법률제3075호)
 -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1978. 3. 14 대통령령제888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78. 10. 30 건설부령제213호)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칙 (1978. 5. 10 건설부령제202호)
 - 공동주택관리규칙 (1979. 4. 24 건설부령제221호)
 - 건축법 (1982. 2. 22 건설부령제318호)
 - 同法시행령 (1962. 1. 20 법률제984호)
 - 同法시행규칙 (1982. 8. 7 대통령령제10882호)
 - 건설부직제 (1982. 10. 30 건설부령제340호)
 - (1990. 3. 26 대통령령제12959호 전문개정)

노동부

- 근로기준법 (1953. 5. 10 법률제286호)
 - 同法시행령 (1969. 11. 10 대통령령제4220호)
- 기능자양성령 (1969. 11. 15 대통령령제4228호)
- 남녀고용평등법 (1987. 12. 4 법률제3989호)
 - 同法시행령 (1988. 7. 7 대통령령제12489호)
 - 同法시행규칙 (1988. 9. 9 노동부령제48호)
- 최저임금법 (1986. 12. 31 법률제3927호)
 - 同法시행령 (1987. 7. 1 대통령령제12207호)
 - 同法시행규칙 (1987. 11. 12 노동부령제42호)
- 산업안전보건법 (1990. 1. 13 법률제4220호)
 - 同法시행령 (1990. 7. 14 대통령령제13053호)
 - 同法시행규칙 (1982. 10. 29 노동부령제17호)
- 직업안전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67. 3. 30 법률제1952호)
 - 同法시행령 (1969. 11. 10 대통령령제4217호)
- 직업훈련기본법 (1981. 12. 31 법률제3507호 전문개정)
 - 同法시행규칙 (1986. 12. 31 노동부령제38호 전문개정)
- 직업훈련촉진기금법 (1976. 12. 31 법률제2974호)
 - 同法시행령 (1977. 3. 28 대통령령제8518호)

- 同法시행규칙 (1980 · 11 · 24 보건사회부령제659호)
- 국가기술자격법 (1973 · 12 · 31 법률제2672호)
- 同法시행령 (1982 · 4 · 29 대통령령제10802호 전문개정)
- 同法시행규칙 (1982 · 5 · 8 노동부령제11호 전문개정)
- 기능장려법 (1989 · 4 · 1 법률제4123호)
- 同法시행령 (1989 · 10 · 13 대통령령제12817호)
-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1981 · 12 · 31 법률제3506호)
- 기능대학법 (1981 · 12 · 31 법률제3509호 전문개정)
- 同法시행령 (1982 · 4 · 29 대통령령제10803호 전문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 11 · 5 법률제1438호)
- 근로감독관규정 (1983 · 5 · 12 대통령령제11129호)
- 노동통계조사시행규칙 (1975 · 5 · 31 보건사회부령제479호)
- 지방노동관직제 (1987 · 5 · 15 대통령령제12157호)
- 노동연수원직제 (1979 · 6 · 4 대통령령제9483호)
- 노동부직제 (1981 · 11 · 2 대통령령제10570호)

보건사회부

- 보건소법 (1962 · 9 · 24 법률제1160호)
- 同法시행령 (1976 · 4 · 15 대통령령제8087호)
- 식품위생법 (1986 · 5 · 10 법률제3823호)
- 同法시행령 (1986 · 11 · 11 대통령령제12000호)
- 同法시행규칙 (1987 · 3 · 28 보건사회부령제798호)
- 공중위생법 (1986 · 5 · 10 법률제3822호)
- 同法시행령 (1986 · 11 · 11 대통령령제11999호)
- 同法시행규칙 (1987 · 3 · 18 보건사회부령제797호)
- 전염병예방법 (1954 · 2 · 2 법률제308호)
- 同法시행령 (1969 · 11 · 17 대통령령제4267호)
- 同法시행규칙 (1977 · 8 · 19 보건사회부령제570호)
- 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 (1984 · 9 · 8 보건사회부령제754호)
- 결핵예방법 (1967 · 1 · 16 법률제1881호)
- 기생충질환예방법 (1966 · 4 · 25 법률제1789호)
- 同法시행규칙 (1969 · 6 · 4 보건사회부령제265호)
- 의료법 (1973 · 2 · 16 법률제2533호)
- 안마사에 관한 규칙 (1984 · 10 · 15 보건사회부령제757호)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별법 (1976 · 12 · 22 법률제2911호)
- 同法시행령 (1977 · 3 · 8 대통령령제8479호)
- 同法시행규칙 (1984 · 6 · 9 보건사회부령제747호)
- 마약법 (1957 · 4 · 23 법률제440호)
- 同法시행령 (1969 · 11 · 10 대통령령제4237호)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79. 12. 28 법률제3216호)
 - 同法시행령 (1980. 6. 9 대통령령제9900호)
- 대마관리법 (1976. 4. 7 법률제2895호)
 - 同法시행령 (1976. 6. 14 대통령령제8159호)
 - 同法시행규칙 (1976. 10. 26 보건사회부령제536호)
-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 (1963. 12. 13 법률제1492호)
 - 同法시행령 (1969. 9. 29 대통령령제4090호)
 - 同法시행규칙 (1969. 8. 11 보건사회부령제333호)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1987. 12. 4 법률제3988호)
 - 同法시행령 (1988. 3. 29 대통령령제12424호)
- 한국여성개발원법 (1982. 12. 31 법률제3632호)
- 사회복지사업법 (1970. 1. 1 법률제2191호)
 - 同法시행령 (1984. 2. 28 대통령령제11365호)
-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정 (1971. 9. 6 보건사회부령제379호)
- 사회복지사업기금법 (1980. 12. 31 법률제3336호)
- 생활보호법 (1982. 12. 31 법률제3623호)
 - 同法시행령 (1983. 12. 30 대통령령제11293호)
 - 同法시행규칙 (1984. 3. 31 보건사회부령제743호)
- 의료보호법 (1977. 12. 31 법률제3076호)
 - 同法시행령 (1978. 5. 23 대통령령제9029호)
 - 同法시행규칙 (1978. 9. 1 보건사회부령제606호)
- 아동복지법 (1981. 4. 13 법률제3438호)
 - 同法시행령 (1982. 2. 22 대통령령제10741호)
 - 同法시행규칙 (1983. 10. 10 보건사회부령제736호)
- 아동복지지도원등 자격시험규칙 (1970. 4. 24 보건사회부령제348호)
-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1961. 8. 31 법률제703호)
 - 同法시행령 (1969. 11. 10 대통령령제4235호)
- 장애인복지법 (1989. 12. 30 법률제4179호)
 -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1982. 2. 17 대통령령제10730호)
- 모자복지법 (1989. 4. 1 법률제4121호)
- 모자보건법 (1986. 5. 10 법률제3824호)
 - 同法시행령 (1986. 12. 31 대통령령제12046호)
 - 同法시행규칙 (1987. 4. 17 보건사회부령제800호)
- 입양특례법 (1976. 12. 31 법률제2977호)
 - 同法시행령 (1977. 3. 18 대통령령제8509호)
 - 同法시행규칙 (1977. 4. 8 보건사회부령제558호)
- 윤락행위등방지법 (1961. 11. 9 법률제771호)
 - 同法시행령 (1969. 11. 10 대통령령제4233호)
 - 同法에 의한 직업보도시설의 시설기준령 (1969. 11. 10 대통령령제4234호)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 8. 4 법률제2137호)
 - 同法시행령 (1969. 11. 27 대통령령제4326호)

- 同法시행규칙
 - 아동복지위원회규정
 - 국민연금법
 - 同法시행령
 - 同法시행규칙
 - 의료보험법
 - 同法시행령
 - 同法시행규칙
 - 국립사회복지연수원직제
 - 보건사회부직제
- (1970 · 5 · 9 보건사회부령제349호)
 (1981 · 12 · 31 대통령령제10689호 전문개정)
 (1986 · 12 · 31 법률제3902호 전문개정)
 (1987 · 8 · 14 대통령령제12227호 전문개정)
 (1987 · 10 · 14 보건사회부령제807호)
 (1976 · 12 · 22 법단체2942호 전문개정)
 (1977 · 3 · 14 대통령령제8487호 전문개정)
 (1977 · 4 · 25 보건사회부령제559호 전문개정)
 (1969 · 4 · 3 대통령령제3858호 한글화)
 (1981 · 11 · 2 대통령령제10565호 전문개정)

교 통 부

- 철도전시관진열품관람규칙
 - 교통안전법
 - 同法시행령
 - 同法시행규칙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同法시행령
 - 철도법
 - 철도운송규정
 -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同法시행령
 - 지하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 삭도 · 궤도사업법
 - 同法시행령
 - 同法시행규칙
 - 관광기본법
 - 관광진흥법
 - 同法시행령
 - 同法시행규칙
 -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 선원법
 - 同法시행령
 - 同法시행규칙
 - 해운항만청직제
 - 지방해운항만관서직제
 - 교통부직제
- (1988 · 4 · 8 교통부령제881호)
 (1979 · 12 · 28 법률제3184호)
 (1981 · 5 · 13 대통령령제10305호)
 (1985 · 7 · 1 교통부령제821호)
 (1986 · 12 · 31 법률제3911호)
 (1987 · 7 · 24 대통령령제12216호)
 (1961 · 9 · 18 법률제714호)
 (1969 · 12 · 11 대통령령제4451호)
 (1979 · 4 · 17 법률제3167호)
 (1979 · 10 · 13 대통령령제9641호)
 (1980 · 4 · 18 교통부령제655호)
 (1977 · 12 · 31 법률제3087호)
 (1978 · 8 · 26 대통령령제9145호)
 (1978 · 9 · 15 교통부령제604호)
 (1975 · 12 · 31 법률제2877호)
 (1986 · 12 · 31 법률제3910호)
 (1987 · 7 · 1 대통령령제12212호)
 (1987 · 7 · 7 교통부령제857호)
 (1984 · 12 · 31 법률제3785호)
 (1984 · 8 · 7 법률제3751호)
 (1985 · 9 · 12 대통령령제11764호)
 (1985 · 12 · 20 교통부령제830호)
 (1981 · 11 · 2 대통령령제10577호)
 (1981 · 11 · 2 대통령령제10578호)
 (1972 · 2 · 9 대통령령제5970호)

체 신 부

-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982·12·31 법률제3610호)
 - 同法시행규칙 (1983· 7· 1 체신부령제738호)
-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1982·12·31 법률제3601호)
 - 同法시행령 (1983· 9· 6 대통령령제11224호)
 - 체신부직제 (1983·12·30 대통령령제11298호 전문개정)

과학기술처

- 국립과학관전시품관람규정 (1971· 6·11 총리령제99호)
- 과학기술진흥법 (1967· 1·16 법률제1864호)
 - 同法시행령 (1969·10·21 대통령령제4166호)
- 전국과학전람회규정 (1969· 7·16 총리령제70호)
- 한국과학기술원법 (1980·12·31 법률제3310호)
-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1985· 7·26 총리령제303호)
- 한국과학재단법 (1976·12·22 법률제2943호)
- 원자력법 (1982· 4· 1 법산제3549호)
 - 국립과학관직제 (1990· 4·17 대통령령제12987호)
 - 과학기술처직제 (1985· 8·22 대통령령제11747호)

공 보 처

- 방송법 (1987·11·28 법률제3978호)
 - 同法시행령 (1988· 4·19 대통령령제12432호)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위원회규칙 제3호 제정 1988·10·18)
- 방송용광고심의운영요강 (방송위원회규칙 제9호 제정 1988·12·31)
- 방송용광고심의세칙 (방송위원회규칙 제26호 제정 1989· 1·10)
- 광고윤리강령
- ICC광고활동국제협의회 광고활동기준강령
- 한국광고업협회광고윤리강령
- 신문윤리강령
- 신문윤리실천요강
- 신문광고윤리강령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기준)
- 신문광고윤리강령·실천요강에 따른 광고규제세칙(其一)
- 도서잡지윤리강령
- 도서윤리실천요강

- 잡지윤리실천요강
-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
- 광고심의규정
- 인쇄출판물광고심의기준
- 인쇄출판물광고심의운영요강
- 유선방송관리법 (1936·12·31 법률제3914호)
 - 同法시행령 (1987·7·1 대통령령제12196호)
 - 同法시행규칙 (1990·4·21 총리령제365호)
- 국립영화제작소직제 (1970·10·13 대통령령제6903호)
- 공보처직제 (1990·1·3 대통령령제12898호)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1984·8·2 법단체제3742호)
 - 同法시행령 (1984·12·31 대통령령제11613호)
-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1978·12·6 법률제3156호)
 - 국립보훈원직제 (1972·2·15 대통령령제6037호 전문개정)
 - 지방보훈관서직제 (1984·12·31 대통령령제11595호 전문개정)
 - 국가보훈처직제 (1984·12·31 대통령령제11594호 전문개정)

환 경 처

- 환경보전법 (1977·12·31 법률제3078호)
 - 同法시행령 (1978·6·30 대통령령제9066호)
 - 同法시행규칙 (1987·8·3 보건사회부령제805호 전문개정)
- 폐기물관리법 (1986·12·31 법률제3904호)
 - 同法시행령 (1987·4·1 대통령령제12119호)
 - 同法시행규칙 (1987·5·30 보건사회부령제802호)
- 환경처직제 (1990·1·3 대통령령제12899호)

대 법 원

- 법원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1984·4·13 대법원규칙제876호)
-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1963·12·13 법률제1497호)
- 법원공무원 국내여비규칙 (1965·5·21 대법원규칙제255호)
- 법원공무원국외여비규칙 (1965·5·21 대법원규칙제256호)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규칙 (1968·5·29 대법원규칙제309호)
- 법원공무원규칙 (1973·9·14 대법원규칙제537호 전문개정)

- 가사심판법
 - 가사심판규칙 (1963 · 7 · 31 법률제1375호)
 - 가사심판규칙 (1964 · 3 · 14 대법원규칙제230호)
- 호적법
 - 同法시행령 (1960 · 1 · 1 법률제535호)
 - 同法시행규칙 (1970 · 2 · 7 대통령령제4581호)
 - 同法시행규칙 (1976 · 2 · 20 대법원규칙제600호)
- 소년심판규칙 (1989 · 7 · 4 대법원규칙제1079호 전문개정)
- 인사소송법 (1961 · 12 · 6 법률제803호)
- 민사소송법 (1960 · 4 · 4 법률제547호)

IV. 청소년 육성위원회 현황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기구표

국 무 총 리

청소년 육성 위원회

위 원 장 : 국무총리

부위원장 : 경제기획원장관

체육부장관

위 원 :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국토통일원장관, 정무장관(제2), 서울특별시장 및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과 청소년의 보호, 육성, 선도 및 자활활동의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위원장포함 40인이내
(간사 : 체육부 소속 공무원)

(전문위원 : 5인이내)

청소년 육성 실무위원회

위 원 장 : 체육부 차관

부위원장 : 체육부소속 2급이상의 공무원
인자

위 원 : 경제기획원,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교부, 문화부, 상공부, 건설부, 보건사회부, 노동부, 교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국토통일원, 정부장관(제2)실, 행정조정실, 치안본부, 농촌진흥청 및 서울특별시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이나 특정공무원중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각 1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및 한국청소년연구원장이 소속 임·직원중에서 지명하는 각 1인,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체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위원장포함 40인이내
(간사 : 체육부 소속 공무원)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위 원 장 : 지방자치단체의장

부위원장 : 위원중 호선

위 원 : 교육장 및 경찰관서장, 관계행정기관공무원, 청소년단체지도자 및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위원장포함 20인 이내
(간사 : 관계공무원 약간인)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기능

종 류	기 능
청 소 년 육 성 위 원 회	1.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시설 기타 청소년의 육성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및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인격형성·심신단련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의 국제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사항
청소년육성정책기획위원회	1.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청소년육성위원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관계기관간의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기타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1.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지역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시설 기타 청소년의 육성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의 인격형성·심신단련 기타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사항

V. 청소년관계법령의 제정시기 및 관련영역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가사심판법	1963· 7·31 법률 제1375호	청소년의 선도·보호
○가사심판규칙	1964· 3·14 대법원규칙 제230호	"
○가식방식사용에관한규칙	1978· 7· 4 법무부령 제206호	청소년 연령·호칭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1973· 3·30 대통령령제6615호	기본법령
○각종학교등의체육장기준에 관한규칙	1976·12· 6 문교부령 제399호	청소년 시설·공간의 설치·관리
○각종학교에관한규칙	1977· 9·13 문교부령 제413호	청소년의 학업·진학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1982· 4· 6 대통령령제 10786호	"
○갱생보호법	1986·12·23 법률 제3858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교정·교화
○갱생보호법시행령	1987·2·13 대통령령제12074호 전문 개정	"
○갱생보호사업운영규칙	1977· 6· 7 법무부령 제201호	"
○건축법	1962· 1·20 법률 제984호	청소년의 시설·공간 의 설치·관리
○건축법시행령	1982· 8· 7 대통령령 제1082호 전문 개정	청소년 시설·공간의 설치·관리
○건축사법	1963·12·16 법률 제1536호	청소년 연령·호칭
○결핵예방법	1967· 1·16 법률 제1881호	청소년의 건강·보건
○경범죄처벌법	1983·12·30 법률 제3680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선도·보호
○경범죄처벌법시행령	1981· 3·16 대통령령 제10255호	청소년의 선도·보호
○경범죄처벌법시행규칙	1981·4·13내무부령제346호	청소년의 선도·보호
○경찰대학설치법	1979·12·28 법률 제3172호	청소년의 연령·호칭
○경찰대학의조직과학사운영에관한규정	1980· 4·10 대통령 제9847호	"
○경찰관직무집행법	1981· 4·13 법률 제3427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선도·보호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1981·6·11 대통령령 제10346호 전문 개정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1969·7·16 문교부령 제227호 한글화	청소년의 학업·진학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1969· 7·16 문교부령 제227호한글화	청소년의 학업·진학
○공동주택관리규칙	1982· 2·22 건설부령 제318호 전문 개정	청소년 시설·공간의 설치·관리
○공연법	1961·12·30 법률 제902호	청소년 시설·공간의 이용·관람
○공연법시행령	1982· 3·11 대통령령 제10755호	"
○공연법시행규칙	1982· 5·22 문화공보부령 제74호 전 문개정	"

법령명	제정	주요 관련 영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975·12·31 법률 제2814호	청소년 유관기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1976· 4· 1 대통령령 제8059호	청소년 유관기관
○공중위생법	1986· 5·10법률 제3822호	청소년 관련위생·풍속
○공중위생법시행규칙	1987· 3·18보건사회부령 제797호	"
○관광진흥법	1986·12·31법률 제3910호 전문개정	청소년시설·공간의 설치·관리
○관광진흥법시행령	1987· 7· 1 대통령령 제2212호 전문 개정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1987· 7· 7 교통부령 제857호 전문 개정	청소년관련대체환경
○광고물등관리법	1962· 1·20 법률 제988호	
○교원연수에관한규정	1972· 9·25 대통령령 제6352호	청소년지도자
○교원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	1972·12·29 문교부령 제307호	"
○교육공무원법	1981·11·23 법률 제3458호 전문개정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1969·12· 4 대통령령 제4359호	"
○교육법	1945·12·31 법률 제86호	청소년의 학업·진학
○교육법시행령	1970· 2·19 대통령령 제4589호한글화	"
○국가기술자격법	1973·12·31 법률 제2672호	청소년의 근로·복무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1982· 4·29 대통령령 제10802호 전 문개정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1982· 5· 8 노동부령 제11호 전문개정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4· 8· 2 법률 제3742호	청소년의 복리·후생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84·12·31 대통령령 제11613호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1975·12·31 법률 제2828호	연령·호칭
○국내여비규정	1970·11·3 대통령령 제5380호한글화	"
○국립과학관전시품관람규정	1971· 6·11 총리령 제99호	청소년시설공간의 이 용·관람
○국립국악원대관규칙	1988· 6· 8 문화공보부령 제97호	"
○국립박물관진열물관리규칙	1974· 4· 1 문화공보부령 제39호 전 문개정	"
○국립중앙도서관도서열람규칙	1975· 2·27 문교부령 제355호전문개정	"
○국립중앙박물관유물복제규칙	1975· 1· 4 문화공보부령 제42호	"
○국립학교설치령	1977· 8·30 대통령령 제8672호 전문 개정	청소년의 학업진학
○국립현대미술관전시품관람규칙	1975· 5· 1 문화공보부령 제46호	청소년의 시설 공간 의 이용·관람
○국민연금법	1986·12·31 법률 제3902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국민연금법 시행령	1987· 8·14 대통령령 제12227호 전 문개정	"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1978·10·30 건설부령 제213호	청소년 유관기관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국민체육진흥법	1982.12.31 법률 제3612호 전문개정	청소년 시설·공간의 설치·관리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1983. 8.25 대통령령 제11212호 전문개정	"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1984. 2.16 체육부령 제5호	"
○국민투표법	1989. 3.25 법률 제4886호 전문개정	청소년 유관기관 연령·호칭
○국외여비규정	1970. 8. 3 대통령령 제5260호	연령·호칭
○국외유학에관한규정	1985.12.31 대통령령 제11826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학업·진학
○국적법	1948.12.20 법률 제16호	연령·호칭
○국제기술협력규정	1985. 2.21 대통령령제11634호 전문개정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1963.10.14 법률 제1415호	청소년 시설·공간의 조성
○국토이용관리법	1972.12.30 법률 제2408호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83. 5.30 대통령령 제1137호 전문개정	"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1982.3.27 국회규정 제144호전문개정	연령·호칭
○국회방청규칙	1964.5.11 국회규칙 제6호	"
○국회사무처 사무분장규정	1985.2.27 국회규정 제182호전문개정	"
○국회의원 선거법	1988.3.17 법률제4003호전문개정	"
○군기술위탁생규정	1970.6.16 대통령령 제5052호	"
○군인연금법	1963.1.28 법률 제1260호	"
○군인연금법시행령	1970.6.16 대통령령 제5058호	"
○군인자녀교육보호법	1972.12.30 법률 제2429호	청소년의 복리·후생
○군인자녀교육보호법시행령	1973.3.10 대통령령 제6538호	"
○군행형법시행령	1970.6.16 대통령령 제5057호	연령·호칭
○근로기준법	1953.5.10 법률 제286호	청소년의근로·복무
○근로기준법시행령	1969.11.10 대통령령 제4220호	"
○기능자양성령	1969.11.15 대통령령 제4228호	"
○기능장려법	1989.4.1 법률 제4123호	"
○기능장려법시행령	1989.10.13 대통령령 제12817호	"
○기부금품모집금지법	1951.11.7 법률 제224호	청소년유관기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시행령	1970.6.19 대통령령 제5085호	"
○기생충질환예방법	1966.4.25 법률 제1789호	청소년의 건강·보건
○기생충질환예방법시행규칙	1969.6.4 보건사회부령제265호한글화	"
○남녀고용평등법	1987.12.4 법률 제3989호	청소년의 근로·복무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1988.7.7 대통령령 제12489호	"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1988.9.9 노동부령 제48호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시행령	1981.2.28 대통령령 제10209호	청소년의 복리·후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0.4.7 법률 제4228호	"
○농업협동조합법	1961.7.29 법률 제670호	연령·호칭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975.12.31 법률 제2887호전문개정	청소년시설공간의 조성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76.4.21 대통령령 제8094호전문개정	"
○단기사관학교설치법	1974.12.21 법률 제2703호	연령·호칭
○담배사업법	1988.12.31 법률 제4065호	청소년의 건강·보건
○담배사업법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87호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1989.1.24 재무부령 제1769호	"
○대마관리법	1976.4.7 법률 제2895호	"
○대마관리법시행령	1976.6.14 대통령령 제8159호	"
○대마관리법시행규칙	1976.10.26 보건사회부령 제536호	"
○대학설치기준령	1982.11.31대통령령제10983호전문개정	청소년의 학업·진학
○대한민국헌법	1987.11.7 법률 제3937호	기본법령
○대한적십자사조직법	1987.12.4 법률 제3988호전문개정	청소년단체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1988.3.29 대통령령 제12424호전문개정	"
○도로교통법	1984.8.4 법률 제3744호전문개정	청소년의 선도·보호
○도서관법	1987.11.28 법률 제3972호전문개정	청소년시설·공간의 이용·관람
○도서관법시행령	1988.2.16 대통령령 제12506호	"
○도·소매업지흥법시행령	1987.7.1 대통령령 제12211호	연령·호칭
○도시계획법	1971.1.19 법률 제2291호	청소년시설·공간의조성
○도시계획법시행령	1971.7.22 대통령령 제5721호전문개정	"
○도시계획시행규칙	1976.4.3 건설부령 제169호전문개정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79.5.21 건설부령 제225호	"
○도시공원법	1980.1.4 법률 제3256호	청소년시설·공간의설 치·관리
○도시공원법시행령	1980.10.6 대통령령 제10038호	"
○도시공원법시행규칙	1980.10.15 건설부령 제275호	"
○독립기념관법	1986.5.9 법률 제3820호	청소년시설공간의이 용관람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1963.12.13 법률 제1492호	청소년의건강·보건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1990.4.7 법률 제4227호	청소년의학업·진학
○마약법	1957.4.23 법률 제440호	청소년의건강·보건
○마약법시행령	1969.11.10 대통령령 제4237호	"
○모자보건법	1986.5.10 법률 제3824호전문개정	청소년의복리후생
○모자보건법시행령	1986.12.31 대통령령 제12046호전문개정	"
○모자보건법시행규칙	1987.4.17 보건사회부령800호전문개정	"
○모자복지법	1989.4.1 법률 제4121호	"
○문화예술진흥법	1972.8.14 법률 제2337호	청소년시설공간의 이용·관람

법령명	제정	주요 관련 영역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1972.9.29 대통령령 제6357호	"
○문화재보호법	1982.12.31 법률제3644호전문개정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1983.8.3 대통령령제11184호전문개정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1983.9.19 문화공보부령제77호전문개정	"
○미성년자보호법	1961.12.13 법률 제834호	청소년의선도·보호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	1970.6.19 대통령령 제5098호	"
○민방위기본법	1975.7.25 법률 제2776호	연령·호칭
○민법	1958.2.22 법률 제471호	기본법령
○민사소송법	1960.4.4 법률 제547호	"
○박물관법	1984.12.31 법률 제3775호	청소년시설·공간의 이용·관람
○박물관법시행령	1985.7.6 대통령령 제11723호	"
○박물관법시행규칙	1985.7.16 문화공보부령 제88호	"
○방송법	1987.11.28 법률 제3978호	청소년관련매체환경
○방송법시행령	1988.4.19 대통령령 제12432호	"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1974.1.4 대통령령 제7008호	청소년의학업·진학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	1974.2.25 문교부령 제335호	"
○방송통신고등학교수료자의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규칙	1976.9.25 문교부령 제394호	"
○방화규정	1970.6.19 대통령령 제5091호	청소년시설·공간의 설치·관리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1968.5.29 대법원규칙 제309호	연령·호칭
○법원공무원여비규칙	1965.5.21 대법원규칙 제255호	연령·호칭
○법원공무원국외여비규칙	1965.5.21 대법원규칙 제256호	연령·호칭
○법원공무원규칙	1973.9.14 대법원규칙 제537호전문개정	"
○법인세법	1967.11.29 법률 제1964호	관련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70.8.20 대통령령 제5268호한글화	"
○병역법	1983.12.31 법률 제3696호전문개정	청소년의근로·복무
○병역법시행령	1984.9.22 대통령령제1151호전문개정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69.11.27 대통령령 제4326호	청소년의건강·보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1970.5.9 보건사회부령 제349호	청소년의건강·보건
○보건소법	1962.9.24 법률 제1160호	"
○보건소법시행령	1976.4.15 대통령령 제8087호	"
○보안관찰법시행령	1989.9.11 대통령령 제12807호전문개정	연령·호칭
○보안관찰법시행규칙	1989.9.11 법무부령 제328호전문개정	"
○보험업법시행령	1978.2.27 대통령령 제8865호전문개정	"
○보호관찰법	1988.12.31 법률 제4059호	청소년의교정·교화
○보호관찰법시행령	1989.6.23 대통령령제 12736호	"
○보호관찰법시행규칙	1989.7.1 법무부령 제326호	"
○보호소년처우심사위원회규칙	1982.2.11 법무부령 제238호	"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 후견직무에관한법률	1961.8.31법률제703호	청소년의복지후생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 관한법률시행령	1969.11.10 대통령령 제4235호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76.12.22 법률 제2934호 1976.12.31 대통령령 제8409호	관세법 "
○사적및사격장단속법 ○사적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 ○사관학교설치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1980.1.4 법률 제3226호전문개정 1980.4.26 대통령령 제9856호전문개정 1955.10.1 법률 제374호 1973.12.20 법률 제2650호 1974.1.4 대통령령 제7905호	연령·호칭 " " "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시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정 ○삭도·케도사업법 ○삭도·케도사업법시행규칙	1975.10.28 법무부령 제196호전문개정 1985.5.8 문교부령 제539호 1982.12.31 법률 제3648호 1983.9.10 대통령령 제1230호 1963.12.12 법률 제1485호 1970.6.30 대통령령 제5141호 1980.12.18 법률 제3286호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5호 1980.12.31 법률 제3336호 1970.1.1 법률 제2191호 1984.2.28 대통령령 제11365호전문개정 1971.9.6 보건사회부령 제379호 1977.12.31 법률 제3087호전문개정 1978.8.26 대통령령제9145호전문개정	청소년의선도·보호 청소년의학업·진학 " " 청소년단체 " 청소년의교정·교화 " 청소년의복지·후생 " " 청소년지도자 연령·호칭 "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림조합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 학금등의설치기준령 ○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 학금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 ○상공회의조법 ○상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 ○생활보호법 ○생활보호법시행령 ○생활보호법시행규칙	1980.1.4 법률 제3282호전문개정 1980.7.19 대통령령 제9968호전문개정 1980.1.4 법률 제3231호 1981.12.31 법률 제3532호 1982.8.9 대통령령 제10889호 1982.10.29 노동부령 제17호 1971.11.19 대통령령제 5846호전문개정 1977.2.28 대통령령 제8452호 1977.3.16 문교부령 제406호 1952.12.20 법률 제274호 1962.1.20 법률 제1000호 1980.12.13 법률 제3269호 1981.3.2 대통령령 제10226호 1982.12.31 법률 제33623호전문개정 1983.12.30 대통령령 제11293호전문개정 1984.3.31 보건사회부령 제743호	청소년시설공간의조성 " 연령·호칭 청소년의 근로·복무 " " 연령·호칭 청소년의학업·진학 " " 연령·호칭 기본법령 청소년단체 " 청소년의복지·후생 " "

법 명	제 정	주 요 관 련 영 역
○선박안전법시행령	1987. 8.13 대통령령 제12225호전문개정	연령 • 호칭
○선박직원법	1983.12.31 법률 제3715호전문개정	"
○선원법	1984. 8. 7 법률 제3751호전문개정	"
○선원법시행규칙	1985.12.20 교통부령 제1069호	"
○세무대학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	1981.12.31 대통령령 제10692호	"
○세무사법	1961. 9 9 법률 제712호	"
○소년법	1988.12.31 법률 제4057호 전문개정	청소년의교정 • 교화
○소년심판규칙	1989. 7. 4 대법원규칙 제1079호전문개정	"
○소년원및소년감별소급여규칙	1087. 4. 2 법률 제4058호 전문개정	"
○소년원법	1988.12.31 법률 제4058호 전문개정	"
○소년원법시행령	1989.12.22 대통령령 제12856호	"
○소득세법	1974.12.24 법률 제2705호 전문개정	관련 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전문개정	"
○소방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1980. 3.11 대통령령 제9808호	연령 • 호칭
○소방법	1975.12.31 법률 제2802호전문개정	청소년시설공간의설치관리
○소방법시행령	1981.11. 6 대통령령 제10619호전문개정	"
○소방법시행규칙	1982. 6 5 내무부령 제374호전문개정	"
○소방시설의설치 • 유지및위험물제조소 동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1982. 9.15 내무부령 제380호	"
○수도권정비계획법	1982.12.31 법률 제1013호	청소년시설공간의조성
○수산업협동조합법	1962. 1.20 법률 제1013호	연령 • 호칭
○수형자등교육규칙	1982.11.15 법무부령 제247호전문개정	청소년의교정 • 교화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1969. 7.28 법률 제2118호	청소년단체
○시범농업고등학교육성에관한규정	1972. 7.28 대통령령 제6305호	청소년의학업 • 진학
○식품위생법	1986. 5.10 법률 제3823호전문개정	청소년관련위생환경 • 풍속
○식품위생법시행령	1986.11.11 대통령령 제12000호전문개정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87. 3.28 보건사회부령 제798호전문개정	"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1982. 2.17 대통령령 제10730호	청소년의복지 • 후생
○아동복지법	1981. 4.13 법률 제3438호 전문개정	청소년의복지 • 후생
○아동복지법시행령	1982. 2.22 대통령령 제10741호전문개정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1983.10.10 보건사회부령 제736호전문개정	"
○아동복지위원회규정	1981.12.31 대통령령 제10689호전문개정	"
○아동복지지도원등자격시험규정	1970. 4.24 보건사회부령 제348호	청소년지도자
○아동의권리에관한조약	1989.12.20 제44회 UN총회	기본법령
○안마사에관한규칙	1984.10.15 보건사회부령 제757호	청소년관련위생환경 • 풍속
○약사법	1963.12.13 법률 제1491호	연령 • 호칭
○여객선운항관리규칙	1984.12. 7 교통부령 제800호전문개정	"
○여권법시행령	1974.12.31 대통령령 제7457호전문개정	"
○여권법시행규칙	1988.12.31 외무부령 제139호전문개정	"
○염업조합법	1967. 3.30 법률 제1936호	"
○영농기술훈련규정	1974. 9.28 대통령령 제7266호	청소년근로 • 복무
○영농기술훈련규정시행규칙	1974.12.27 농수산부령 제583호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영사기사면허령	1970. 8.28 대통령령 제5312호	연령·호칭
○영화법	1973. 2.16 법률 제2536호	청소년관련매체·환경
○영화법시행령	1973. 2.17 대통령령 제6507호	"
○영화법시행규칙	1985. 7. 5 문화공보부령 제87호전문개정	"
○용역경비업법	1976.12.31 법률 제2946호	연령·호칭
○우당도서선정규정	1969. 9. 5 문화공보부령 제14호	청소년관련매체·환경
○원자력법	1982. 4. 1 법률 제3549호전문개정	연령·호칭
○위생분야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	1984. 9. 8 보건사회부령 제754호	청소년관련위생환경·풍속
○위탁소년감별관정위원회규칙	1982. 2.11 법무부령 제239호	청소년의교정·교화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1963. 4.27 법률 제1335호	청소년단체
○유선및도선업법	1980. 1. 4 법률 제3225호	연령·호칭
○유선방송관리법	1986.12.31 법률 제3914호	청소년관련매체환경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1987. 7. 1 대통령령 제12196호	"
○유선방송관리법시행규칙	1990. 4.21 총리령 제365호	"
○유아교육진흥법	1982.12.31 법률 제3635호	청소년의복지·후생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1983. 6. 9 대통령령 제11141호	"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규정	1969.11.28 대통령령 제4342호	청소년의선도·보호
○윤락행위등방지법	1969.11.10 대통령령 제4233호	청소년관련위생환경·풍속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1969.11.10 대통령령 제4233호	"
○윤락행위등방지법에의한직업보도시설 의시설기준령	1969.11.10 대통령령 제4234호	청소년의선도·보호
○음반에관한법률	1967. 3.30 법률 제1944호	청소년관련매체환경
○음반에관한법률시행령	1971. 3.16 대통령령 제5571호전문개정	청소년관련매체환경
○의료법	1973. 2.16 법률 제2533호전문개정	청소년관련위생환경·풍속
○의료보호법	1973.12.22 법률 제2533호전문개정	청소년의복지·후생
○의료보호법시행령	1978. 5.23 대통령령 제9029호	"
○인권에관한세계선언	1948.12.10	기본법령
○인사소송법	1961.12. 6 법률 제803호	청소년의선도·보호
○인업시험장수복원관람규칙	1987. 4.10 농림수산부령 제969호	청소년시설·공간의 이용·관람
○입양특례법	1976.12.31 법률 제2977호	청소년의복지·후생
○입양특례법시행령	1977. 3.18 대통령령 제8509호	"
○입양특례법시행규칙	1977. 4. 8 보건사회부령 제558호	"
○자동차운수규칙	1982. 7.20 교통부령 제740호	연령·호칭
○자동차운수사업법	1961.12.30 법률 제916호	"
○자연공원법	1980. 1. 4 법률 제3243호	청소년시설·공간의 설치관리
○자연공원법시행령	1980. 8.18 대통령령 제9993호	"
○자연공원법시행규칙	1981. 1. 6 건설부령 제282호	"
○장애인복지법	1989.12.30 법률 제4179호전문개정	청소년의복지·후생
○장학금규정	1969.11.25 대통령령 제4310호한글화	청소년의학업·진학

법령명	제정	주요 관련 영역
○ 장학위원에 관한 규칙	1969. 2.26 문교부령 제208호	연령 · 호칭
○ 제소자 및 원생 급식 관리 위원회 규정	1983. 9. 7 대통령령 제11226호 전문개정	청소년의 교정 · 교화
○ 제소자의 류 및 청구제식 등 규칙	1985. 4.15 법무부령 제272호 전문개정	연령 · 호칭
○ 제소자주 · 부식 급여 규칙	1988. 6.24 법무부령 제311호 전문개정	"
○ 재외 공판 공증법	1963.12. 7 법률 제1479호	"
○ 재외 공무원 복무 규정	1981. 5.18 3 대통령령 제10312호	"
○ 재외 교포 학생 단기 교육 규정	1978. 6.21 대통령령 제9049호	청소년의 학업 · 진학
○ 재외 국민 교육원 설치령	1977. 3.18 대통령령 제8511호	"
○ 재외 국민 등록법 시행령	1969.11.21 대통령령 제4291호	연령 · 호칭
○ 재외 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1977. 2.28 대통령령 제8461호	청소년의 학업 · 진학
○ 채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1970. 8. 4 법률 제2216호	연령 · 호칭
○ 채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시행령	1971. 1.18 대통령령 제5483호	연령 · 호칭
○ 전당포 영업법	1961.11. 1 법률 제763호	연령 · 호칭
○ 전문대학 설치 기준령	1978. 7. 4 대통령령 제9078호	청소년의 학업 · 진학
○ 전신근로 동원법	1953. 6. 3 법률 제292호	연령 · 호칭
○ 전염병 예방법	1954. 2. 2 법률 제308호	청소년의 건강 · 보건
○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1969.11.17 대통령령 제4267호	"
○ 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	1977. 8.19 보건사회부령 제570호	"
○ 전통건축물 보존법	1984.12.31 법률 제3777호	청소년 시설 공간의 이용 · 관람
○ 전통건축물 보존법 시행령	1985. 8.29 대통령령 제11753호	"
○ 전통건축물 보존법 시행 규칙	1985.12. 5 문화공보부령 제89호	"
○ 정기 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1987.11.28 법률 제3979호	청소년 관련 매체 환경
○ 정당법	1962.12.31 법률 제1246호	연령 · 호칭
○ 조세 감면 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 전문개정	관련 세법
○ 조세 감면 규제법 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 전문개정	"
○ 조세 감면 규제법 시행 규칙	1982. 3.25 재무부령 제1519호	"
○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1983.12.30 법률 제3673호 전문개정	연령 · 호칭
○ 주민 등록법	1962. 5.10 법률 제1067호	"
○ 주민 등록법 시행령	1970. 4.10 대통령령 제4914호	"
○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	1979.4.24 건설부령 제221호	청소년 시설 · 공간의 설치 · 관리
○ 주택 건설 촉진법	1977.12.31 법률 제3075호 전문개정	연령 · 호칭
○ 주택 건설 촉진법 시행령	1978.3.14 대통령령 제8883호 전문개정	청소년 시설 · 공간의 설치 · 관리
○ 주택 건설 촉진법 시행 규칙	1978.10.18 건설부령 제202호	청소년의 복리 · 후생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1978. 5.10 건설부령 제202호	청소년의 복리 · 후생
○ 중기관리법	1975. 7.26 법률 제2785호 전문개정	연령 · 호칭
○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1983. 8.11 대통령령 제11201호 전문개정	연령 · 호칭

법령명	제정	주요 관련 영역
○ 중앙국립극장대관규칙	1982. 9.11 문화공보부령 제75호 전문개정	청소년시설 · 공간의 이용 · 관람
○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	1985. 2.21. 대통령령 제11626호	청소년의 학업 · 진학
○ 증권거대법	1976.12.22 법률 제2920호 전문개정	연령 · 호칭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1989. 4. 1 법률 제4120호	연령 · 호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1983. 2. 1 대통령령 제11034호 전문개정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1979. 7.21 대통령령 제9541호	"
○ 지방세법	1961.12. 8 법률 제827호	관련세법
○ 지방세법시행령	1970. 4. 3 대통령령 제4840호	관련 세법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88. 4. 6 법률 제4005호	연령 · 호칭
○ 지방자치법	1988. 4. 6 법률 제4004호 전문개정	"
○ 지방자치법시행령	1988. 5. 7 대통령령 제12444호 전문개정	"
○ 지하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1980. 4.18. 교통부령 제655호	청소년유관기관
○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67. 3.30 법률 제1952호	청소년의 근로 · 복무
○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1969.11.10 대통령령 제4217호	"
○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	1986.12.31 노동부령 제38호 전문개정	"
○ 직업훈련촉진기금법	1976.12.31 법률 제2974호	"
○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령	1977. 3.28 대통령령 제8518호	"
○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규칙	1980.11.24 보건사회부령 제659호	"
○ 철도법	1961. 9.18 법률 제714호	연령 · 호칭
○ 철도운송규정	1969.12.11 대통령령 제4451호	"
○ 철도전시관전열품관람규칙	1988. 4. 8 교통부령 제881호	청소년시설 · 공간의 이용 · 관람
○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운영규정	1989.10.31 체육부훈령 제41호	기본법령
○ 청소년육성법	1987.11.28 법률 제3973호	"
○ 청소년육성법시행령	1988. 6. 9 대통령령 제12460호	"
○ 청소년육성법시행규칙	1988.12.31 체육부령 제12호	"
○ 제신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1982.12.31 법률 제3610호	청소년의 학업 · 진학
○ 제신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983. 7. 1 법률 제738호	"
○ 제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1982.12.31 법률 제3601호	연령 · 호칭
○ 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983.10.28 체육부령 제3호	청소년유관기관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1989. 3.31 법률 제4106호	청소년시설 · 공간의 설치 · 관리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1989. 7. 1 대통령령 제12743호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989. 7.12 체육부령 제13호	"
○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1984. 2.16 체육부령 제6호	청소년지도자
○ 체육 · 청소년단체심의위원회 규정	1989. 5.30 체육부훈령 제38호	청소년단체
○ 흥포도검 · 화약류등 단속법	1984. 8. 4 법률 제3743호 전문개정	연령 · 호칭

법령명	제정	주요 관련 영역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법시행령 ○ 최저임금법시행규칙 ○ 축산업법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1986.12.31 법률 제3927호 1987. 7. 1 대통령령 제12207호 1987.11.12 노동부령 제42호 1980.12.15 법률 제3276호 1961.12.30 법률 제904호	청소년의 근로·복무 " " 연령·호칭 청소년관련매체·환경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 특수교육진흥법 ○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1966. 8. 3 법률 1822호 1976.12.22 법률 제2935호 1976.12.31 대통령령 제8408호 1977.12.31 법률 제3053호 1978. 8.30 대통령령 제9151호 1978.12.30 문교부령 제435호 1966. 2.23 법률 제1744호 1980. 1. 4 법률 제3258호 1981. 2.17 대통령령 제10201호 1982. 4. 3 건설부령 제323호	청소년시설·공간의 조성 관련 세법 " 청소년의복리후생 " " 청소년의선도·보호 청소년시설·공간의 조성 " "
○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법시행령 ○ 학교급식법시행규칙 ○ 학교보건법 ○ 학교보건법시행령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학교시설·설비기준령 ○ 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 학생군사교육실시령시행규칙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시행령	1981. 1.29 법률 제3356호 1981. 9. 8 대통령령 제10460호 1983. 2.25 체육부령 제2호 1967. 3.30 법률 제1928호 1969.12.25 대통령령 제4311호 1969. 7.19 문교부령 제211호한글화 1982.12.31 법률 제3634호 1969.12. 4 대통령령 제4398호 1983. 2.17 체육부령 제1호 1971. 6.26 대통령령 제5682호전문개정 1972. 3.10 국방부령 제223호 문교부령 제291호 1984. 4.10 법률 제3728호전문개정 1985. 3.21 대통령령 제11665호 전문개정 1973. 3.14 법률 제2616호 1973.10.11 대통령령 제6899호	청소년의 건강·보건 " " 청소년관련위생환경·풍속 " 청소년의 학업·진학 청소년시설·공간의 설치·관리 " 청소년시설공간의이용·관람 청소년의 근로·복무 " 청소년의 학업·진학 " 청소년유관기관 "

법령명	제정	주요관련영역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	1984. 3.15 대통령령 제11382호	연령·호칭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6호	"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1972. 3. 9 대통령령 제6106호	청소년의 학업·전학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시행규칙	1972. 3.28 문교부령 제293호	"
○한국산업안전공단법	1987. 5.30 법률 제3931호	청소년유관기관
○한국여성개발원법	1982.12.31 법률 제3632호	"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1981.12.31 법률 제3506호	"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	1981. 4.13 법률 제3434호	청소년단체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1984.12.31 법률 제3785호	청소년단체
○해외이주법시행규칙	1976. 1.16 보건사회부령 제508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해운업법	1983.12.31 법률 제3716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2.12.11 대통령령 제10955호 전문개정	"
○행정법	1950. 3. 2 법률 제105호	청소년의 교정·교화
○행정법시행령	1969.10.14 대통령령 제4128호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79.12.28 법률 제3216호	청소년의 건강·보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1980. 6. 9 대통령령 제9900호	"
○혈액관리법시행규칙	1977. 6.14 보건사회부령 제564호 전문개정	연령·호칭
○형법	1953. 9.18 법률 제293호	기본법령
○형사소송법	1954. 9.23 법률 제341호	연령·호칭
○환경보전법	1977.12.31 법률 제3078호	청소년시설·공간의 조성

부 록

청소년관계 참고규정
(매체 · 환경)

廣告審議規程

이規程은圖書雜誌週刊新聞廣告의品格을 높이고公共의福祉增進에 이바지하기 위하여制定한다.

1. 總 則

1. 圖書雜誌週刊新聞에 掲載되는 廣告는 그 內容의 一部로서 眞實하고 誠實性이 있어야하며 大衆에게 利益이 되고 信賴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廣告는 健全하고 品位가 있어야 하며 公共의 秩序와 美風良俗를 害하는 內容이어서는 안된다.
3. 廣告는 他人의 名譽와 權利를 侵害하거나 法에 어긋나는 內容이어서는 안된다.
4. 廣告는 事實을 바로 알려야 하며 排他的 또는 誇張된 表現으로 他의 權利와 利益을 損傷케 하거나 大衆을 眩惑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廣告는 責任所在을 分明히 밝혀 消費者에게 不利益을 招來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廣告는 主體性이 있어야 하며 他를 模倣, 剽竊하거나 國產品을 輕視하고 外國商品의 優越性을 지나치게 強調한 表現을 해서는 안된다.
7. 廣告의 體制는 記事와 混沌되지 않도록 編輯하여야 한다.

2. 細 則

다음에 例示하는 事項은 慎重을 期하거나 다루지 않는다.

1. 眞實性和 信賴性에 關한 基準
 - 가. 易術, 占術, 觀相, 手相, 印章의 吉凶 등을 強調하여 迷信의인 行爲를 助長할 우려가 있는 것
 - 나. 公認, 有權機關이 認定하고 있지 않은 非科學의인 內容
 - 다. 射倖心を 助長할 우려가 있는 內容
 - 라. 國民의 健全한 消費生活을 支해할 우

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內容

- 마. 明白한 廣告이면서도 “이것은 廣告가 아니다”등 逆說의 表現의 廣告
2. 健全性和 公共性에 關한 基準
 - 가. 國家理念과 國家安全保障에 違背되거나 國旗의 尊嚴性을 喪失할 우려가 있는 內容
 - 나. 어린이의 品性을 그릇치게 할 우려가 있는 表現
 - 다. 누드 또는 男女의 新體部位를 과잉노출 하거나 性器를 直接 間接的으로 表現한 廣告
 - 라. 內衣, 팬티, 부라자, 醫藥品 등을 宣傳하면서 男女의 煽情的인 姿勢나 表情을 強調한 內容
 - 마. 隱語, 俗語, 方言, 卑語, 造語 등을 함부로 使用하여 言語醇化에 어긋나는 內容
 - 바. 暴力, 도박, 鴉片 등의 犯罪行爲를 誘發할 우려가 있는 內容
 - 사. 不快感이나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는 內容
 - 아. 諷刺廣告 등에서 不健全한 男女關係를 연상하게 하는 內容
 3. 名譽와 權利에 關한 基準
 - 가. 公共의 利益에 關係됨이 없이 他人 또는 機關團體의 名譽를 毀損하거나 개인의 私生活을 侵害할 우려가 있는 內容
 - 나. 事實與否에 關係없이 他企業이나 商品을 誹謗中傷하는 內容
 - 다. 法에 依하여 許容된 範圍以上の 表現을 한 廣告
 4. 排他的 또는 誇張表現에 關한 基準
 - 가. 事實에 關係없이 最高, 最上, 第一 등의 最上級 表現이나 特殊製造方法等 모호한 表現의 廣告
 - 나. 醫藥品, 就業 등의 廣告中 100%完治, 100%保障, 全治, 無害 등의 表現
 - 다. 學院의 進學率 또는 受賞內容 등을 事實以上으로 誤認케 할 우려가 있는

表現

5. 責任에 關한 基準

- 가. 求人 또는 事業廣告中 固定給이 아닌 假想收入額이나 利益金, 配當金 등을 常識以上으로 過大하게 約束하거나 保障한다는 內容
- 나. 職業紹介所, 結婚相談所, 通信講義錄 등의 廣告中 認許可 또는 登錄事項을 밝히지 않은 것.
- 다. 요정, 호텔, 여관, 다방, 찻방 등 遊興業所의 廣告中 電話番號外에 商號와 所在地를 明示하지 않은 것
- 라. 社債알선, 家計手票의 割引 등 탈세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
- 마. 自家用 승용차의 대여 및 自家運轉 연수를 안내한 廣告

6. 主體性에 關한 基準

- 가. 國產品을 輕視하고 外國商品의 優越性を 強調한 表現
- 나. 外國人을 모델로 使用한 商品廣告
- 다. 正當한 經路로 輸入되지 않은 外國商品의 廣告
- 라. 外國과의 技術提携, 合作投資 및 商標使用權 등을 지나치게 強調하여 國民感情을 害할 우려가 있는 表現
- 마. 思想, 言語, 風俗, 歷史 등 民族文化의 繼承發展에 저해되는 表現
- 바. 他商品의 廣告를 模倣하거나 醜惡한 것.

7. 編輯體制에 關한 基準

- 가. 記事 또는 畫報로 混逆하기 쉽게 編輯된 廣告
- 나. 體制가 복잡하여 大衆의 保健上 有害하다고 判斷되는 廣告

附 則

- 1. 이 規程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圖書雜誌 週刊新聞倫理實踐要綱 및 一般慣例에 따른다.
- 2. 이 規程은 1983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

1983年 11月 24日

廣告倫理綱領

- 1. 廣告의 目標은 大衆의 福祉와 便益을 優先하는 데 두어야 한다.
- 2. 廣告活動은 社會道義와 規範 및 良俗에서 벗어나서 안되며 社會大衆의 信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3. 廣告表現은 眞實하여야 하며 虛偽나 誇大한 表現으로 消費者를 眩惑시키지 않도록 한다.
- 4. 廣告內容은 他를 中傷하거나 誹謗해서는 안되며 또한 模倣이나 剽竊이어서도 안 된다.
- 5. 廣告去來는 公正하고도 自由로운 去來를 原則으로 하며 廣告發展을 阻害하거나 去來手段을 止揚한다.
- 6. 廣告의 責任은 廣告主, 廣告媒體, 廣告代 行社 등 모든 關係者가 이를 共同으로 진다.
- 7. 具體的인 活動基準은 ICC(國際商業會議所)廣告活動基準綱領에 準하기로 한다.

1972·7·26 制定

社團法人 韓國廣告協議會

圖書倫理實踐綱領

1. 圖書는 民族固有文化를 保護育成하고 美風良俗을 害치거나, 社會에 惡影響을 미칠 要素가 있는 內容이어서는 안된다.
2. 圖書는 國家理念과 國家安全保障에 關한 事項에 背反되는 要素가 들어 있는 內容이어서는 안된다.
3. 圖書는 出版關係 法規를 遵守함은 물론 出版人 스스로 制定한 規約을 어기는 內容이어서는 안된다.
4. 圖書는 公共의 利益을 떠나서 個人 또는 特定機關, 團體의 要素가 權利를 侵害하거나 名譽를 毀損하는 要素가 들어 있는 內容이어서는 안된다. 特히 他民族을 不當하게 侮辱하지 않으며, 内外國의 國家元首에 대한 名譽를 毀損하는 內容이어서는 안된다.
5. 評論은 公評하고 眞理를 守護하는 데 忠實하여야 한다.
6. 圖書는 그 內容의 眞實性和 正確성이 要求되며, 事實과 다른 內容은 이를 遲滯없이 訂正 또는 削除하여야 한다.
7. 圖書는 政治的 特權이 있는 者, 또는 特定人의 利益을 위하여 不當한 內容이어서는 안된다.
8. 圖書는 宗教에 대하여 信仰의 自由를 尊重하고 特定宗教 또는 宗派에 대한 不當한 冒瀆, 攻擊, 誹謗을 하여서는 안된다.
9. 圖書는 다른 出版物의 內容을 剽竊, 또는 不法으로 轉載하거나, 法的 許容하는 以上の 節錄을 引用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出版物의 內容을 引用 또는 轉載하였을 때는 内外國을 莫論하고 그 出處를 明示하여야 한다.
10. 圖書는 正當한 事由없이 著者權者의 表示를 出版人이 任意로 造作하여 使用할 수 없다.
11. 圖書는 同一한 題號 또는 類似한 內容을 二個社 以上에서 競爭出版을 하여서는

안된다, 서로 出版企劃의 情을 몰라서 惹起된 善意의 競爭이 不可避할 경우에는 相互協議로써 社會에 物議를 일으키는 事態를 防止하여야 한다.

12. 圖書는 良質의 資料를 使用, 制作함으로써 粗雜한 形態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圖書는 低級한 宣傳으로 主體性を 喪失하고 出版人의 矜持와 品位를 損傷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14. 圖書는 流通秩序의 正當化를 期하여야 하며, 特하 適正定價을 算出表示하되, 二重價格을 表示하거나 非正常的인 割引販賣等を 宣傳하여서는 안된다.
15. 其他 社會通念上 非難의 對象이 될 수 있는 出版物의 出版 및 頒布를 해서는 안된다.

圖書雜誌倫理綱領

우리들圖書,雜誌人은 文化的 創造主로서 또는 媒介者로서 그 社會의 使命이 더없이 크다. 우리의 固有文化를 守護고 世界文化의 進運에 積極 參與하여야 하며, 平和的 自主統一을 成就하여야 하는 民族中興의 歷史의 大課業에 當面하여 더욱 그러하다.

우리들圖書,雜誌人은 이러한 自覺과 責任에 透徹하여 圖書雜誌의 倫理를 確立하고 品位를 높이는 데 힘쓰며, 이에 圖書乳脂倫理綱領을 높이는 데 힘쓰며, 이에 圖書雜誌綱領을 制定한다.

우리들圖書,雜誌人은 이 綱領을 實踐하는데 忠實하여 自主의 民族文化를 樹立함은 물론, 圖書,雜誌에 대한 民衆의 餘望과 信賴에 副應한다.

이 綱領은 우리들圖書,雜誌人의 自律的 規約이므로, 누구도 이를 強要할 權限은 없으나, 이 綱領의 實踐을 躊躇하는 圖書,雜誌 및 圖書,雜誌人은 마침내 公衆의 支持를 잃어, 存立이 어렵게 될 것이다.

1. 圖書,雜誌는 民族固有文化를 保護育成하고, 人類文化의 理想을 追加하여 民主發展과 民衆을 위한 健全한 知識과 教養 및 娛樂를 提供하는 것을 基本精神으로 한다.
2. 圖書,雜誌는 學術文藝의 開發, 社會文化와 國民福祉向上에 寄與하여야 하며, 讀者의 情緒啓發과 教育的 效果를 거두는데 이를 善用하여야 한다.
3. 圖書,雜誌의 出版은 人間의 基本權의 하나로서 言論出版의 自由가 保護되어야 하며, 社會文化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圖書,雜誌人 및 著者(筆者)의 自由와 名譽와 權利를 守護하여야 한다.
5. 圖書,雜誌는 社會의으로 公共性을 가지며, 또한 그것이 미치는 道德을 尊重하며, 公共의 利益에 違反되지 個人 또는 特定

機關團體의 利益이나 不道德한 目的에 移用되지 않는다.

6. 圖書,雜誌는 民衆이 알아야 할 權利에 副應하여 掲載內容의 迅速, 正確, 眞實을 期하며, 그 評論은 公明正大하게 眞理를 守護하는데 忠實하여야 한다.
7. 圖書,雜誌는 그 公共性에 비추어 公衆의 信賴할 수 있는 높은 品位를 雜誌하며 文化의 向上을 阻害하는 行爲는 이를 自制한다.
8. 圖書,雜誌人은 그 刊行되는 圖書,雜誌와 關聯하여 不當한 行動이나, 그 要因이 되는 行爲를 一切하지 않는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방송위원회규칙제3호
제정 1988年10月18日 〕

第 1 章 총칙

第1條 이 규정은 방송법 제20조제에 따라 방송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문화의 향상과 그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내용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방송은 자유민주주의를 신장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第3條 방송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에 기여하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第4條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의 함양과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第5條 방송은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第6條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기풍을 조성하며 가정생활의 순결성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한다.

第7條 방송은 진실을 전달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하며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第8條 방송은 준법정신을 고취하며 위법행위를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9條 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며 표준말과 고운말을 사용하여 국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第10條 방송은 특정한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신념·사상만을 지지 또는 옹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방송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第11條 방송은 폭력 및 성문제에 관한 내용과 남녀·학력·신분 차별 등의 고정관념

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第12條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를 함양하고 그 품성과 인격이 진취적이고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13條 방송은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하며 특히 종교·인종·민족 등에 관하여 편견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14條 방송은 시청자의 생활시간을 고려하여 방송시간에 따른 방송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第15條 방송은 표절 또는 현저하게 모방한 작품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第 2 章 보도방송

第16條 방송은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第17條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第18條 방송은 대립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이념단체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第19條 방송은 다음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미성년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성폭행을 당한 부녀자의 성명, 주소, 사진 및 기타 본인으로 추지될 수 있는 내용
나. 범죄, 등 명예스럽지 못한 사건에 직접관계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

다.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보호자 또는 친족의 인적사항

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이외 범죄용의자의 인적사항

第20條 방송은 시청자에게 충격 또는 불안감을 주거나 잔인하고 비참한 표현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

第21條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하고, 해설이나 논평등에 있어서도 사실과 개인의 견해를 명백히 구분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성명을 밝여야 한다.

第22條 방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보도하거나 타 매체의 보도를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 3 章 교양방송

第23條 방송은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국민의 교양과 바른 가치관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第24條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종교 및 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5條 방송은 죽은 사람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第26條 방송은 외도적으로 특정상품이나 영업소 또는 공연장 등을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7條 의료나 약품에 관한 방송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루어야 하며 시청자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하고 의료 이외의 환각제·각성제·마약 등의 사용은 약습으로만 다루어야 한다.

第28條성기 및 성병이나 피임 등에 관한 방송은 저속한 표현 등으로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第29條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0條 방송은 자연보호 및 동물애호의 정신에 어긋나서는 아니된다.

第31條 스포츠 방송은 국민체력의 증진과 건전한 스포츠 정신의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第 4 章 오락방송

第32條 방송은 건전하고 명랑한 내용으로 생활을 윤택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33條 방송은 혼인제도와 가정생활을 존중하여야 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은 다루지 아니하며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4條 방송은 무분별한 애정관계 또는 비정상적인거나 부도덕한 남녀관계 및 관능적이고 자극적인 애정묘사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第35條 방송은 권선징악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전개과정에서 퇴폐, 비리 등 불건전한 내용을 지나치게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6條방송은 무력 또는 폭력의 행사를 선동적으로 표현하거나 매력적으로 미화하여서는 아니되며 범죄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묘사하여서도 아니된다.

第37條 방송은 살인, 고문, 폭력, 사형, 부녀자 및 어린이 학대, 인신매매 등 인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아니하며 육체나 정신상의 고통을 상세하고도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8條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며 모방이나 악용의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9條 방송은 재종간의 위화감과 국민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지역감정을 자극하는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第40條방송은 허례허식이나 사치 및 낭비풍조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1條 방송은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第42條 방송은 육체간 정신상의 결합 또는 사회적으로 불우한 사람들 다룰 때에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3條 방송이 뉴스형식을 극중효과를 위해 사용할 때에는 보도 방송으로 오인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第44條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는 방송은 민족적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며 고중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第45條 방송은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과도한 상금 또는 상품으로 요행심을 자극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6條 방송은 출연자나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第47條 방송은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괴성·고함 및 소란행의 등에 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第48條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은어, 비속어 등을 사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투리나 외국어 또는 외래어를 사용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第49條 방송은 어린이를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第50條 음악방송은 건전한 문화풍토를 저해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된다.

第 5 章 어린이·청소년 방송

第51條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적·정서적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第52條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 선린·우애정신이 배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第53條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외래문물을 무분별하게 선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4條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생활수준으로 격차로 인한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第 6 章 광고방송

第55條 광고방송은 건전한 기업풍토 조성 과 상도의 향양에 기여하며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의 편익을 도모케 하여야 한다.

다.

第56條 광고방송은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7條 광고방송은 허위 또는 배타적이거나 과장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第58條 광고방송은 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시청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9條 의약품에 관한 광고방송은 신중을 기하며, 특히 시청자가 약품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第60條 광고방송은 어린이의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광고의 목적에 직접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1條 광고방송은 민족의 주체성과 국민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第62條 주류·유흥업소 및 공연물 등의 성인 대상 광고방송은 방송시간과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第 7 章 보칙

第63條 제2장 내지 6장의 규정은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다른 분야의 방송에도 적용한다.

第64條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령 및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第65條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

방송용광고 심의세칙

[방송위원회규칙제26호
제정 1988년 1월 10일]

第1條【목적】 이 세칙은 방송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에 의한 방송용광고 (이하‘광고’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허위·과장표현】 광고는 시청자를 현혹 또는 오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
2. 성분·재료·함량·규격·효능 등을 과대 평가하게 하는 표현
3.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될 수 없는 최상급이 표현

第3條【배타적인 표현】 광고는 타기업이나 상품을 비방·배척·증상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경쟁관계에 있는 타상품을 부당하게 비교하여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표현
2. 유사품에 주의하라는 등의 경쟁상품을 배척하는 표현
3. 시장지배적인 표현이나 우위성을 근거 없이 과시하는 표현

第4條【자료의 인용】 ①광고는 광고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나 난해한 전문용어로 시청자를 현혹시켜서는 아니된다.

②광고는 광고에서 인용되는 그 자료가 전체적인 타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표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광고는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을 인용하여야 한다.

④광고는 공적 신뢰성이 없는 사설단체의 발표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條【정서함양】 광고는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공교방송의 품위를 손상시

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혐오감이나 불쾌감 또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장면이나 음향
2. 신체적 결함·약점 등을 조롱 또는 회화화하는 표현
3. 음란하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
4. 저속하거나 경박스러운 동작·표정
5. 디신을 이용하거나 조장하는 표현
6. 상품명에 과다한 연호

第6條【국민감정의 존중】 ①광고는 전통문화 및 디풍양속의 계승발전과 국민감정을 해칠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광고는 외국광고를 복제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條【바른 언어생활 확립】 광고는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비속어·은어·조어 등의 사용
2. 외국어 및 외국인 어투의 남용
3. 불필요한 사투리 사용

第8條【어린이의 보호】 ①어린이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방법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광고는 어린이의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가 상업문 및 광고노래를 전달하는 등 직접적인 광고행위를 하는 표현
2. 어린이가 그 상품을 갖지 못하면 열등해진다고거나 다른 어린이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될 것으로 밀게 하는 표현
3.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4. 장난감·조립완구 등에서 상품이 크기·성능 및 작동방법 등의 과장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자극하는 표현

第9條【프로그램과의 구분】 광고는 시청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으로 오인하게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프로그램과 광고를 혼동시키는 상화설정이나 연기 및 음향효과
2. 방송국 임·직원의 광고모델 출연(공익광고는 제외)

第10條【소재】 ①광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1. 뉴스내용을 부정하거나 정정하는 표현
2. 분쟁·소송 등으로 계류중에 있는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설명

②광고는 국가·애국가 및 국민의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성현·위인·애국선열등)을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1條【경품 및 할인특매에 관한 광고】

①경품 및 할인특매에 관한 광고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시청자를 현혹시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식품·의약품 및 주류제품에 관한 광고는 경품 및 할인특매에 관한 표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2條【식품광고】 식품광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근거없이 장수·젊음 유지 또는 미용 등에 효과가 있다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3. 화학적 합성식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화학적 합성식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4. 감사장 또는 상장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외 유사한 내용의 표현

第13條【의약품 등의 광고】 ①의약품(의약품·부외품·농약·화장품·의료용구 및 위생용품 포함)의 광고는 약효를 과장하거나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있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사·약사·간호사·의약전문인 등의 광고모델 출현(일반모델의 의료인 분장 포함)
2. 의료인 또는 의약전문인을 통하여 호능·성능을 입증하거나 추천·지정·권장하는 표현
3. 국내외의 병원·연구기관인 명칭을 인용하여 동기관의 추천 또는 실험결과를 암시하는 표현
4. 허가받은 약효 이외의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
5. 부작용 및 주의사항을 부정하는 표현
6. 계속사용을 부당하기 권장하는 표현
7. 사용결과에 대한 감사장·추천장·체험담을 인용하거나 ‘주문쇄도’라는 등의 표현
8. 특정연령·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표현
9. 객관적인 근거없이 효능의 속효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표현
10. 숫자의 이미지를 빌어 효능이나 배합 성분수를 나타내는 표현
11. 사용전과 사용후를 뚜렷이 대비하여 효능을 과시하게 하는 표현
12. 의약품을 화장품 또는 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13. 질병증상에 대한 진단·처방 및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표현
14. 의약품의 복용이 건강유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필수적임을 암시하는 표현
15. 광고노래의 사용

②의약품 광고는 시청자에게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장하게 하는 표현
2. 시청자가 병에 걸린 것처럼 인식하게

- 할 우려가 있는 막연한 증상의 표현
3.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는 증상을 화면·언어·음향효과를 통해 상세히 묘사하는 표현
 4. 환자를 조롱하거나 질병을 저속하고 품위없이 다루는 표현
 5. 인체해부도 및 수술장면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표현

第14條【주류광고】 주류광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광고노래의 사용
2. 지나친 음주장면 및 음주분위기 묘사
3. 미성년자로 보이는 자의 모델 사용
4. 음주가 출세 또는 사회적 성공과 직결된다는 표현
5. 음주가 건강에 이롭다는 표현
6. 음주가 근심·걱정을 없앤다는 표현
7. 운전·운동·등산·기계류 작동 등 위험한 행위중의 음주 표현

第15條【내의류 광고】 내의류(거들, 브래지어, 란제리, 팬티 등)광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체에 입혀 놓은 제품을 뽐내듯 전시킨 장면
2. 선정적이거나 비속감을 주는 표현
3. 신체부위의 과잉노출

第16條【영화 및 공연광고】 ①영화 및 공연 광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잔인한 폭력·살인·고문등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는 표현
2.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시키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묘사 등의 성도덕관념을 문란하게 하는 표현
3.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표현

②영화 및 공연 광고는 관람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第17條【수입상품 광고】 수입상품 광고는 시청자로 하여금 국산품을 경시하고 사

치와 낭비등 불필요한 소비성향을 자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8條【종교광고】 광고는 종교단체의 행사를 고지하는 내용 이외의 종교·신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第19條【방송금지광고】 광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사항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통음식점 영업소
3. 사적인 비밀사항을 조사하는 내용
4. 결혼매개업에 관한 내용
5. 장의업에 관한 내용
6. 점술·심령술·팔상·수상·인상 등의 감정이나 기타 미신에 관계되는 내용
7. 성병·성기 및 부인과질환에 관한 의약품
8. 생리용품 및 피임용 기구
8. 생리용품 및 피임용 기구
9. 도박에 관한 내용
10. 기타 공중에 공개되기에 적합하지 않는 내용

第20條【심의기준보완】 이 세칙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회의 일반통념에 따른다.

부 칙

이 세칙은 198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송용광고 심의 운영요강

〔방송위원회규칙제9호〕
제정 1988년12월31일

第1條【목적】 이 요강은 방송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과 방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규칙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이 의한 방송용광고(이하 '광고'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회의】 광고심의소의위원회는 주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第3條【심의기준】 광고의 심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세칙, 그밖에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第4條【심의신청】 광고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심의신청서 2부에 광고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第5條【처리기간】 ①광고는 심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광고의 처리기간이 7일 이상 필요한 경우는 사전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第6條【결정】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광고물의 심의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방영가
2. 방영불가

第7條【결과통보】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은 그 내용을 심의신청서1부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第8條【재심】 ①신청인은 제6조제 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은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처리한다.

第9條【지방광고의 심의】 ①신청인은 지

방방송국을 통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슬라이트 및 라디오 광고에 한하여 당해 지역방송국의 장에게 의뢰하여 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광고의 심의신청을 의뢰받은 방송국의 장은 이에 대한 심의를 즉시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청과 결과통보는 전송사진을 이용할 수 있다.

第10條【자문】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신청인이 심의신청을 하기 전에 광고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第11條【참고자료의 요구 등】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요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新聞廣告倫理綱領

- 一. 新聞廣告는 大衆에게 利益을 주고 信賴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二. 新聞廣告는 公共秩序와 美風良俗을 害치거나 新聞自體의 品位를 損傷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 三. 新聞廣告는 他人의 利益과 名譽를 公의로 毀損하거나 關係法規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 四. 新聞廣告는 그 內容이 眞實하여야 하며 誇大한 表現으로 大衆을 眩惑시켜서는 안된다.

新聞廣告倫理實踐要綱(基準)

綱領(一)에 따라 다음과 같은 事項은 掲載를 保留 또는 禁止한다.

- 一. 無知를 惡用한 迷信의인것
- 二. 射倖心을 煽動하는 內容의 것(단, 當局의 許可를 得한 것은 例外로 한다)
- 三. 公認 有權機關이 認定하지 있지 않은 非科學的인 것

綱領

(二)에 따라 다음과 같은 事項은 掲載를 保留 또는 禁止한다.

- 一. 國家變亂의 危險이 있는 事項
- 二. 軍事, 外交의 機密에 關한 事項
- 三. 어린이 및 靑少年을 對象으로 하는 廣告에 그들을 肉體的 或은 道德的으로 그르치게 할 表現
- 四. 公衆에게 嫌惡感이나 어떤 慾情을 불러 일으키는 猥褻, 醜惡 또는 殘忍한 內容
- 五. 脅迫, 暴力등의 犯罪行爲를 示唆하거나 誤發시킬 염려가 있는 內容
- 六. 美風良俗을 害치거나 公衆에게 弊害를 끼칠 念慮가 있는 無許可 紹介業所(職業, 結婚, 通信)의 廣告 또는 求人, 求婚廣告

綱領(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事項은 掲載를 保留 또는 禁止한다.

- 一. 公共利益을 위함이 아니고 他人 또는 團體, 機關을 非방, 中傷하여 그 名譽를 損傷시키는 內容
- 二. 名譽毀損 및 프라이버시 侵害의 念慮가 있는 他人의 姓名, 肖像을 無斷히 使用한 것
- 三. 犯罪의 煽動, 刑事事件 容疑者의 賞恤에 關한 事項
- 四. 法院에 繫留中에 있는 事項
- 五. 剽竊, 模倣 또는 其他 方法으로 他人의 權利를 侵害한 것
- 四. 法院에 繫留中에 있는 사항
- 五. 剽竊, 模倣 또는 其他 方法으로 他人의 權利를 侵害한 것

綱領(四)에 따라 다음과 같은 事項은 掲載을 保留 또는 禁止한다.

一. 廣告主는 名稱, 住所 및 責任所在가 不明한것

二. 廣告임이 明確치 않고 記事와 混沌되
기 쉬운 編輯體制 및 表現

三. 逆說的 表現—事實은 廣告이면서도
「이것은 廣告가 아니다.」라는 식의 表現

四. 大衆의 商品 對한 知識의 不足이나
어떠한 虛點을 惡利用한 表現

1976年 10月 27日

韓國新聞倫理委員會

1976年 11月 3日

1976年 11月 3日

韓國新聞協會

新聞廣告倫理綱領·實踐要綱에 다른 廣告規制細則

1977年 10月 26日 改正

一. 綱領2의 實踐要綱3項 「어린이 및 青少年을 對象으로 하는 廣告에 그들을 肉體
的 或은 道德的으로 그르치게 할 表現」의
경우 例「교제」·「男女펜팔 案內」등 交際觸媒
廣告중 不健全한 異性接觸을 誘發할 우려가
있는 表現(例·에인 데이트상대 소개, 비밀
보장, 1대 1로 소개함 등)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二. 綱領2의 實踐要綱6項 前段 「美風良俗
을 해치거나 公衆에게 弊害를 끼칠 念慮가
있는 無許可紹介業所(職業, 結婚, 通信)의
廣告」의 경우

例1)職業案內廣告는 紹介業所의 官認番
號(例·종로15개소 등)를 明示하고 料亭, 호
텔, 觀光홀, 茶房 등 遊興業所의 경우는 電
話番號와 商號, 所在地外에 營業許可 또는
營業鑑札番號를 明示해야 한다.

例2)結婚相談廣告는 官許相談所, 댄스 教
授廣告는 官認敎習所임을 確認할 수 있는
登錄 또는 認可番號를 明示해야 한다.

同後段 「求人廣告」의 경우

例1)개인이 直接 식모나 家政婦를 求하
는 廣告는 電話番號外에 住所를 明記해야
한다. (住所라 함은 ○○區 ○○洞 ○○番
號를 말한다.)

例2)개인의 求婚廣告는 當事者임을 確認
할 수 있는 連絡處(住所 또는 職場)를 明示
해야 한다.

三. 綱領4 新聞廣告는 그 內容이 眞實하
여야 하며 「誇大한 表現으로 大衆을 眩惑시
켜서는 안된다」의 경우 다음 例示한 것 같은
表現은 使用하지 말아야 한다.

例1)學院 및 通信講義錄廣告중 無責任하
게 就職을 約束하지(例·完全就職保章)하거
나 허황된 보장(例·檢定考試 100%合格 보

장)을 공정한 表現

例2)求人廣告중 固定給 아닌 根據없는 假想收入額(例·참식되고 月 50萬원 보장됨)을 約束한 表現

例3)同業者 또는 代理店募集廣告중 常識線을 벗어난 多額의 配當金이나 過大한 利益金(例·30萬원 投資로 月 30萬원 保障)을 約束하는 表現

社債, 私金融廣告規制綱領

(1984·3·28)

四. 綱領(四)의 實踐要綱1項 廣告主의 名稱,住所 및 責任所在가 不明한 경우,

例1 私金融 廣告에 個人은 姓名,住所, 電話番號,住民登錄番號를,商社는 商號住所地, 電話番號,營業許可 또는 營業鑑札番號를 記入하고, 各各 利率, 融資條件등을 明示해야 한다.

新聞倫理綱領

우리들 新聞人의 社會的 社命은 참으로 重大하다. 더욱이 祖國을 民主統一獨立國家로 再建하는 民族的 課業에 當面하여 그러하다.

우리들 新聞人은 이러한 自覺에 透徹하여 新聞의 倫理를 바로잡고 新聞人의 權威를 굳게 지키고자 이에 全國 日刊新聞·通信社 編輯人을 中心으로 韓國新聞編輯人協會를 組織하고 新聞倫理綱領을 採擇한다.

우리들 新聞人은 그 良識으로써 이 綱領에 忠實하여 新聞에 대한 民衆의 要望에 副應할 것을 盟誓한다. 또한, 이 綱領의 精神은 編輯人만이 아니라 모든 新聞關係者들이 함께 遵守하여야 할 것이다.

이 綱領은 우리들 新聞人의 自律的인 實踐을 期하는 것이어서 이를 強制할 權限은 없으나 이 綱領에 忠實하지 못하는 新聞 및 新聞人은 마침내 公衆의 支持를 잃어 그 存立이 包殆 틀게 될 것을 確信한다.

一. 自 由

新聞은 自由는 人類의 가장 基本的인 權利의 하나로 끝까지 擁護하여 民衆의 알아야 할 權利에 副應하여야 한다.

新聞은 報道 및 評論의 完全한 自由를 갖는다. 다만, 公衆의 利益을 侵害할 경우에는 一般法의 制約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新聞의 自由를 制限 또는 干涉하는 法律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法律을 批判하고 反對하는 自由도 勿論 이에 包含한다.

二. 責 任

新聞은 社會의 公器로서 그 公共性이 容認되고 新聞人은 獨特한 社會的位置를 지닌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公衆이 新聞에 依하여 事件과 問題의 真相을 把握하고 이를 批判의 基礎로 삼는다는 信賴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新聞最大의 責任은 公衆의 이러

한 信賴를 基礎로 하여 公共의 利益에 忠實하게 服務함에 있다. 이 責任은 또한 新聞의 公共性을 保全하는 最大의 要素이다.

新聞은 恒常 正義에 大膽하여 不正과 對決함에 勇敢하고 弱者의 편을 들어 그 呼訴를 대신함으로써 公共性을 具體적으로 나타낸다.

三. 報道와 評論의 態度

報道는 事實의 迅速忠實한 傳達을 生命으로 하며 따라서 出處 및 內容에 있어 報道의 價値가 確證될 수 있는 것에 限하여야 한다.

評論은 獨立不驕의 所信을 公正大膽하게 表現하여야 하며 特히 眞實에서 故意로 離脫하려는 偏頗를 警戒하여야 한다.

報道 및 評論은 그 能力이 미치는 限 徹底와 正確을 期하여 公衆에 대한 誠實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며 重大한 誤報가 있을 때는 이를 訂正하여야 한다.

四. 獨 立 性

新聞은 萬人이 法앞에 平等하다는 原則을 基礎로 하고 政治上·經濟上·社會上 偏見의 支配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 新聞은 公共의 利益에 違背되는 個人의 利益이나 無價値 또는 不道德한 目的에 使用될 수 없다. 이것이 他人의 命令 또는 依賴라 하여 그 責任을 免할 수 없다.

五. 他人의 名譽와 自由

新聞은 特히 個人의 名譽를 尊重하여야 하며 公共의 利益 아닌 好奇心 또는 惡意에서 個人의 權利나 感情을 侵害할 수 없다. 또 新聞은 스스로 自由를 主張함과 同時에 他人이 主張하는 自由를 認定하는 寬容이 있어야 한다.

六. 品 格

新聞은 그 公共性에 비추어 마따히 높은

品格과 矜持가 要求되며 特히 低級한 行動이나 誘因이 되는 行動은 一切 容納되지 않는다.

1957年 4月 7日

1961年7月30日 修正

韓國新聞編輯人協會

本 新聞倫理綱領을 追加 採擇한다.

韓國日刊新聞發行人協會

韓國通信協會

1963年3月6日

韓國新聞協會

1964年8月17日

韓國記者協會

新聞倫理實踐要綱

韓國新聞編輯人協會는 앞서 採擇한 바 新聞倫理綱領을 基礎로하여 이를 다음과 같은 新聞倫理實踐要綱을 採擇하고 이를 韓國日刊新聞發行人協會 및 韓國通信協會와 共同으로 構成하는 韓國新聞倫理委員會의 準則으로 삼는다.

報道와 評論의 態度

一. 報道는 評論과 嚴格히 分離되어야 하며 執筆者の 이름을 밝힘이 없이 個人의 意見を 報道에 挿入할 수 없다.

二. 未確認의 事實을 不得已 報道할 때에는 그 未確認임을 明示하여야 하며 또 그것을 過大하에 報道해서는 안된다. 또 非公式이나 私的인 談論은 것이 公共의 利益에 絶對으로 必要하지 않는 限 報道해서는 안된다.

三. 事實은 部分만이 아니라 그 全와 意味를 包括的으로 報道해야 한다. 特히 事實의 要約과 標題에 있어서도 事實이 歪曲되어서는 안된다.

四. 裁判의 判決에 影響을 주는 取材評論을 해서는 안된다.

五. 事實과 다르거나 不正確한 報道를 했을 때에는 스스로 卽刻으로 이를 完全히 訂正해야 한다.

獨立性

一. 報道 및 評論은 新聞內外로부터 오는 特權 또는 請託등의 壓力에 左右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壓力으로 말된받아 正當한 記事가 批判되어서는 안된다.

二. 記事의 作成 및 取舍整理에 있어 政治上의 先入見 또는 特定한 個人 또는 機關團體의 利益을 위하여 故意로 事實을 誇張 또는 滅殺해서는 안된다.

三. 記事의 作成 및 取舍整理에 있어 社會의 健全한 發展에 有害한 것을오직 大衆

의 好奇心을 充足시키기 위하여 過大하게 報道해서는 안된다. 特히 猥褻 其他 不道德의 過大한 報道로써 美風良俗을 低下시켜서 안된다.

四. 어느 宗教 또는 宗派를 不當하게 攻擊하여 宗教上의 憎惡와 紛糾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또 어느 種族 또는 國民을 不當하게 輕蔑 또는 非難해서는 안되며 特히 內·外의 國家元首의 名譽는 이를 尊重해야 한다.

他人의 名譽와 自由

一. 公共利益을 爲함이 아니고는 個人의 名譽를 毀損하는 報道 및 評論을 해서는 안된다. 公職者 또는 機關團體에 대해서도 不當한 攻擊이나 低劣한 表現을 해서는 안된다.

二. 公共의 利益을 關聯되지 않는 限 13 人의 私生活을 報道 또는 評論해서는 안된다. 公共의 利益과 大衆의 好奇心은 嚴格히 分離되어야 한다.

三. 刑事事件을 報道함에 있어 被告人 有罪의 判決을 받을 때 까지는 無罪라는 原則을 嚴守해야 한다. 다만, 被疑者가 起訴된 候는 敬稱을 省略해도 無妨하다.

四. 未成年의 被疑者 또는 被告人 및 逢辱한 婦女子의 姓名과 寫眞을 公開해서는 안된다.

五. 他人이 自由를 保障하기 爲하여 비록 自記의 觀察 또는 主張과 反對되는 것일지라도 이를 編輯上에 反映하여는 한다.

批判을 받는 者에게 紙面에서 辯明의 機會을 주어야 한다.

品 格

一. 新聞人은 그 品格을 維持하여야 한다. 特히 强者에 迎合하는 모든 言動을 避해야 하며 物質的 精神的인을 莫論하고 賂物을 要求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二. 新聞人에 대해서는 그 品格이 維持될

수 있는 適正한 諸條件이 造成되어야 한다.

三. 取材에 있어 그 對象이 되는 個人 또는 機關團體에 대하여 必要한 禮儀를 지켜야 하며 특히 取材內容을 提供한 者를 保護해야 한다.

따라서 取材內容의 記事化 與否에 關한 言約은 이를 避해야 하되 萬一記事化하지 않음을 言約한 경우에는 그것이 公衆의 利益에 絶對的으로 必要하지 않는 限 이를 지켜야 한다.

또, 新聞人은 記事出處의 祕密을 지켜야 하며 轉職後라도 이 原則을 지켜야 한다.

四. 新聞·通信·雜誌等 다른 出版物의 內容을 剽竊해서는 안되며 轉載 또는 引用을 할 때에는 그 出處를 밝혀야 한다.

報道記事가 寫眞 評論等으로서 特定한 掲載日時가 要求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五. 記事는 各 出入處에서 取材自由保章을 爲한것 以外の 結束되어서는 안된다.

1961年 7月 30日

韓國新聞編輯人協會

[本 實踐要綱을 追加採擇하고 이를 韓國新聞編輯人協會와 公衆으로 構成하는 新聞倫理委員會의 準則으로 삼는다]

1961年 8月 3日

韓國日刊新聞發行人協會

韓國通信協會1963年 3月 5日

韓國新聞協會1964年 8月 17日

韓國記者協會

ICC광고활동 국제협의회 광고활동기준강령

序文

본 “廣告活動國際基準綱領”은 消費者 및 社會에 대한 廣告關係者의 責任을 強調하고 나서는 있을 수 있는 그릇된 廣告活動을 防止하기 爲하여 ICC가 制定한 것이다.

本 綱領은 廣告活動에 있어서 지켜야 할 最小限度の 倫理基準을 定하고 있다. 本 綱領의 諸基準은 어떠한 媒體를 이용하든 모든 廣告活動에 適用된다.

本 綱領의 運營上 責任은 같은 目的을 爲하여 各國에 設置되어 있는 團體가 責任을 지며 國際的으로는 必要에 따라 I.C.C.廣告活動國際協議會가 責任을 진다.

本 綱領은 第一部「廣告活動에 있어서의 規定」 및 第二部「廣告產業과 觀客의 關係」等2가지 部分로 되어 있다.

第一部는 먼저 (A)모든 廣告活動에 適用되어야 할 行動規定과 (B)實施上の 規定등 두가지 部分으로 나누어져 있다.

또한 附則으로서 特殊한 分野의 廣告活動 및 最終消費者를 對象으로 하는 特定製品 및 서비스 廣告에 本 綱領의 行動規定을 適用하는 境遇의 特別規定을 記述하고 있다.

ICC 廣告活動國際協議會의 發展에 따라 必要하다면 各國 委員會 諮問을 얻어 特定製品 및 서비스에 관한 特別規定을 追加할 수 있다.

第1部 廣告活動에 관한 規定

廣告活動은 마케팅에서 必要不可缺한 것이다. 廣告活動은 商業, 工業 및 國民經濟는 물론 消費者에 대하여도 必順的인 主要 서비스이다.

廣告活動은 消費者 및 社會에 對하여 社會的 責任을 갖는다. 모든 廣告活動은 어떠한 媒體를 利用하던 간에 合法的이며 品位있고 正直하여야 한다. 廣告活動은 社會全般的 信賴를 目的으로 規定·容認되고 있는 公正競爭原則에 準하는 것이어야 한다. 廣告活動은 社會全般的 信賴를 얻지 않으면 成功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廣告를 실제로 행하는 境遇는 그와 같은 公共的 信賴를 깊게 심어 주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A. 行動規定

品位

- 1) 廣告物에 社會的 品位를 損傷시키는 文案 또는 視覺的 表現을 使用해서는 안 된다.

正 直

- 2) 廣告物은 消費者의 信賴를 惡用하거나 또는 消費者의 經驗이나 知識의 缺乏을 이용하여 만들어서는 안 된다.
- 3) 廣告活動에 迷信을 移用해서는 안 된다. 正當한 理由도 없이 廣告物에 恐怖心を 造成해서도 안 된다.

眞 實

- 4) 直接的이든 暗示的이든 그 어느 것을不論하고 省略하거나 不明確하게 하여 消費者를 眩惑하는 어떠한 文案이나 視覺的 表現도 使用해서는 안 된다.

誤解를 招來할 수 있는 境遇에는 아무리 事實이라 할지라도 誇張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廣告主는 또는 그 代理人이 나중에 正確한 情報를 提供했다 할지라도 그보다 먼저 행해진 “誤解를 招來할 수 있는 廣告”가 許容될 수 없다. 특히

- a) 廣告物은 다음 事項에 대해서 誤解를 招來해서는 안 된다.

- ① 廣告된 製品의 品質, 一例를 들면 性分도는 構造, 効用 및 適合性 그리고 原產地 및 販賣元

- ② 製品의 價格 또는 價値 및 購買條件

- ③ 配達, 交換, 返品, 修理, 保全管理 등 購買에 附隨되는 서비스

- ④ 製品에 添加되는 保證의 內容 및 購買者에 對한 救濟措置와 함께 모든 保證條件이 廣告에 明示된 境遇 또는 充分한 保證 條件이 販賣時點에서 文書로 혹은 製品에 附隨하여 購買者에게 提供되지 않는한 “保證” 또는 이와 同義書를 使用해서는 안 된다.

- ⑤ 廣告된 製品에 주어진 特許權 및 工業所有權의 有無 또는 메달, 商品, 褒賞 등의

- b) 廣告物은 다음 事項에 對해서 誤解를 招來해서는 안 된다.

- ① 他製品의 品質, 價格, 價値, 또는 購買條件 및 製品購買에 다른 서비스

- ② 他 廣告主가 作成한 文案에 따른 眞實性

- c) 專門書 等에서의 科學用語, 統計 등을 引用할 때는 消費者에 對하여 올바른 責任感을 가지고 使用해야 한다. 限定된 有効性을 가진 統計資料를 마치 그것이 普遍的眞實인 것처럼 移用해서는 안 된다.

- d) 特定製品의 購買가 어떠한 慈善目的에 이바지한다고 約束하는 廣告物은 그 目的의 外의 酬出比率에 있어서 誤解를 招來해서는 안 된다.

推薦文 및 第3者에 관한 言及

5) 推薦文은 眞實하여야 하며 거기에 誤解를 招來할 수 있는 文案이나 視覺的 表現을 使用하거나 誤解하기 쉬운 方法으로 使用해서도 안 된다. 이미 過去의 것이었던가 이미 適用不可能한 推薦文을 使用해서는 안 된다. 廣告物은 無斷으로 特定人物, 會社 또는 機關에 對하여 言及해서는 안 되며 또한

廣告物에 누구라고 認定되는 人物의 寫眞을 無斷히 利用해서는 안된다.

中 傷

6) 廣告物에 他社 또는 他製品에 대한 모욕, 조소를 招來할 수 있는 事項에 對해서 對해서는 안된다.

商號 및 商標의 惡用

7) 廣告物에 他社 또는 他製品의 商號 및 商標의 信用이나 利點 또는 廣告活動에 依해 獲得한 信用이나 利點을 不當히 移用할 수 없다.

廣告生活의 模倣

8) 어느나라의 廣告主가 使用中이거나 또는 他國의 行해지는 廣告·弘報活動을 妨害할 憂慮가 있는 製品의 일러스트, 레이아웃, 카피, 슬로건, 包裝 및 라벨을 模倣해서는 안된다.

廣告物의 識別

9) 어떠한 形式으로 어떠한 媒體를 利用하던 간에 廣告物은 그 自體가 明確히 識別되는 것이어야 한다.

뉴우스나 論說이 있는 媒體는 掲載되는 廣告物은 消費者가 그것을 記事와는 달리 쉽게 識別할 수 있도록 掲載되어야 한다.

安全上の 注意

10) 危險防止을 爲한 正當의 注意가 無視되고 있는 狀態 또는 그 結果가 怠慢을 助長할 憂慮가 있는 視覺積 表現은 全히 廣告物에 使用할 수 없다. 어린이를 描寫하는 廣告物의 境遇에는 特別한 注意를 要한다.

어린이 및 病弱者

11) 어린이 또는 靑少年을 對象으로 한 廣告物에 그들에게 肉體的, 精神的, 道德的으로 害가 될 憂慮가 있는 文案이나 視覺的 表現은 使用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廣告가

어린이 本來의 輕信性이나 또는 靑少年의 經驗不足을 移用해서는 안되며 그들의 誠實性을 移用해서도 안된다.

12) 廣告는 患者들의 希望이나 또는 損傷된 能力을 移用하여 그 廣告가 마치 病의 治療나 恢復을 約束하고 있다는 危險한 判斷을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B. 實施上 規定

責任

13) 本 綱領에 定해진 行動規定을 遵守하는 責任은 다음 사람이 진다.

a) 廣告主 및 媒體所有者, 廣告物을 製作하거나 掲載

b) 發行者, 媒體所有者, 廣告物의 發行이나 配布에 從事하는 請負業者, 廣告物의 計劃, 製作 또는 發行에 從事하는 者는 모두 本 綱領의 遵守事項을 確認할 責任을 진다. 이 責任은 他로부터 引用된 推薦文, 文案 또는 視覺的 表現을 包括하는 廣告物의 全內容 및 形式이 全體의으로 또는 部分的으로 引用된 境遇에도 本 綱領의 規定은 遵守되어야 한다.

14) 廣告主, 廣告實務者 또는 廣告代行業, 發行者, 媒體所有者 또는 請負業者는 本 綱領의 運用을 目的으로 業界가 設置한 自主規制機構에서 承認하지 않은 어떠한 廣告도 해서는 안된다.

解 釋

15) 本 綱領의 規程은 다만 文案上으로 나타난 것에 그치지 않고 精神面에 있어서도 適用되어야 한다. 各 媒體(印刷, 텔레비전, 라디오, 포스터, 映畵, 等)는 各기 特徵이 다르므로 特定 媒體에 許容될 수는 없다. 普通消費者는 廣告를 한번 봤을 때 받는 인상이 動機가 된다는 事實을 念頭에다 두고 廣告製作에 있어서도 廣告가 消費者에게 미치는 影響을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16)本 綱領에 있어서 “廣告物”이란 여러 種類의 廣告活動 및 弘報活動을 包含한 가장 廣義로 解釋된 것이다.

本 綱領에 있어서 “製品”이란 서비스를 包含한다.

本 綱領에 있어서 “消費者”란 廣告 대시지의 對象者 全部를 包含한다.

主張의 立證

17)廣告主는 그 描寫, 主張 또는 例示가 不當한 批判의 對象이 된 境遇는 그러한 妥當性을 立證하기 爲해 本 綱領의 運用에 責任이 있는 自主規制機構에 언제라도 證據를 提出할 準備가 되어 있어야 한다.

第 2 部 廣告產業과 顧客과의 關係

廣告는 모든 廣告關係者들이 相互 協同 關係에 있을수록 健全한 發達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友好關係를 沮害하는 어떠한 事業手段도 使用해서는 안 된다. 廣告實務者는 그들이 提共하는 서비스에 關하여 包括的이며 正確한 情報을 언제라도 顧客에게 提供할 準備가 되어 있어야 한다.

廣告스페이스 또는 타임 購買者는 媒體의 發行部數 그리고 이와 同等의 價値를 가지는 數字, 그리고 刊行物(可能하면 廣告主, 廣告代行者, 媒體所有者 第3者가 設置한 自主의 안 團體가 公表한 것) 또는 다른 어떠한 方法에 依해서도 提共되어야 하며 한걸음 나아가서는 顧客에게는 廣告에 의해 到達될 수 있는 사람의 數 및 特徵에 關한 資料를 入手하는 便誼가 주어짐과 同時에 그와 같은 資料를 얻게 된 方法에 對해서도 알려 주어야 한다. 各 媒體는 各種廣告에 適用되는 料金基準 및 割引에 關한 明確하고 完全한 說明書를 發行해야 한다.

附 則

特殊種類의 廣告生活 및 最終消費者를 對象으로 하는 特定製品 및 서비스 廣告이 對해 本 綱領의 行動規定을 適用하기 위한 特別條項이다.

本 附則의 諸條項은 綱領에 策定된 一般의인 行動規定에 準여 定해진 것이므로 同 規定과 關聯지어 解釋되어야 한다.

綱領의 序文에 있는 바와 같이 今後의 發展에 비추어 必要하다고 생각되면 I.C.C.理事會는 各 國內 委員會의 充分한 協議를 거쳐 特定製品 및 서비스에 關한 特別條項을 追加할 수 있다.

A. 特殊한 部類의 廣告活動

1)販賣促進計劃을 爲한 廣告活動

販賣促進을 目的으로 해서 추천 또는 게입에의 參加를 消費者에게 呼訴하는 廣告, 價金 또는 景品을 消費者에게 提供하는 것을 알리는 廣告, 賣上스탬프(trading stamp), 謝恩品(Combined offer)등에 對해 言及한 廣告는 그러한 販賣促進計劃에 關한 모든 條件을 明示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廣告는 內容이 있어서 消費者의 誇大平價를 招來해서는 안 된다.

어떤 나라에서는 特定の 販賣促進計劃에 對해서 法的規制가 加해지고 있다.

2)普通消費者는 商品을 檢査할 機會가 주어지지 않다. 이를 念頭에 두고 通信販賣廣告의 製作에는 特別한 注意를 기울일 必要가 있다. 특히 그러한 廣告物은 다음 事項을 包含해야 한다.

a)提供될 商品 및 그 價格, 配達條件(大體의인 配達日字를 包含), 支拂, 返品 그리고 아프터서비스에 대한 明確한 說明

b)消費者가 廣告主 또는 그 代理人과 適當한 날짜에 지체없이 個人的으로 連絡을 取하기 爲해 모든 明細를 廣告主의 身元에 關한 正確한 情報

假住所 또는 郵便局私書函 番號만을 記載한 廣告는 許容되지 않는다.

3)分割支拂式 販賣 및 信用販賣

分割支拂式 및 信用販賣의 廣告는 廣告는 廣告製品의 總價格 또는 販賣條件에 對하여 誤解가 發生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B. 特殊한 部類의 製品 및 서비스

1) 醫藥製品 및 治癒에 對한 廣告

廣告는 醫藥品 또는 治癒方法에 있어 그 性分, 特性, 作用에 對하여 또는 使用目的과의 適合性에 對하여 消費者의 誤解를 招來할 主張을 해서는 안된다. 誤解된 主張은 許容되지 않는다.

獨自의 證據에 依해 立證될 수 없는 限 廣告物은 治癒에 關한 約束해서는 안되며 또 病에 걸린자의 健康을 危險이 빠지게 할 憂慮가 있는 說明을 하면 안된다. 特히 다음 의 境遇는 注意를 요한다.

a) 醫藥를 必要로 하는 疾病: 當然히 定規 醫師에게 治療를 받아야 할 重病일 때 그 治療를 위한 醫藥用品의 提共이나 또는 助言이나 라고 보여지는 事項을 廣告해서는 안된다.

b) 通信에 依한 診斷 및 診斷 및 治療: 通信에 依해 病의 診斷 또는 治療를 提供하거나 또는 通信에 依해 그와 같은 疾病治療에 關한 助言이나 또는 治療를 할 생각을 가지고 疾病에 허용 되지 않는다.

c) 催眠術: 催眠術로 病 또는 컨디션을 診斷하거나 治療할 수 있다는 것은 廣告에 許容되지 않는다.

正當한 이유도 없이 病에 걸렸거나 또는 治療를 받지 않으면 病에 걸리거나 症狀이 惡化될 지도 모른다는 恐怖心을 消費者에게 주는 廣告는 許容되지 않는다. 醫師의 말 또는 病源테스트의 結果는 그것이 獨自의 證據에 依해 立證되고 올바르게 使用되는 境遇가 아닌 限이를 廣告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本 規定은 獨立的인 醫藥上의 傳門의 助言 또는 勸告인 것처럼 인상을 주는 服裝 또 環境에도 適用된다.

內容리 引用된 機關과 一致하지 않는 限 廣告에 “大學” “診療所” “實驗所” 또는 이와 비슷한 語彙를 使用해서는 안된다.

2) 알콜성 食料 廣告

過食을 助長하거나 法庭 未成年者를 對象으로 하는 廣告는 許容되지 않는다.

4) 貸付 및 投資

廣告에 各種 貸付 또는 賣出證券類의 條件實際 또는 推定의 利益 또는 償還條件에 對하여 一般사람들이 誤解를 살 解説을 해서는 안된다.

5) 教育課程에 對해 아리는 廣告는 그 課程을 工夫한 者에게 雇傭을 約束하는 듯한 暗示를 주거나 雇傭의 機會 또는 報酬가 주어지는 듯한 誇張廣告는 許容되지 않는다. 또한 非公認의 學位 또는 價格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廣告도 許容되지 않는다.

6) 家內副業의 廣告

副業에 關한 그 計劃의 內容에 對해 充分한 說明을 할 必要가 있다. 使用되는 機械原料 또는 部分品이 有料로 提供되고 또 廣告主가 副業을 가진 자의 製品을 사들이는 境遇 廣告에 그것에 關한 適切한 情報를 提共해야 한다.

7) 團體旅行의 廣告

a) 旅行에 對한 責任을 지는 會社 또는 團體 團體旅行에 關한 廣告의 境遇는 消費者를 失望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特別한 注意를 要한다. 團體旅行에 對한 廣告物은 다음 事項에 關한 包括的이고 正確한 情報를 提供해야 한다.

b) 旅行手印(可能한 限 輸送業者名, 航空機의 型과 等級 그리고 其他 旅行手印 등을 明記할 것)

c) 目的地 旅行日程

d) 旅行期間 및 各到着地에 묵은 滞在期間

e) 提供될 宿泊施設 및 食事內容

f) 提供될 特別플랜, 娛樂, 觀光

g) 旅費總額(적어도 最高, 最低額) 및 이에 包括된 서비스 關係 費用(運搬費, 팁 등)

인쇄출판물광고 심의규정

第1章 총 칙

第1條【목적】 이 규정은 인쇄출판물광고의 진실성보장과 광고윤리의 확립을 통해 광고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로서의 광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쇄출판물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대상】 광고물의 심의는 인쇄출판물을 통해 광고되는 광고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

第2章 인쇄출판물광고심의위원회

第3條【설치】 이 규정에 의한 광고물의 심의를 위하여 소협에 인쇄출판물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내에 5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라 한다)를 둔다.

第4條【구성】 위원회는 광고에 이해가 깊은 인사로서 분과별로 전문가 3인과 단체실무자 3인으로 구성한다.

第5條【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심의기준의 제정 및 개정
2. 광고물의 심의
3.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업무

第6條【임원】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소협회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각 분과에는 위원장 1인을 둔다.

④분과위원장은 분과를 대표한다.

⑤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第7條【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第8條【위원의 대우】 위원에게 거마비 기

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第3章 심의 및 관리

第9條【회의】 ①각 분과는 격월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한다.

②분과위원장단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第10條【심의기준】 광고물의 심의기준은 관계법령 및 각 분과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第11條【광고시정의 제청】 각 분과는 심의를 마친 광고물중에서 심의기준에 저촉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시정을 제정할 수 있다.

第12條【심의회의록 및 자료관리】 각 분과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 회의록 및 관련자료는 소협에서 보관·관리 한다.

인쇄출판물광고 심의기준

第1章 총 칙

第1條【목적】 이 기준은 인쇄출판물광고(이하 “광고”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광고의 공공성과 광고윤리】 ①인쇄물광고는 공정하고 진실하여야 하며 인쇄물의 품격과 공공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법의 권위를 존중하며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국가·국기 및 애국가의 존엄성과 국가기관의 권위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공중도덕과 사회윤리신장에 힘쓰며 공서양속에 해를 끼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건전한 시민의식과 가치관을 정립하여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표현에 힘쓴다.

⑥건전한 기업풍토조성과 공정거래질서확립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상품 및 생활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 건전한 소비풍토조성과 소비자보호에 힘쓴다.

第2章 일반심의기준

第3條【허위·과장표현 규제】 ①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독자를 현혹·오도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또는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
2.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표현
3. 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표현
4. 근거가 불확실한 할인원의 표시
5. 국가공인기관이 아닌 사실단체의 발표 내용이나 확인되지 아니한 통계숫자, 실험성적, 임상실험결과의 인용

②사실을 과장하여 과대평가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최대·최고·제일등 최상급표현
2. 성분·재료·함량·규격·효능·원산지 등을 부당하게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여 과대평가케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경품 및 증정품 내용을 과대하게 평가케할 우려가 있는 표현
4. 교육시설 또는 교육사업의 광고에서 진학·취직에 관하여 과대평가케할 우려가 있는 표현
5. 통계숫자·과학적 술어·기술문헌 등을 인용하여 실제이상으로 과대평가케할 우려가 있는 표현
6. 한국공업표준규격 및 품자 표시, 안전규격표시 등 각종 표시의 인용에서 독자에게 과대평가케할 우려가 있는 표현

第4條【배타적인 표현규제】 배타적인 상품을 비방·배척·중상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유일·제일 등 배타성을 띤 표현
2. 경쟁관계에 있는 타상품을 부당하게 비교하여 자기상품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표현
3. 유사품에 주의하라는 등의 경쟁상품을 배척하는 표현
4. 시장지배적인 표현이나 우위성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표현

第5條【경품광고】 ①경품 및 증정품에 관한 광고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독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품광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기간
2. 경품 및 증정품내용
3. 응모조건

4. 선정방법

5. 결과발표방법

③의약품에서 경품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증언광고】①상품이나 용역에 관하여 증언하는 내용의 광고(이하 “증언광고”라 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며 기만적이어서는 아니된다.

②증언광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1. 익명으로 증언하거나 견해를 밝히는 표현
2. 해당분야의 전문인에 의한 증언

第7條【할인특대광고】①할인 특매에 관한 광고는 독자를 현혹시키거나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할인특대광고에는 다음 사항을 밝히야 한다.

1. 기간
2. 할인특매 대상상품

第8條【비교광고】타상품이나 용역을 비교하여 광고하고자 할 때에는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하여야 한다.

第9條【사상광고】①각종 수상내용을 광고에 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인용할 수 있다.

1. 국가기관관장사업의 수상내용
2. 각종기관·단체의 관장사업으로 국가기관명칭의 수상내용
3. 국가중요정책사업의 수상내용

②제1항에 해당하는 수상내용을 광고에 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수상내용의 표현은 사실공지적이어야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과대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한다.
2. 상품광고에서 당해 상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상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비공인기관이나 사설단체등에서 주관하는 수상내용이나 국가기관이 후원하지 아니한 외국에서의 수상내용은 인용하지 아니한다.

第3章 분과별 심의기준

第1節 어린이보호·국민감정존중·정서함양

第10條【국민의 주체성 및 건전한 정서함양】①국민감정과 주체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유한 민족문화와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손상케할 우려가 있는 외래문화의 표현
 2. 외국과의 기술제휴·상표사용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경제적·문화적 비대칭성을 조장케할 우려가 있는 표현
- ②독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1. 총포·도검류 등 살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모방의 등기를 주는 표현
 2. 파괴·폭발·화염등 위험성이 있는 묘사
 3. 저속하거나 경박스러운 동작·표정
- ③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독자를 당혹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정적인 외상·자태·동작
 2. 실루엣이라 할지라도 나체로 보이는 장면의 묘사
 3. 신체부위의 과잉노출
 4. 남녀관계(성)를 암시하는 외설적인 언어·동작 등의 묘사

第11條【기술제휴·상표도입광고】①외국과의 기술제휴·합작투자 상표도입에 관한 광고는 사실고지에 한하며 허위 또는 과대표현을 하거나 독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②기술제휴·상표도입에 관한 광고는 국민 감정을 자극하거나 주체성을 훼손할 우려

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기술도입·외국상표도입으로 상품의 우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표현
2. 기술제휴선 또는 외국상표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표현
3. 기타 문화적, 경제적 사대성향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

第12條【어린이보호】①어린이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서는 예절과 교양을 중시하여야 하며 사회와 타인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②어린이의 품성과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의 사행심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표현
 2. 어린이가 광고된 상품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서 열등감을 갖게 하거나 조롱을 받는 듯한 인상을 주는 표현
- ③어린이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방법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第13條【올바른 언어생활확립】①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1. 모방함으로써 올바른 언어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은어, 속어, 비어, 조어 등의 사용
2. 부분별한 외국어사용
3. 불필요한 사투리사용

②광고에서 부득이 외국어로 표기된 상품명, 상표를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동일한 크기의 한글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第2節 식 품

第14條【식품광고】식품광고에서 과장의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분, 함량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

하거나 사실을 과장한 표현

2.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약품으로 오인케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건강증진, 장수, 젊음유지 등의 효능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현
4. 미용에 효과가 있다는 뜻의 표현
5. 가공식품에 대하여 “천연” 또는 “자연” 식품이라는 주장의 표현

第3節 의 약 품

第15條【의약품광고】의약품광고(살충제·농약·의약부외품 포함)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내용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第16條【광고등의 범위】①약사법 제38조, 제63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7조, 제48조에 따라야 한다.

②약효의 과장 및 오용의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안전하다, 부작용이 없다는 뜻의 유사한 표현
2. 의약품의 성능·효능에 대하여 사용결과와 완치된다는 뜻의 유사한 표현
3. 신비한 효과를 나타낸다고거나 또는 사용결과 “신기하다”, “신통하다”는 뜻의 표현
4. 의약품의 사용결과에 대한 감사장, 추천장, 체험담을 인용하거나 주둔쇄도라는 뜻의 표현
5. 임상실험결과, 문헌, 통계숫자 등을 인용하여 실제이상으로 약효를 과신케할 우려가 있는 표현
6. 허가받은 약효 이외의 효능을 나타내는 표현
7. 국내외의 병원, 연구기관의 명칭을 인용하여 동기관의 추천 또는 실험결과를 암시하는 표현
8.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인(의료인으로 오인되는 분장에 의한 모델 포함) 또는 의료·의약전문인에 의

한 의약품의 효능, 성능을 입증하거나 추천, 지정, 권장하는 등의 직접적인 선전으로 간주되는 표현

9. 광고를 통한 진단, 처방 및 치료방법의 표현

③의약품광고에서 독자에게 혐오감,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 공포심을 주는 표현
2. 질병으로 인한 고통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거나 극화하는 표현
3. 독자로 하여금 중병에 걸려있는 것 같이 믿게할 우려가 있는 표현
4. 환자를 조롱하거나 질병자체를 저속하고 폄위없이 다루는 표현
5. 피임약품에 관한 광고물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가족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節 생활용품

第17條【내의류광고】내의류(거들, 부라자, 란제리, 팬티 등)광고는 상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독자의 건전한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체에 입혀놓은 제품을 클로즈업시킨 장면
2.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자태 또는 동작
3. 신체부위의 과잉노출

第18條【수입상품광고】①국민에게 외국상품에 대한 부분별한 선호사상을 조장하며 국산품을 경시하고 사치와 낭비 등 소비성향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상품의 우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상대적으로 국산품을 경시케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직수입품, 수입완제품 운운의 수입상품임을 강조하여 외국상품선호사상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외국어로 표기된 상품명, 상표 등을 클로즈업시켜 외국상품임을 강조하는 표현

4. 상품명, 상표 등 고유명사를 제외한 외국어사용

5. 수입상품에 관한 외국어광고물을 인용한 표현

②수입상품광고물은 국민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판매원을 명기하여야 한다.

第5節 서 비 스

第19條【영화 및 공연물광고】영화 및 공연물의 광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시키거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묘사 등으로 성도덕관념을 문란케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공서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는 표현

제20조【유흥업소광고】유흥업소광고는 국민의 건전한 생활기풍조성과 특히 청소년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第4章 보 칙

第21조【심의기준의 보완】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회의 일반통념에 따른다.

第22條【위임사항】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은 소협이 따로 정한다.

인쇄출판물광고심의 운영요강

부 칙

이 요강은 1987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第1條【목적】 이 요강은 소협 인쇄출판물 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인쇄출판물광고(이하 “공고”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회의】

1. 위원회 전체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
2. 분과회의는 격월 1회이상 실시한다.

第3조【심의기준】 광고의 심의는 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심의기준 및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第4조【심의대상】 심의는 일간, 주간, 월간지에 게재되는 광고와 기타 광고인쇄물을 대상으로 한다.

第5條【심의신청】 각 단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의 심의를 관계분과위원회에 신청한다.

第6條【처리기간】 심의신청이 될 광고는 차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의가 지체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지한다.

第7條【시정광고의 결정】 각 분과위원회는 심의를 마친 광고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하는 시정광고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광고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第8條【결정사항의 처리】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그 내용을 해당 광고주에게 통보하여 심의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第9조【시정불응시 대책】 위원회는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할 수 있다.

第10條【참고자료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광고주에게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雜誌倫理實踐要綱

1. 雜誌는 民族固有의 文化를 保護育成하며 猥褻 또는 煽情的인 表現으로 美風良俗을 害치거나, 社會에 惡影響을 미치 要素가 들어있는 內容을 掲載하여서는 안된다.
2. 雜誌는 國家理念과 國家安全保障에 關한 事項에 違背되는 要素가 들어있는 內容이 어서는 안된다.
3. 雜誌는 自殺을 讚美하거나, 事實이라 하더라도 類廢의이고 煽情的 또는 驚愕스러운 犯罪行爲에 대하여 寫實的으로 描寫하여서는 안된다.
4. 雜誌는 占術을 비롯하여, 占星, 觀相, 骨相, 手相術 및 이와 類似한 內容을 謔도록 助長하여야 한다. 이르 因하여 讀者에게 精神의不安을 造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5. 宗教問題는 信仰의 自由를 尊重하고, 特定宗教 또는 宗派에 대한 不當한 冒瀆, 攻擊, 誹謗을 하여서는 안된다.
6. 公共의 利益과 大衆의 好奇心 嚴格히 區分되어야 하며, 個人 또는 特定機關, 團體와 公職者의 權利를 侵害하거나, 名譽를 毀損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他民族을 不當하게 侮辱하지 말아야 하며, 内外國의 國家元首에 대한 名譽를 尊重하여야 한다.
또한 未成年의 犯法者 및 辱을 當한 婦女子의 詳細한 住所와 姓名, 寫眞을 公開하여서도 안된다.
7. 論爭은 公共의 問題에 限하며, 品位가 있어야 한다. 또한 評論은 公衆의 生活와 福祉에 影響을 미치게 되는 問題일 경우 反對되는 側面에 대하여서도 公平하게 다루어야 하며, 全面的인 批判의 對象이 된 사람이 見解의 相異를 들어 反論을 提起해왔을 때에는이에 合當한 誌面을 提供하여야 한다.
8. 記事와 評論은 公正해야 하며, 筆者가

明示되지 않거나 法院의 判決에 影響을 주게 되는 評論을 掲載하여서는 안된다.

9. 雜誌는 그 掲載內容의 迅速, 正確과 眞實性이 要求되며, 公衆의 輿論을 尊重하여야 한다. 眞實이 아니거나 事實과 背馳되는 內容은 이를 遲滯없이 取消, 訂正하여야 한다.
10. 雜誌는 政治的 權限이 있는 者, 또는 特定人의 利益을 위하여 不當한 內容을 다루거나, 이를 宣戰 또는 故意로 事實을 歪曲, 誇張하여서는 안된다.
11. 雜誌는 다른 出版物의 內容을 剽竊 또는 不法的인 轉載를 하여서는 안되며, 法에 許容된 範圍내에서 다른 出版物의 內容을 轉載 또는 引用할 때에는 内外國을 莫論하고 그 出處를 明示하여야 한다.
12. 雜誌는 그 掲載內容의 筆者를 明示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筆者의 表示를 雜誌人인 任意로 操作하여서는 안된다.
13. 雜誌는 煽情, 制作面에서 讀者를 欺瞞해서는 안된다.
14. 雜誌는 低級한 宣戰으로 主體性을 喪失고, 雜誌人의 矜持와 品位를 損傷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廣告는 健全하여 하며, 誇張 또는 他를 誹謗하는 內容이어서는 안된다. 또한 雜誌의 掲載內容이 明白히 廣告性을 內包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廣告記事임을 表示하여야 한다.
15. 雜誌는 良質의 資料를 使用, 制作함으로써 粗雜한 形態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雜誌人은 그 刊行되는 雜誌와 關聯하여 物心兩面에서 不當한 要求를 하거나, 이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의 要因이 될수 있는 行爲를 하여서도 안된다.
17. 雜誌記者는 利己的이거나 無價値한 目的을 위하여 그 影響力을 行使하거나 結束되어서는 안된다.
18. 雜誌記者는 取材對象이 되는 個人 또는 機關, 團體에 대하여, 必要한 禮義를 지켜

야 하며, 記事出處의 秘密을 지켜야 함은 물론, 取材內容의 提供者는 保護하여야 한다.

19. 雜誌는 出版 流通秩序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20. 雜誌는 및 雜誌人은 其他 社會通念上 非難의 對象이 될수 있는 內容의 掲載 또는 行爲를 하여서는 안된다.

週刊新聞倫理實踐要綱

報道와 評論의 態度

1. 報道는 評論과 嚴格히 分離되어야 하며 執筆者의 이름을 밝힘이 없이 個人의 意見을 報道에 挿入할 수 없다. 特히 評論의 論旨는 正當한 事由없이 變更될 수 없다.
2. 未確認의 事實을 不得已 報道할 때는 그 未確認임을 明示하여야 하며 또 그것을 過大하게 報道해서는 안된다. 事實은 直接取材할 것을 原則으로 하며 他 記者의 取材成果를 剽竊, 盜用해서는 안된다.
- 또 非公式이나 私的인 談論은 그것이 公共의 利益에 絶對的으로 必要하지 않는 限 報道해서는 안된다.
3. 事實은 部分만이 아니라 그 全貌와 意味를 包括的으로 報道해야 한다. 特히 事實의 要約과 標題에 있어서도 事實이 歪曲되어서는 안된다.
4. 報道는 廣告와 明確히 區別되어야 하며 特히 視覺的으로 報道記事와 區別하기 어려운 憂慮가 있을 때에는 그것이 廣告임을 明記하여야 한다.
5. 寫眞은 明確한 說明이 있어야 하며 說明과 一致되는 寫眞을 掲載하여야 한다.
6. 製版의 判決에 影響을 주는 取材評論을 해서는 안된다.
7. 事實과 다르거나 不正確한 報道를 했을 때에는 스스로 卽刻으로 이를 完全히 訂正해야 한다.

獨立性

1. 報道 및 評論은 新聞內外로부터 오는 特權 또는 請託 등의 壓力에 左右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壓力으로 말미암아 正當한 記事가 批判되어서는 안된다.
2. 記事의 作成 및 取捨整理에 있어 政治上

의 先入見 또는 特定한 個人 또는 機關團體의 利益을 爲하여 故意로 事實을 誇張 또는 減殺해서는 안된다.

3. 記事의 作成 및 收拾整理에 있어 社會의 健全한 發展에 有害한 것을 오진 大衆의 好奇心을 充足시키기 爲하여 過大하게 報道해서는 안된다.

특히, 褻 其他 不道德의 過大한 報道로서 美風良俗을 低下시켜서는 안된다.

4. 어느 宗教 또는 宗派를 不當하게 攻駁하여 宗教上의 憎惡와 紛糾를 일으켜서는 안된다.

또 어느 種族 또는 國民을 不當하게 輕蔑 또는 非難해서는 안되며, 특히 内外의 國家元首의 名譽를 尊重해야 한다.

5. 國家의 安全保障에 危害되는 報道를 해서는 안되며 國家機密을 最大限으로 保障해야 한다.

他人의 名譽와 自由

1. 公共의 利益을 爲함이 아니고서는 個人의 名譽를 毀損하는 報道 및 評論을 해서는 안된다.

公職者 또는 機關團體에 對해서도 不當한 攻擊이나 低劣한 表現을 해서는 안된다.

2. 公共의 利益에 關聯되지 않는 限 個人의 私生活를 報道 또는 評論해서는 안된다. 公共의 利益과 大衆의 好奇心은 嚴格히 分離되어야 한다.

3. 刑事事件을 報道함에 있어 被告人이 有罪의 判決을 받을 때까지는 無罪라는 原則을 嚴守해야 한다. 다만, 被疑者가 起訴된 後는 敬稱을 省略해도 無妨한다.

4. 未成年의 被疑者 또는 被告人 및 逢辱한 婦女子의 姓名과 寫眞을 公開해서는 안된다.

自首를 해서 刑免除를 받은 者의 姓名과 寫眞을 公共의 利益에 必要하지 않는 限 公開해서는 안된다.

5. 他人이 主張하는 自由를 保障하기 爲하

여 비록 自己의 觀察 또는 主張가 反對되는 것일지라도 이를 編輯上에 反映하여야 한다.

批判을 받은 者에게는 紙面에서 辯明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品 格

1. 新聞人은 그 品格을 維持하여야 한다.

특히 強者에 迎合하거나 弱者를 輕視하는 모든 言動을 避해야 하며 物質的 精神的 임을 莫論하고 財物을 要求하고거 받아서는 안된다.

新聞人은 서로 두터운 同僚意識을 가져야 하므로 同業人을 不當하게 誹謗 할 수 없고 發行人과 記者의 사이는 人格信賴와 道義的 義理를 가지고 結合하여야 한다.

2. 新聞人에 對해서는 그 品格이 維持될 수 있는 適正한 諸條件이 造成되어야 한다.

3. 取材에 있어 그 對象이 되는 個人 또는 機關團體에 對하여 必要한 禮義를 지켜야 함은 勿論 正當한 方法으로 取材를 해야 하며 特히 取材內容을 提供한 者를 保護해야 한다.

따라서 取材內容을 記事化 與否에 關한 言約은 이를 避해야 하되 萬一記事化하지 않음을 言約한 경우에는 그것이 公共의 利益에 絶對的을 必要하지 않은 限 이를 지켜야 한다.

또 新聞人은 記事出處의 秘密을 지켜야 하며 職業轉換後라도 이 原則을 지켜야 한다.

4. 新聞·通信·維持等 다른 出版物의 內容을 剽竊해서는 안되며 轉載 또는 引用을 할 때에는 그 出處를 밝혀야 한다.

報道記事 寫眞 評論等으로서 特定한 掲載日時가 要求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5. 記者는 各出入處에서 取材自由保障을 爲한 것 以外의 目的으로 結束되어서는 안된다.

週刊新聞, 維持, 圖書, 漫畫等 內容의 性格
에 따라 圖書維持倫理實踐要綱과 週刊新
聞倫理實踐要綱에 相互排除함이 없이 全
分野에 걸쳐 適用할 수 있다.

1968年 2月 29日

韓國廣告業協會廣告倫理綱領

우리는 廣告의 時代的 使命과 社會的 責任을 自覺하고 國家經濟의 發展과 國民生活의 向上 그리고 廣告文化의 暢達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廣告主 및 媒體社와 더불어 各自의 權益을 保護하고 相對의 立場을 尊重하며 相互利害와 協調를 通하여 健全한 廣告產業의 育成에 이바지한다.

1. 廣告는 國家經濟의 發展과 國民文化生活의 改善 向上에 그 目標을 두어야 한다.

1. 廣告는 眞實만을 表現하고 公共的 信賴를 얻는 것이어야 한다.

1. 廣告는 品位를 尊重하고 밝고 健實한 國民 文化生活의 造成에 이바지 해야 한다.

1. 廣告는 大衆의 福祉와 便益을 우선하는 情報를 提共것이어야 한다.

1. 廣告는 科學性과 專門性을 尊重하고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1. 廣告去來는 公正과 自由를 그 原則으로 하며 廣告發展을 阻害하는 어떠한 去來手印도 止揚되어야 한다.

1. 廣告는 責任은 廣告主, 廣告媒體, 廣告業 모두에게 있으며 廣告關係法規, 倫理規定의 遵守에 솔선하여야 한다.

